



05. 경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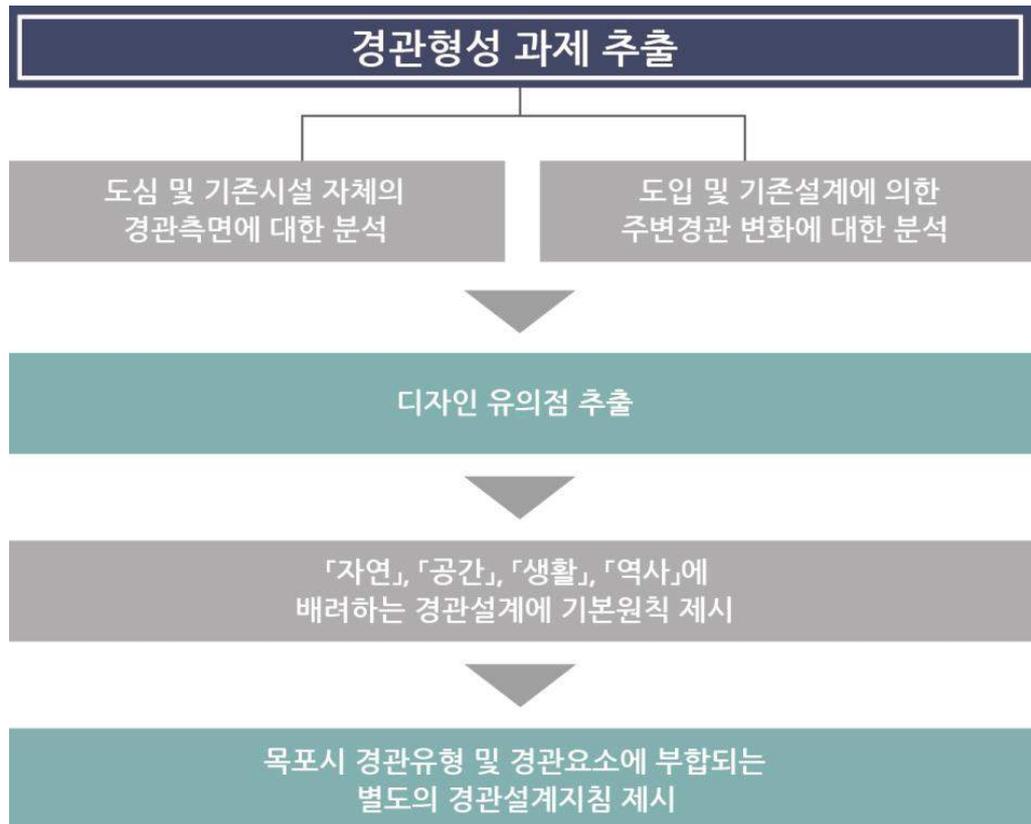
1.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2. 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
3. 용도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
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5.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1 경관설계지침 작성원칙

1.1.1 경관설계지침의 작성 순서

- 지역경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계로 경관형성과제를 추출
- 도입 또는 기존시설 자체의 경관측면(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등)에 대한 분석과 대상 시설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을 디자인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함
- 경관설계의 유의점은 지역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자연』, 『공간』, 『생활』, 『역사』로 나누어 설계의 기본원칙을 제시
- 설계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목포시의 경관유형 및 경관요소별로 도입 또는 기존시설들의 위치, 규모(크기, 높이), 형태, 소재와 색채, 외부구조 및 오픈스페이스 등을 검토하여 경관설계지침 제시



1.1.2 자연을 배려하는 경관설계의 기본원칙

1 자연지형 활용

- 대상지가 계곡이나 경사지인 경우 그 지형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의 위치나 규모, 형태 등을 고려
- 특히 대상지에 연못이나 수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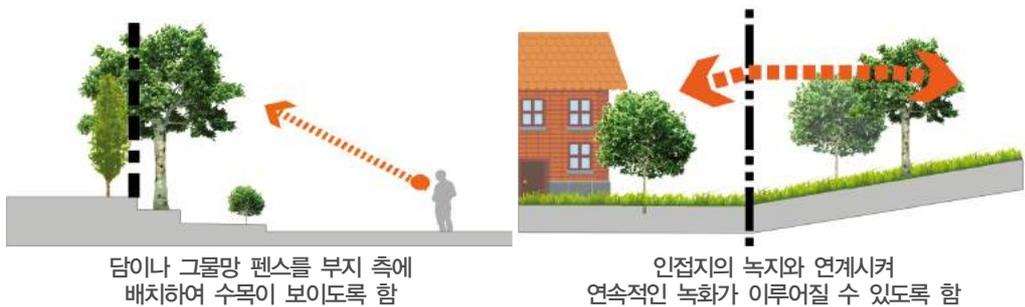
2 수변 경관 배려

- 강이나 바다, 연못 등의 수변과 접하는 경우, 수변에서 보이는 경관이나 배를 타고 보이는 방법을 고려
- 수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배치 및 형태 등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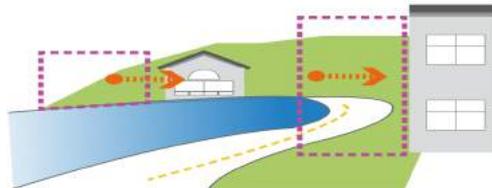
3 기존 녹지의 활용 및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

- 대상지에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목이 보이도록 디자인
- 대상지 주변에 수목군이나 연속된 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지 내부에 녹화 내지 옥상녹화 등을 통해 연속된 녹지가 형성되도록 유도



1 자연경관을 배경(수경)으로 활용

- 산 능성이나 구릉 또는 바다 등 자연경관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도입시설의 위치 및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자연생태계에도 배려토록 함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시설의 배치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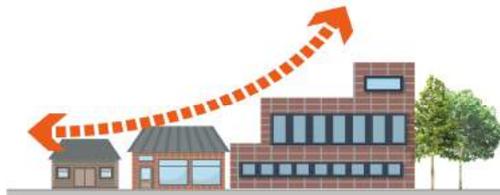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건물입면을 나누어 배치하거나 형태 등을 고려

1.1.3 공간을 배려하는 경관설계의 기본원칙

1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도시경관을 연속시키거나 집합적인 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시설의 높이, 벽면선, 층고, 형태, 디자인, 색채, 담장 등 경계시설 등을 주위의 시가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
- 고층건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저층부의 경관 연속성에 각별히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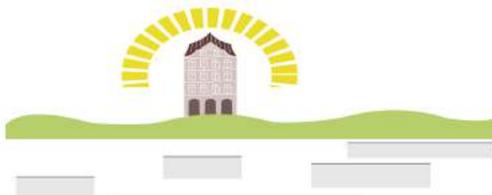
저층 시가지의 경관에 배려하여 시설의 높이를 제한



인접건물의 저층부에 대한 연속성에 유의

1 도시경관의 변화를 수용, 배려

- 시가지경관에 변화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시설의 높이 및 벽면선, 형태, 디자인 등에 변화를 부여
- 고층건물을 조성하는 경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의 보이는 모습 및 고층부의 형태, 디자인 등에 유의할 것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고층부의 디자인에 각별히 유의



가로경관이 단조롭지 않도록 외관을 다양한 형태로 조성

1 교차 및 결절점을 의식

- 가도가 교차되는 위치에 시설을 디자인 하는 경우 교차점을 의식하여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함과 동시에 교차점에 면하고 있는 부분의 형태나 디자인에 유의



교차점에 면하는 부분의 디자인에 유의



교차점과 면하고 있는 부분에 광장을 계획

1 인접부지와와의 일체성을 검토, 배려

- 대상시설과 인접하는 공공공간(도로 및 광장, 수로 등)을 통합된 디자인으로 계획하거나 공간을 일체화시켜 조성함으로써 통일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지와 전면도로의 포장재 및 디자인을 통일



수변도로와 접해있는 시설물은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계획

1.1.4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경관설계의 기본원칙

1 가로경관의 스케일에 배려

- 대규모 시설 및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을 시행
- 특히 중·저층부의 형태, 디자인 및 식재계획에 유의
- 특히 가로수 수종 교체 시 자연 및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상록수 위주로 선택하되, 차후 수립될 특정경관계획 가로수 식재 가이드라인을 수용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높이를 제한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고층건물의 압박감을 감소

가로의 성격을 고려하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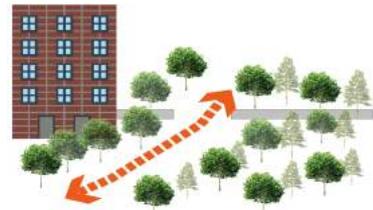
- 전면도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 경계책 등을 계획
- 특히, 상점가와 면하고 있는 경우 변화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저층부 디자인 다양화로 상점가의 변화로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치

대지는 가능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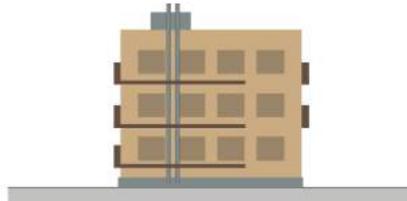
- 대지의 일부를 가능한 한 주변지역에 개방하고 공개공지 및 통과도로 등을 설계
- 또한, 가로경관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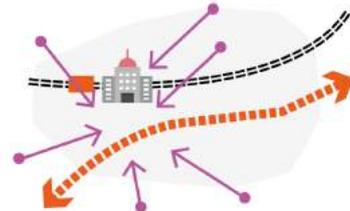
보행자를 위한 통과동선을 계획

시설의 뒤편 또는 측면에 유의

-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및 시점장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정면에서 검토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뒤편 및 측면의 디자인에도 충분히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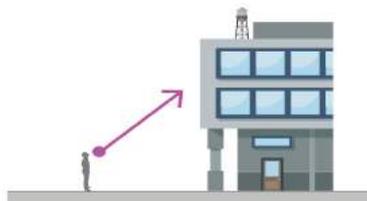


건물 측면이나 뒤편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배려 대규모 시설은 모든 방향에서 연출방법 검토하여 계획



옥외시설 및 표출물에 유의

- 옥상이나 외벽, 부지내의 공지 등에 설치된 옥외설비 및 표출물(자동차, 자전거, 창고 등)이 주위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시설과 조화된 장애물 등으로 차폐



옥상의 설비가 보이지 않도록 함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를 녹지 등 자연요소로 차폐

1.1.5 역사문화환경을 존중하는 경관설계의 기본원칙

■ 기존 수목은 보존

- 대상지에 오래된 수목이 있을 경우 유지·보존하도록 함
- 특히, 대상지가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라면 부지 내에 현존하는 수목은 가능한 한 보존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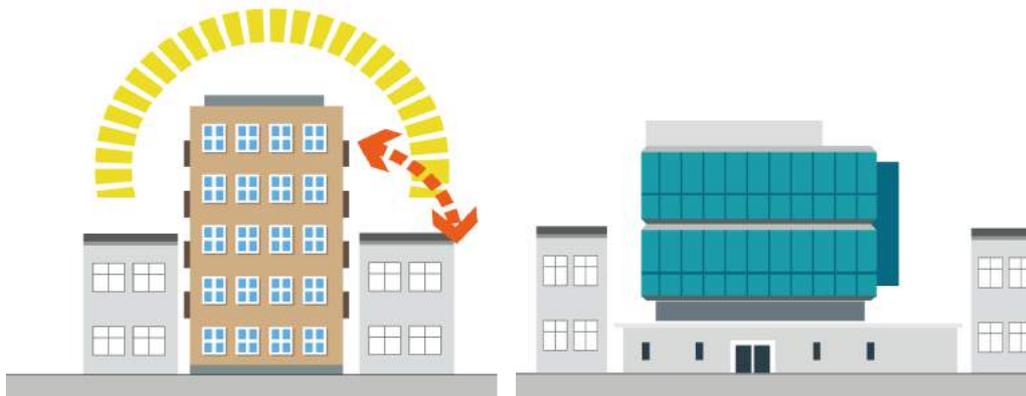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광장을 조성



기존의 수목이 보이는 방법을 배려하여 디자인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 활용

- 대상지에 역사성이 있는 건조물(건축물, 담장, 포장 등의 관련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장소에서 보존 또는 복원을 권장
-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보존 또는 복원을 추진하되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와의 조화에 각별히 유의
- 이미지를 계승하는 경우에도 전체 디자인과의 균형이 맞도록 적용



이미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적 균형 고려

전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특징적인 부분만을 보존

▣ 주변의 역사건축물에 대한 배려

- 주변에 문화재 및 역사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의식하여 디자인
- 단, 단편적인 판단으로 역사건축물의 형태 및 디자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혼돈 및 가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 지양
- 주변에 도입되는 건축물 및 시설의 디자인은 문화재 및 역사건축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 포인트가 되도록 유도



▣ 지역의 소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디자인하는 행위는 자제

- 지역의 명소 유적 및 특산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선별하되 그것을 직접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디자인은 지양
- 또한, 장소의 의미를 단순히 형태로 모방하여 디자인하는 행위는 금함

1.1.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관설계 기본원칙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자연환경이 지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 건축물의 배치를 가능한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
- 태양열 에너지 활용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지역경관의 특성과 이미지에 조화 되도록 신재생에너지원(집열판 등)의 위치, 크기, 모양, 색채, 형태 디자인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

▣ 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을 통한 '친환경 녹색' 도시 구현

-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 콘셉트인 '친환경 녹색' 개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 사업에 재생 가능한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가 우선 사용
-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지향

2. 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

2.1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관리 및 설계지침

2.1.1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목표

자연성	▪ 목포의 주요 자연자원의 보존
연결성	▪ 내륙 자연경관 녹지축 보존
조화성	▪ 자연환경과 인공경관의 조화

■ 자연성

- 목포의 주요 자연자원인 입암산 등 원풍경을 보존하여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부원도심 자연경관 관리기준 마련

■ 연결성

- 산악경관으로 이어지는 남부원도심 녹지축을 보존하기 위한 개발 및 관리 기준 마련

■ 조화성

- 우수한 자연경관과 구조물, 건축물 등 인공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

2.1.2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방향

■ 남부원도심 경관권역의 자연성 확보 차원

- 목포시의 주요 자연자원인 입암산 등 주요산과 입암천 등 주요 수계의 자연성을 우선적으로 보존

■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연결성 확보 차원

- 유달산, 양을산, 부주산을 연결하는 내륙 자연경관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녹지공간 단절 방지
- 양을산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고, 앞으로 수립될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종 및 보식 계획을 수용

■ 내륙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성 확보 차원

- 필수불가결한 개발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과 구조물 설치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내륙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공경관과의 조화 유도

2.1.3 남부원도심 설계지침

목포의 주요 자연자원인 입암산 원풍경의 보존

- 입암산 등 특징적인 암반경관의 원형을 유지하고, 녹화위주의 인위적 식생도입은 지양
- 가로 및 등산로가 있는 풍경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경관자원의 가치 유지

- 산악경관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은 보존토록 하며, 구릉지 훼손으로 인해 잠식된 녹지공간은 복원에 주력
- 이미 훼손된 녹지의 복원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기존 교육시설 및 관공서의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복원을 유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유달산의 경관



입암산 및 갯바위의 전경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자연친화적 개발

- 기존 시가지와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 녹지단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공원 및 학교 숲 등을 이용하여 녹지축과의 연결을 시도하여 고립된 녹지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매립 및 대규모 개발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변 지역과의 이질감이 생겨나지 않도록 3m이상의 완충녹지대 등을 조성토록 하되 교목 위주로 식재 권장

산악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 스카이라인의 보전

- 산악주변의 건물배치 및 규모 등의 관리를 통해 배경이 되는 스카이라인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
-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 특히 산과 바다로의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며, 이를 위해서 단지 및 시설배치에 각별히 배려

■ 산악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적절한 개발

- 산악 주변 및 산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시 기존 지형지물의 지나친 변형은 지양하며, 완충 녹지 공간 확보 및 친환경 첨단공법을 도입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
- 절·성토 발생은 최소로 억제할 수 있는 노선선정 및 도로선형을 계획하도록 하며, 부득이 발생하는 법면의 경우 구배는 30도 이하로 하되 주변과 어울리는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
- 지하수맥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투성 소재사용을 권장하되 색채의 선정에 유의
-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한 경관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
- 휴식 및 조망을 위한 조망점 발굴 및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시설도입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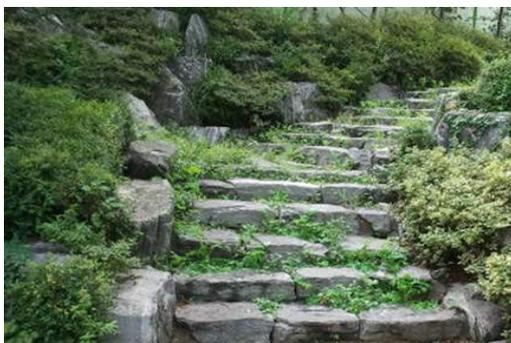
녹지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목포



기존 산악지형을 유지하는 도로(스위스)

■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도입시설물에 대한 색채, 재료, 디자인 관리

-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디자인 기준 마련
- 수목식재는 자연식생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되 인위적인 식재디자인 및 문양식재 지양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개발할 경우 반드시 계획초기단계에 사전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성을 검토하여 개발 적지를 선정하도록 유도



기존 지형을 활용한 동선계획



녹지로 피복된 터널형 진입로

■ 자연생태를 고려한 수변경관 디자인 및 인접공간과의 연계성 모색

- 하천, 수로 및 저수지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변의 환경 및 물 유입 등 관리에 유의
- 하천, 저수지 등의 호안은 자연석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친수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유도하되 안전성 확보에 유의
- 저수지 주변에 2m이상의 식재대를 설치하여 생태환경을 보전



기존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디자인



산악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도로계획



친환경 하천



산악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도로계획

2.2 도서해양 경관권역 관리 및 설계지침

2.2.1 도서해양 경관구역 설계지침의 목표

접근성	▪ 도서해양 경관자원 접근성 확보
해양자연성	▪ 해양도시 목포의 자연성 보존
조화성	▪ 어촌마을, 해양구조물 등 인공경관과 해양 자연경관과의 조화

1 해양 자연성

- 해양도시 목포로서의 주요 자연자원인 해양 생태계 및 자연해안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해양 자연경관 관리기준 마련

1 접근성

- 주요 경관자원으로서의 바다와 해안선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도로 및 각종 구조물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1 조화성

- 어촌 마을, 해양구조물 등 인공경관과 해양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해양 자연경관관리 및 설계지침 마련

2.2.2 도서해양 자연경관 설계지침의 방향

1 해양 자연경관의 해양 자연성 확보 차원

- 목포시 내륙 해안선 및 도서지역의 자연 해안선을 최대한 보존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행위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최소한의 개발 유도

1 해양 자연경관 접근성 향상 차원

-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접근하여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내륙 해안도로 및 도서지역 해안선 일주도로 개설시 해양 자연경관 저해요인 사전 차단

1 해양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성 확보 차원

- 필수불가결한 도서해양지역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과 구조물 설치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해양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공경관과의 조화 유도

2.2.3 도서해양 자연경관 설계지침

■ 해안생태보존 및 해안경관의 보전

- 남아있는 자연해안은 가능한 한 보존토록 하며, 기 개발지를 이용하여 시설 및 계획 추진
- 매립은 원칙적으로 지양. 단, 부득이한 경우 매립선형은 주변 해안선과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 하며, 단순 직선형태의 매립선형은 절대 금지
- 조망권 및 양호한 경관확보를 위해 도로와 해안선 사이 지역의 행위제한 등을 통한 경관관리 추진
- 해안주변의 녹지 및 구릉 산지 인접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 매립 등에 의한 인공해안의 디자인 검토 및 휴식장소로의 정비권장

- 매립 등에 의해 조성된 인공해안은 주변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도입토록 유도
- 필요시에는 시민이용을 위한 해안공원으로 정비하되 최소한의 시설만을 도입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 정비
- 자연해안경관과의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입시설의 디자인 검토(형태 및 색채, 재료 등) 및 필요시 녹화 권장
- 제방 및 호안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구조, 형태, 의장, 소재 등으로 하되 접근성을 확보하여 친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사람들의 휴식장소에는 조망의 확보, 계단 및 경사호안 등 다양한 공법을 채택하여 흥미로운 친수공간 연결



수목과 목재데크가 설치된 친수공간 보존·개발지 구분은 공간의 질 향상 디자인 된 해양구조물 및 공원시설

■ 해양 조망권 및 공공접근성의 확보

- 해안에서 시가지로, 시가지에서 바다로의 가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야 및 동선확보가 가능한 디자인 도입
- 우수한 조망이 확보되는 해안지역에 조망공간의 설치를 권장함
- 방파제 및 호안이 조망점이 되는 장소의 경우, 전망대나 프롬나드(해변 산책로) 설치 등 친수공간 창출에 주력



바다의 이미지가 담긴 가로시설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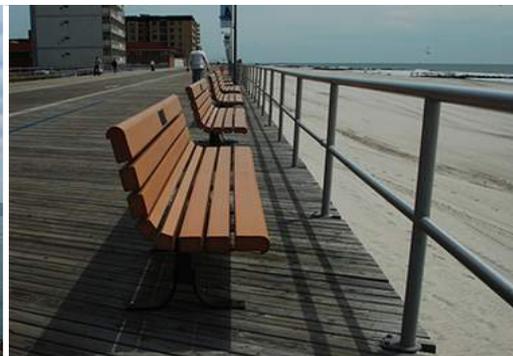
용이한 접근성이 확보된 디자인

■ 해안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정비

- 건축물 신축 및 개축 등 정비 시 바다방향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
- 해안 인접지에 도입되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시면적, 형태 등의 기준 마련
- 대기소, 창고, 선박시설 등과 전망타워 등을 계획 시 항구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제안과 주변의 녹화에 주력
- 필요시 항만, 어항 내에 사람들의 편리함과 유희함을 제공하는 장소로 소광장, 공원 등을 정비
- 제방 등은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방호책, 수목 등으로 차폐시키거나, 정형적이고 인위적인 형태가 부각되지 않도록 디자인 보안을 시도하고, 차후 수립될 수변지구 특정경관 계획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용



주변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해양조망이 가능한 친수공간

■ 해안경관과 조화되는 해안도로 정비

- 차도와 해안이 인접하는 공간계획은 적극 지양
- 수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 및 포장재료, 색채 등 디자인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보행로의 해안조망을 방해하는 가로등이나 수목 등은 이전하고 전신주 등은 내륙측으로 배치 하도록 유도
- 낙석방지책 등 인공구조물은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간 및 보호책 등 인공시설물을 도입하는 경우 원색사용 금지
- 도입시설물은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인위적인 디자인 도입 지양
- 경치 좋은 해안도로의 일부 구간은 속도 저감을 위한 포장으로 계획하고, 경관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의 도입 권장

■ 어촌마을의 경관 개선

- 마을타입별 건축디자인 매뉴얼(제안) 제시
- 방파제 상부 공원화, 마을 원림 조성 등 녹지율 높이기 등 다양한 시책제안 및 추진
- 당산나무 주변 정비, 돌담 만들기, 지붕형태, 색채 검토 등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추진



조망권이 확보되는 흥미로운 도로계획



다양한 경관연출이 가능한 해변건축물



녹지율이 확보되어 있는 조망공간



조감도식 경관연출이 가능한 시점 개발

■ 해수욕장 경관개선

- 해안 방풍림 또는 해안과의 경계지역에 완충녹지 조성
- 보전과 이용(시설도입) 공간의 구분 및 차별화된 정비계획안 제시
- 여름철 파라솔 색채 및 공동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추진 및 시행지침 마련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책로



조망 및 접근이 가능한 해변산책로

■ 도서지역에 대한 별도의 경관관리 및 지침마련

- 기암 등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으로의 접근은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조망점을 확보하여 관리
- 도서지역의 경관조명 도입에 대한 별도의 기준안 마련과 빛의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야간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를 통한 보완작업 시행
- 선착장, 해수욕장, 유원지 등은 해안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 재료를 선택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도서로 접근 또는 통과 시 노출되는 가시권역에 대한 경관관리 및 가치 있는 자연식생자원의 보전 유도



경관자원



빛의 도시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2.3 하당 · 남악신도시 경관권역 관리 및 설계지침

2.3.1 하당 · 남악신도시 경관구역 설계지침의 목표

▣ 하당 · 남악신도시 경관구역 설계지침의 목표

Identity	▪ 목포시만의 개성있는 공원 및 녹지경관 창출
친환경성	▪ 친환경적 공법 및 디자인을 이용한 경관조성
다양성	▪ 내륙과 바다 등을 활용한 경관 다양성의 연출
공공성	▪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경관창출

1) 정체성

- 미항목포 그리고 개항 도시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유도
- 힐링과 화력의 해양역사문화도시로서 '낭만 항구도시 목포'를 구현하기 위한 건축물 경관설계 지침 마련

2) 쾌적성

- 도시 전체의 건축물 경관 이미지를 고려하여 개별 건축디자인 요소 및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기준 마련
- 도시 내 개별 건축물의 경관적 디자인성을 제고하고 잘 정비되어 정연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 경관 조성

3) 역사성

- 개항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문화 유산이 존재하는 역사도시로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 낱알이 첨단화·대규모화·기능집적화 되어가는 건축 패러다임을 반영하면서도 역사적 건축 유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유도

■ 건축물 스카이라인 설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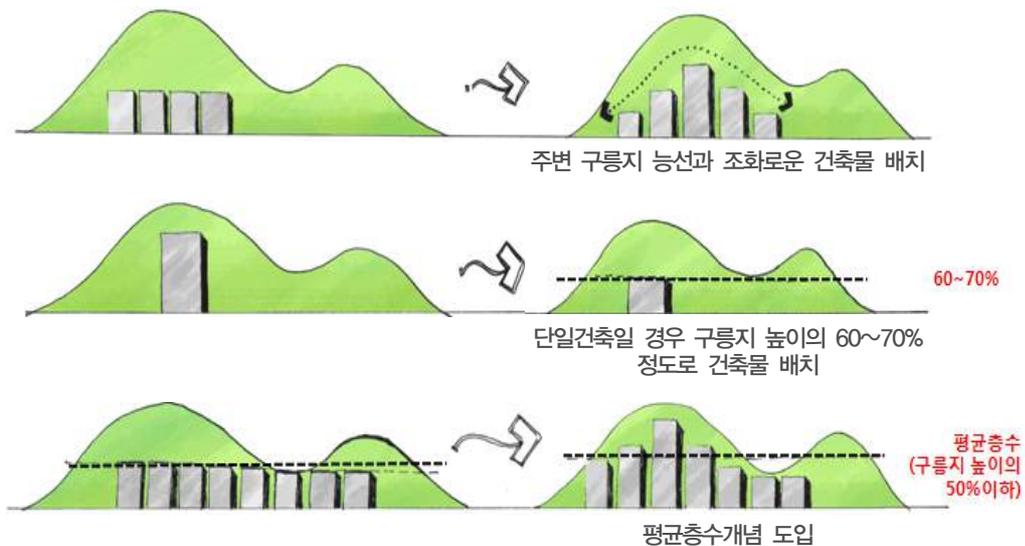
1) 도시경관 형성과 관리

- 조망점 설정을 통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의 형성 및 관리에 활용
- 진입부의 상징성을 강화하여 도시의 이미지 창출, 매력적인 시각회랑 및 통경축 확보, 단지 내외부에서 조망되는 우수한 경관 보존

2) 도시스카이라인의 형성과 관리 차원

-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및 주요가로경관의 건축물 계획 시 건축선을 다양하게 유도하여 스카이라인 창출
- 주요교량, 간선도로, 도로의 교차점, 해상에서 도시경관을 조망하는 경우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시곡면 분석에 의한 고도규제 (차후 조망권 경관지구 신설시 적용)
- 주요 조망점에서 통경축 확보 및 상징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계획 시 조망영역과 대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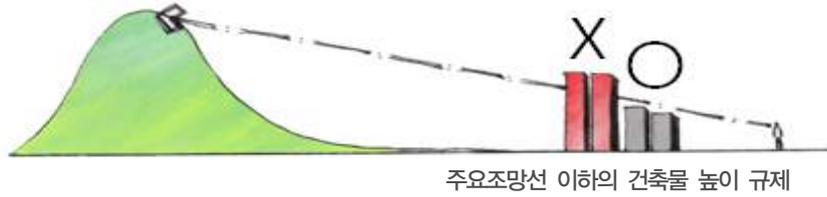
3) 배경에 구릉지가 있을 경우 건축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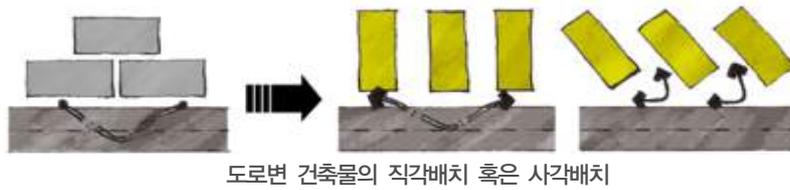
4) 단지 내 규제조망 확보를 위한 스카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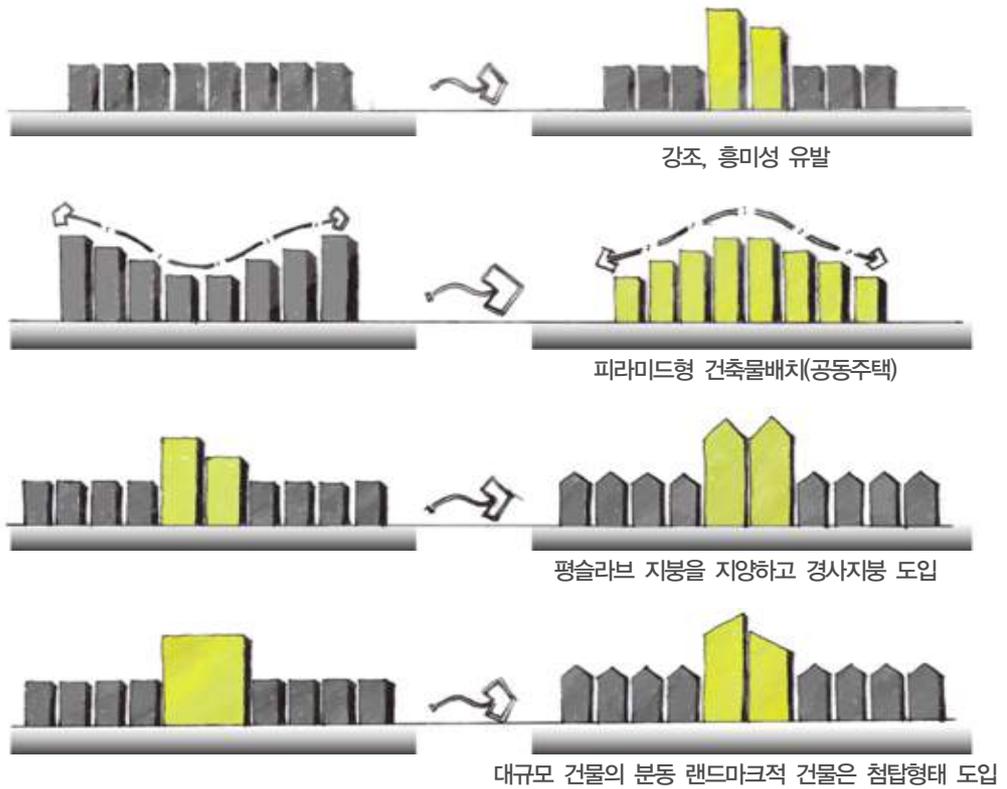
5) 개발 예상지 조망점의 확보를 위한 높이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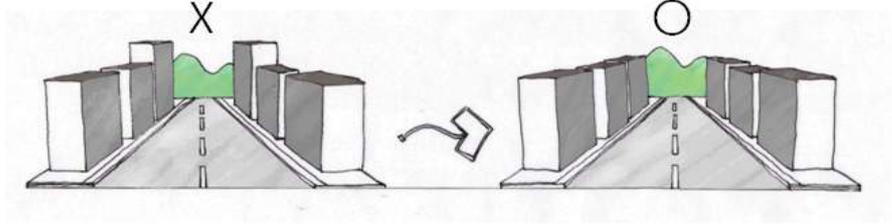
6) 건축물 배치를 통한 시각회랑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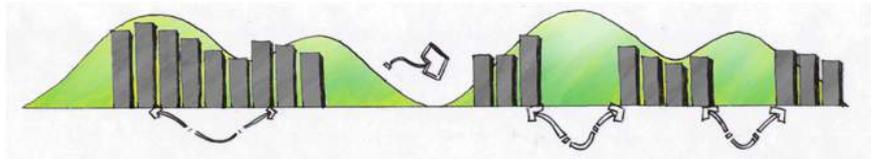
7) 배경에 구릉지가 없을 경우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건축물



8)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계획 시 통경축을 확보하여 시각회랑 조성



9) 공동주택단지나 상업건축물 사이로 통경축 및 시각회랑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계획



공원 및 녹지경관 설계지침의 방향

1) 공원 및 녹지경관의 Identity 확보 차원

- 개성 없는 공원 및 녹지경관의 조성을 지양하고, 목포시의 인문사회 및 역사적 배경이 뒷받침 되는 주제공원 조성을 적극 유도
- 관광형 공원 및 기능위주의 단순녹지 조성은 지양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용이한 접근 및 활용도가 높은 공원녹지 조성 유도

2) 공원 및 녹지경관의 친환경성 확보 차원

-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의 재료를 목재나 흙(황토), 자연석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 및 비가공재료의 사용 유도
-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위한 비오톱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인근에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의 녹화 유도

3) 공원 및 녹지경관의 다양성 확보 차원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제가 있는 특화된 공원 및 광장 조성 유도
- 계획목적에 알맞은 식재디자인 및 수종선택을 하여 공간의 다양성 확보

4) 공원 및 녹지경관의 공공성 확보 차원

- 공원 및 녹지경관 조성 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공원 및 녹지경관은 시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디자인 및 최대한의 접근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계획

1) 공원 및 녹지경관 설계지침

1) 공원, 광장 등 녹지유형 및 조성목적에 적합한 식재계획

-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유하는 장소에서는 주변식생과 조화된 식재를 권장함과 동시에 기존수목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자연자원의 활용 도모
- 도시공원 및 공원의 식재는 가로수 등의 도로녹화와의 연속성 및 조화를 고려하여 수종선정 및 배치계획 수립
- 연도 및 인접부는 외부에서의 시야가 부분적으로 확보되도록 식재하여 공간의 개방성 및 도로녹화와의 연속성 유도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개방적인 담장



주제가 있는 특화된 공원

2) 공원 내 건조물은 형태, 의장, 소재, 색채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주변과의 조화, 경관개선 등에 있어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 공원 내의 건조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활용한 디자인 및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성품의 사용은 지양
- 공원 경계부에 배치되는 건조물은 인접 가로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며, 특히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설계 시 종합적인 검토 권장



공원과 조화로운 플랜터 디자인



도로인접부의 흥미로운 플랜터 디자인

3) 원지형 보전을 통한 튼튼한 녹지 네트워크

- 시가지 내 원지형 및 인접녹지의 보전을 통한 녹지경관 관리
- 가로변 및 중앙분리대에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의 보식과 적절한 전정 등 미관을 고려한 양호한 녹지네트워크 확보
- 도로 폭에 맞는 수목 스케일 채택, 자생수종, 향토수종 활용



주변녹지와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건물녹화



중앙분리대 녹지대

4)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위한 바이오톱 조성

- 해안생태계의 적극적 보존 및 훼손지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유도
- 하천의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 시 기존 식생 등 생태조사를 근거로 환경을 고려한 식생도입 및 자연소재를 이용한 디자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저수지 주변의 정비는 기존식생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하되 안전을 위한 정비 지침을 마련토록 권장
- 건물 입면의 녹화, 특히 주차 빌딩 및 옥상부의 녹화를 통하여 도시 내에서의 생물이동 및 서식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유도



디자인 및 색채가 조화로운 시설물



공원주제에 맞는 시설물디자인

5) 기존 공원계획의 조속한 시행 및 현 여건을 고려한 설계보완

- 녹지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 위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원녹지계획의 조속한 시행 필요
- 단기 계획의 경우 도시의 특성 및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도입 및 디자인 보완 실시
- 조형물, 스트리트 퍼니처 및 포장 등의 통합된 디자인 접근을 통한 공원의 질 향상 유도



자연소재를 사용한 주차장



자연과 조화로운 스트리트 퍼니처

6) 유휴지 및 교통섬 등을 이용한 소공원 및 소광장 조성

- 자투리땅, 나대지 등의 쌈지공원화를 통해 주민휴식공간으로의 활용 유도
- 교통섬 및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대 조성 시 반드시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차별성이 부여되도록 유도
- 도심지 내 또는 도로변 곳곳에 전망포켓을 설치하여 흥미로움 부여



기억에 남는 시설물 디자인



디자인성이 가미된 건물입면의 녹화

7) 주민참여를 통한 근린공원녹지의 테마공원화 유도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동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제공



참여를 통한 근린공원조성



동호회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근린공원조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2.4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관리 및 설계지침

2.4.1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목표

고품격화	▪ 경관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의 고품격화 추진
보존성	▪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훼손 방지
조망성	▪ 인근 지역 건축물 및 구조물 고도를 일부 제한
조화성	▪ 건축물 및 공원이나 녹지 등의 역사문화 경관자원과의 조화

1 역사문화 경관의 고품격화

- 유달산 노적봉, 만호진, 목포문화원, 이난영 생가, 양동교회, 목포역 광장 등 경관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의 고품격화 추진

1 경관자원의 보존성 강화

- 개별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훼손 방지

1 인지성 강화 및 조망성 보장

- 개별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조망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 건축물 및 구조물의 고도를 일부 제한하여 시지각을 통한 시민 및 지역 방문자의 인지도 향상

1 인근 지역과의 조화

- 개별 역사문화 경관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 및 공원이나 녹지 등이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마련

2.4.2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방향

1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보존성 강화 차원

-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비 유도
- 역사문화 자원의 도시 랜드마크 기능강화를 위한 경관관리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인지성 강화 및 조망성 보장 차원

- 역사문화 경관자원 주변부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양각규제를 통한 스카이라인 관리 유도
- 개별 역사문화 경관자원이 배경으로부터 두드러져 조망될 수 있도록 인접 및 연계부의 오픈 스페이스화 유도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인근 지역과의 조화 차원

- 역사문화 경관자원으로의 용이한 접근동선 및 진입부 디자인이 일체화 되도록 유도
-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바닥포장 디자인화 유도
- 전통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체계적이고 통일감 있는 안내 및 홍보시스템 도입 및 야간조명 디자인 도입 유도

2.4.3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설계지침

도심 속 역사자원을 도심 랜드마크로 활용

- 목포문화원, 목포진 등은 도심 랜드 마크로서 주요 조망대상이자 조망이 가능한 경관거점으로 활용 추진
- 역사자원 주변부 건축 및 간판, 옹벽, 담장 등은 전통 디자인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현대적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계획 지양
- 식재계획은 외래수종의 선택은 지양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
- 체계적이고 통일감 있는 안내 및 홍보시스템 도입
- 역사문화자원에 걸맞은 품격 있는 야간조명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통역사지구의 수변정비



주변과 차별성 있는 지붕디자인과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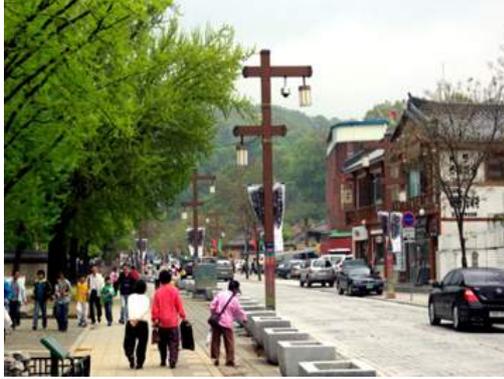
인지도가 높은 전주 한옥지구



자원을 돋보이게 하는 야간조명 디자인

1 인지성 향상을 위한 역사자원 진입부 및 진입로 경관 정비

- 역사자원으로의 용이한 접근동선 확보 및 진입부 디자인 보완계획 수립과 자원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증진을 위한 전략 제안
- 역사자원의 형태, 색채특성의 부각(유사 디자인 사용 금지)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관리를 적극 도입



전통마을 입구의 디자인 된 가로시설물



일본 이세시 사적지 진입부의 상가시설

- 자원을 고려한 주변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정비사업 추진
-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비정형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 포장 디자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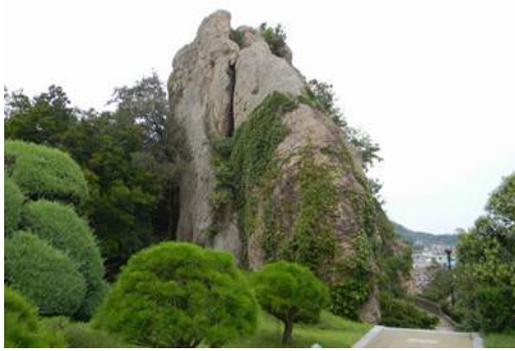
인사동의 거리 포장디자인



가회동 한옥지구 도로 포장

1 근대역사관 등 역사문화 경관자원 주변 정비

- 노적봉의 상징적인 암반경관이 부각될 수 있도록 주변녹화는 지양하며, 주변에서의 가시권이 보장되도록 전면부에 여유공간 확보
- 랜드마크 개념의 공원화로 영역잠식 및 훼손방지 등 철저한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
- 주변 환경정비 및 가로시설물과 포장 등 통합된 디자인 제시를 통해 역사문화경관의 가치 증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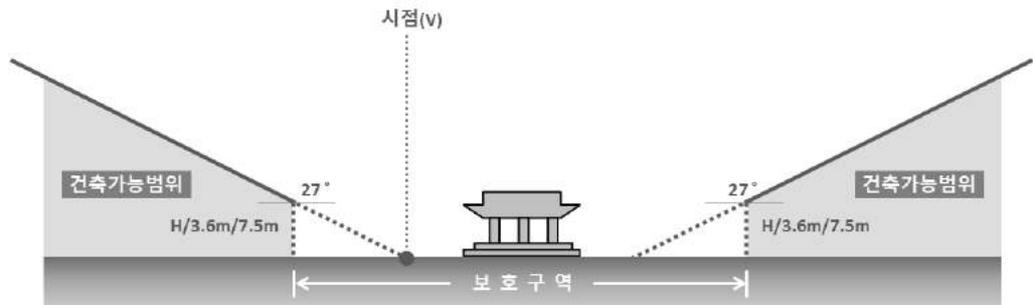
노적봉



유적지 주변 정비

■ 역사문화자원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일정지역 내의 건축물에 대해 양각 27도의 건축물 높이규제로 조망점을 확보하고, 양호한 경관확보
- 목포시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필요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 목포의 역사 및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건축물, 가옥, 상징물 등 가치 있는 자원의 훼손 및 철거 금지

- 개항 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목포시의 역사문화자원은 가치 유무와 관계없이 현 상태로 보존 필요
- 마이너스 이미지의 자원 역시 주요경관요소이므로 훼손 및 파괴는 지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가능성을 예상하여 보존하도록 유도

2.5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관리 및 설계지침

2.5.1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목표

녹화성	▪ 산업지내 식재 밀도와 녹지대를 늘려 풍부한 녹화 유도
친화성	▪ 공장 건축물의 친화 디자인 지침 마련
조화성	▪ 산업지와 인근지역 경관과의 조화 유도

■ 친화

- 산업지 경관에 대한 주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공장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친화 디자인 지침 마련

■ 녹화

- 식막해지기 쉬운 산업지 접근도로 및 내부, 건축물 개별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훼손 방지

■ 조화

- 산업지와 인근 지역 경관과의 조화 유도

2.5.2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설계지침의 방향

■ 북부산업지 공장 건축물의 친화성 강화 차원

- 공장 건축물의 입면, 굴뚝 등의 디자인성을 강화하여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거부감완화

■ 북부산업지 경관의 녹화 차원

- 산업지 내부 및 인접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밀도와 녹지대를 늘려 풍부하고 녹화 유도

■ 북부산업지와 인근 지역과의 조화 차원

- 지역경관의 구조와 형식을 존중하는 배치체계와 건축 밀도를 조절하고 경관색채 계획을 통해 조화성 유도

2.5.3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설계지침

■ 자연 지형(산, 구릉) 능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배치와 형태

-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설치 및 정돈된 옥상설비 설치
- 건축의 볼륨감 경감 및 옥상 또는 벽면의 분절화
- 공장과 사무소의 조화 또는 일체화
- 건축물과 일체화 또는 조화되는 설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장배치



공장건축물의 볼륨감 경감(벽면 분절)



공장건축물의 볼륨감 경감(지붕 분절)



벽면의 분할에 의한 압박감 최소화



건축물과 옥상설비의 일체화

풍부한 녹지 조성

- 도로와 산업단지 사이, 도심과 산업단지 사이 등에 풍부하고 충분한 완충녹지대 조성
- 단지 내 도로변 가로수, 녹지 등의 확충
- 테마 가로수 식재로 이벤트 시 시민에게 개방



산업단지 사이의 완충녹지대 조성



산업단지 내 녹지 확충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정비 및 색채디자인 정비

- 단지의 정체성을 반영한 단지 문주 사인
- 종합 안내시스템 / 통합시스템 개발
- 기능별, 단지별 주조색 및 강조색 통일

옹벽 및 건축 벽면 디자인 개선

- 자연 재료로 마감한 그대로 두거나 역사성, 장소성을 설명해주는 수준 높은 그래피티 도입
- 덩굴성 식물로 녹화 피복하고, 공장 건축물 외벽면 설비 노출 방지



식재 담장



오픈 스페이스에의 식재연출

3. 용도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

3.1 용도지구별 가이드라인

3.1.1 경관관련 지구 지정 현황

구분	지구세분	지구명	위치	면적(m ²)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유달지구	유달공원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일부	102,671
시가지 경관지구	중심지	상동	터미널주변 대1-1호 도로변	5,820
	일반	남해	광로(2-1) 백련로	21,666
고도지구	유달산주변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주변	390,625
	해안로주변		동명동 ~ 온금동	205,000
보호지구	유달보호지구		목포시 유달동 4-1번지	2,367
	고하도보호지구		목포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일원	38,000

3.1.2 경관지구 가이드라인

항목	내 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의 세부 지정내용에 따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 제한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 있는 지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 가능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폐율은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의 세부 지정내용에 따름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안의 조경 등은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의 세부 지정내용에 따름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제한은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의 세부 지정내용에 따름

자연경관지구

항목	내 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2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40%이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조경면적 확보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조경면적 확보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지구 내 특정 건축물 건축제한(아파트, 집회장, 관람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자동차관련시설, 묘지 등)

1 시가지경관지구

항목	내 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름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건축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규제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경관지구 내 특정 건축물 건축제한(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1 특화경관지구

항목	내 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2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40%이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조경면적 확보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조경면적 확보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경관지구 내 특정 건축물 건축제한(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등)

3.1.3 고도지구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지구에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3.1.4 보호지구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특정 건축물 용도제한(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시장, 쇼핑센터,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지시설, 수련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지구 내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4.1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 2015년 전라남도 경관계획상의 목포시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과 2008년 경관 기본관리계획상에서 제시된 영역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평가하여 주요지점을 선정
- 2020년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상에서 제시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 검토

구분	계획내용	
수변	북향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삼학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목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자연	유달산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도로	국도77호선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전라남도 경관계획
시가지	목포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전라남도 경관계획
	목포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서산온금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지정

4.2 구역별 경관가이드라인

4.2.1 북향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시설물의 외관을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권장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
	▪ 건축물의 높이를 1층 이하로 규제하여 수변경관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재 권장
	▪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의 외부 노출 지양
색채	▪ 수변지역의 시설물의 경우 B계열 색상보다는 G계열의 색상으로 조화유도
	▪ 가로등 등 스탠딩형 시설물의 색채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색으로 채색 권장
	▪ 저채도 색상 사용을 통한 안정적인 이미지 연출
공공공간	▪ 공공공간 설치 시 수변경관에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 권장
	▪ 수면에는 교량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 지양
옥외광고물	▪ 연결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서체 등의 통일성 권장
	▪ 옥외광고물의 설치 수량 최소화 권장
	▪ 지구별, 거리별 특성이 반영된 형태와 강조색채 사용 권장
야간	▪ 야간 보행자를 위해 보행자 중심 바닥 조명 사용을 권장
	▪ 장식적 조명을 일체 규제하며, 지주형 조명의 경우 빛이 보행로 밖을 비추지 않도록 규제권장
	▪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품격 있는 야간경관 연출

4.2.2 삼학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시설물의 외관을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권장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
	▪ 수변을 향해 시각회랑을 확보
색채	▪ 수변지역의 시설물의 경우 B계열 색상보다는 G계열의 색상으로 조화유도
	▪ 가로등 등 스탠딩형 시설물의 색채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색으로 채색 권장
공공 공간	▪ 공공공간 설치 시 수변경관에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 권장
	▪ 수면에는 교량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 지양
	▪ 공원 내 식재대의 종류와 위치를 자유롭게 하되 공공공간의 경우 일정한 품종과 간격 권장
	▪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완화를 위해 잔디블록을 활용한 주차장 형성 권장
야간	▪ 야간 보행자를 위해 보행자 중심 바닥 조명 사용을 권장
	▪ 장식적 조명을 일체 규제하며, 지주형 조명의 경우 빛이 보행로 밖을 비추지 않도록 규제권장
	▪ 야간경관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은 자연생태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4.2.3 유달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시설물의 외관을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권장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
	▪ 건축물의 높이를 1층 이하로 규제하여 수변경관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재 권장
색채	▪ 가로등 등 스탠딩형 시설물의 색채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색으로 채색 권장
공공공간	▪ 외부공간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원경에서 조망 시 개발지의 건축물로 인해 거대한 차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경 축을 확보
야간	▪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상과 명도로서 녹지경관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연출
	▪ 인공적인 경관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고 광공해 방지

4.2.4 국도77호선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시설물의 외관을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권장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
	▪ 건축물의 높이를 1층 이하로 규제하여 수변경관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재 권장
	▪ 용도 및 기능과 연관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징성이 있는 색채 사용
색채	▪ 가로등 등 스탠딩형 시설물의 색채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색으로 채색 권장
	▪ 시각정보매체 자체에 채색되는 강한 원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선에 부담을 주므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 수목이나 시설물이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공공 공간	▪ 주변 기타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
	▪ 동일지역 내 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
	▪ 정보전달을 위해 표기요소의 간결화
야간	▪ 공간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재료 사용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 보도, 육교를 대상으로 기준 적용
	▪ 주변 도시공간과 조화되는 경관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장식성을 강조하는 야간조명 설치 지양
	▪ 야간에 도로이용자의 시각 환경을 개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계획

4.2.5 목포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상징성 부여를 위해 역 전 건축물의 공간적 연속성과 장소성에 맞는 색채로 통일 유도
	▪ 주변 건축물의 외벽 녹화 및 저채도 색채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옥상정원화를 권장하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사용 권장
	▪ 유달산 자연스카이라인을 차폐하지 않는 5층 이하의 건축물 조성
옥외 광고물	▪ 어닝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되 주거층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 유도
	▪ 보도를 침해하는 가판대 및 입면간판을 지양하고 크기 제한
	▪ 역 전 지역의 간판 디자인을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하되 상가들의 개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색채	▪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저채도의 색채로 생활도로변 상가지역의 입면 색채를 통일 유도
공공 공간	▪ 주변 지역의 정원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종의 식재 배치
	▪ 방문객의 공간 확충을 위해 역 앞에 집중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주변 산림에 어울리는 역 앞 공간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재료를 사용 권장
	▪ 주차공간과 보행공간을 구분하고 생태주차장 설치 권장
야간	▪ 교통중심지역 특화를 위한 역 주변 야간조명 계획
	▪ 생활지역과 인접한 상가의 경우 간접조명의 사용을 권장과 빛의 밝기 제한
	▪ 역 주변의 정돈된 야간경관을 위하여 관련법 기준에 근거한 조명 설치 권장

4.2.6 목포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건축물의 외벽 녹화 및 저채도 색채 사용 권장 유달산 자연스카이라인을 차폐하지 않는 5층 이하의 건축물 조성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닝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되 주거층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 유도 보도를 침해하는 가판대 및 입면간판을 지양하고 크기 제한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저채도의 색채로 생활도로변 상가지역의 입면 색채를 통일 유도
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역과 인접한 상가의 경우 간접조명의 사용을 권장과 빛의 밝기 제한 역 주변의 정돈된 야간경관을 위하여 관련법 기준에 근거한 조명 설치 권장

4.2.7 서산온금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온금지구만의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입면 소재 및 색채 제한 관광객이 자주 접하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특색 있는 건물외관 형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및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유달산 자연스카이라인을 차폐하지 않는 3층 이하의 건축물 조성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목 등의 자연소재 및 설치 방식을 활용한 시공방식 사용 보도를 침해하는 가판대 및 입면간판을 지양하고 크기 제한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저채도의 색채로 생활도로변 입면 색채를 통일 유도 해안 주변 건축물의 지붕색채 등 통일화를 통하여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공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주변과 거리에 지나친 시설물 설치 지양 외부공간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역과 인접한 상가의 경우 간접조명의 사용을 권장과 빛의 밝기 제한 녹지 및 수변공간의 야간조명을 시가지와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지나친 조명 사용을 자제하고 보행로의 경우 바닥조명 위주로 사용

4.2.8 목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내용
건축물	▪ 시설물의 외관을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권장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
	▪ 유달산 자연스카이라인을 차폐하지 않는 5층 이하의 건축물 조성
	▪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의 외부 노출 지양
색채	▪ 가로등 등 스탠딩형 시설물의 색채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색으로 채색 권장
	▪ 저채도 색상 사용을 통한 안정적인 이미지 연출
공공 공간	▪ 공공공간 설치 시 수변경관에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 권장
	▪ 간결한 정보전달을 위해 표기요소의 간결화
옥외 광고물	▪ 연결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서체 등의 통일성 권장
	▪ 옥외광고물의 설치 수량 최소화 권장
	▪ 보도를 침해하는 가판대 및 입면간판을 지양하고 크기 제한
야간	▪ 생활지역과 인접한 상가의 경우 간접조명의 사용을 권장과 빛의 밝기 제한
	▪ 지나친 조명 사용을 자제하고 보행로의 경우 바닥조명 위주로 사용
	▪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품격있는 야간경관 연출

5.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5.1 가이드라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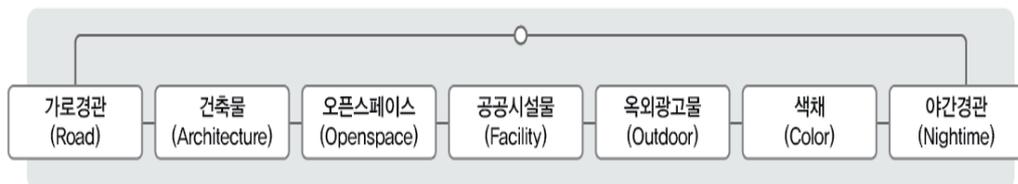
1 목적

- 경관계획을 실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목포시만의 매력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 설계 지침 제시
- 개발사업 수립 및 개별 시설의 설계 시 경관계획이 충실히 반영되고, 도시경관차원에서 조화로우며 특색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효율적으로 유도

1 구성체계

- 요소별 경관의 세부구성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 목포시 경관에 적용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가이드라인 우선순위 선정
- 경관변화 개선의 여지가 크고 관의 주관으로 가장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요소별로 우선순위 적용

구분	세부내용	우선순위
가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로 도시 미관 향상 ▪ 상징가로, 내부가로, 수변가로, 보행가로 등에 관한 사항 제시 	3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로 도시 미관 향상 ▪ 권역별 가이드라인과 용도별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제시 	2
오픈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 있는 도시경관 창출 및 통합적 경관 관리 유도 ▪ 공간별 특성 및 가로 환경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4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공간 형성 ▪ 기능성, 통합성, 안전성, 보편성, 정체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1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가로 경관 형성 ▪ 조화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형태, 표기방법 등을 제시 	2
색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편안함과 쾌적함을 위한 색채 경관 형성 ▪ 조화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형태, 표기방법 등을 제시 	3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창출하며, 빛 공해 방지가 가능한 경관 형성 ▪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조명 등에 관한 사항 제시 	3



5.2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1 개요

1) 목적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경관 조성
- 보행 시점에서의 다양한 경관 제공을 통해 즐거움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2) 규정항목

- 가로경관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배치높이, 건축물 입면, 전면공지, 보도, 조경, 가로시설물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

규 정	정 의
건축물 배치·높이	건축물 배치 및 높이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 입면	건축물 입면에 대한 디자인 및 소재 등에 관한 규정
전면공지	건축물 앞 전면공지의 활용형태 및 디자인 등에 관한 규정
보도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행공간인 보도에 관한 소재 및 디자인 등에 관한 규정
조경	가로수 및 녹지 공간 조성 등에 관한 규정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 등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분 류	세부 내용
상징가로	가로축 선형을 따라 시각적인 초점이 형성되는 공간에 조성되는 상징적인 가로
주요가로	이동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로써 이용성이 높은 가로
보행가로	보행중심의 생활가로
수변가로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활동적인 수변에 조성되는 가로

1 주요원칙

1) 기본방향

- 가로수 및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 녹지축 형성 및 생태계 형성
- 시가지 가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한 연속적이며 순환되는 가로이미지 연출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통합적 가로경관

- 주변 건축물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 가로시설물 디자인 통합을 통한 일체화된 가로경관 조성

3) 녹음이 짙은 친환경 가로경관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가로경관 조성
- 가로수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녹음이 풍부한 가로경관 조성

4) 보행자의 쾌적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가로경관

-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제시
- 보행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

5)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있는 가로경관

- 지역의 상징요소 도입을 통한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
- 다양한 이벤트 및 조형공간 조성을 통한 다른 지역 가로와의 차별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통합적 가로경관



가로수 및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한 친환경 가로경관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한 가로경관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있는 가로 경관

상징가로

1)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배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 정연한 가로벽 형성을 위한 배치 유도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가로 고유의 특화된 입면 디자인 요소 또는 패턴 개발 가로변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 사용 권장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하는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및 보행 지장물 설치 금지 보행로 폭원이 충분하게 확보되는 경우 여유부분에 휴게공간 조성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의 녹지축으로 조성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가로 고유의 특화된 바닥 패턴 디자인 개발 보도 단절부분에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법 도입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선형의 녹지대 조성 목포시 상징하는 가로수 및 초화류 경관식재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 도입 가로 시설물을 통합시스템으로 계획하여 가로공간의 효율적 이용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겸용도로를 확보하고 바닥포장 구분

2) 사례이미지



가로수를 활용한 상징가로 연출

열주를 활용한 상징가로 연출

녹지를 활용한 중앙분리대

3) 설계지침



1) 주요가로

1)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배치·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 돌출되거나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 배치 지양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 사용 권장 입면적이 넓은 경우 입체적 면 분절, 타 재료의 혼합 또는 상층부 건축선 후퇴 등 위압감을 완화하고 리듬감 있는 이미지 연출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하는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및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보행로 폭원이 충분하게 확보되는 경우 여유부분에 휴게공간 조성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의 녹지축 형성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단절부분에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법 도입 통일성 있는 바닥패턴 사용으로 가로의 연결성 확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 교통섬, 교차로 광장 설치, 중앙분리대 녹화 등으로 가로녹지축 형성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선형의 녹지대 조성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시설물을 통합시스템으로 계획하여 가로공간의 효율적 이용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겸용도로를 확보하고 바닥포장 구분

2) 사례이미지



가로수를 활용한 상징가로 연출

열주를 활용한 상징가로 연출

녹지를 활용한 중앙분리대

3) 설계지침



보행가로

1) 보행중심의 생활가로

- 거주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쾌적하고 풍성한 공간으로 조성
- 가로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배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높이 계획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이상 후퇴하여 배치 ▪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조성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보행공간과 일체적인 경관 형성 유도 ▪ 보행 편의를 고려하여 가로변 1층부에 필로티, 아케이드, 회랑 등 조성 유도 ▪ 가로변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 사용 권장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전면공지는 접하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 보도 또는 휴게공간 조성 ▪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녹시율을 높임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과 휴식을 동시에 고려한 패턴 형성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보도 포장 ▪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제시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및 수(水)요소를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화된 가로환경 조성 ▪ 녹지축 조성을 위한 초화류 화단 및 가로수길 조성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부에 안내시설, 유도사인 등 설치 및 통합적 사인시스템 도입 ▪ 보행로 및 오픈스페이스에 보행흐름을 고려하여 각종 편의시설 설치 ▪ 차량동선과 교차하는 부분은 보도로 포장하고 사중점에는 볼라드 설치 등으로 보행 안전 확보

3) 사례이미지



친환경 포장 및 녹지공간 확보



가로전면 휴게공간 조성

1 수변가로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활동적인 수변에 조성되는 가로
-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자연경관 조망 보존
- 수경관과 인공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

1)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배치·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 ▪ 수변을 향해 시각회랑을 확보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적인 수변이미지 조성 권장 ▪ 수변공간으로서 특화된 입면 디자인 요소 도입 ▪ 워터프론트의 활력과 개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에 면해 테라스 및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여 수변 조망이 가능한 외부공간 조성 유도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하는 보도와 연속되도록 조성 ▪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활동적인 수변경관 창출 ▪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특징적인 경관 연출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갈, 나무 데크 등 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포장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가로변 녹지대 조성 등 녹지축을 형성하되 수변으로의 시야 확보 ▪ 산책로·오픈스페이스의 연속적 조성으로 조망과 휴식을 위한 공간 활용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재를 일반도로와 차별화하여 차량속도 저감 유도 ▪ 공공디자인을 통해 수변경관을 고려한 특화된 디자인 요소 도입

2) 사례이미지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축 형성 수변공간 앞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다양한 즐길 거리 있는 친수공간 조성

3) 설계지침



5.3 건축물 가이드라인

1 개요

1) 목적

- 목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도록 기본 방향 및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각 유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통합적이고 쾌적한 경관 연출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조화로운 목포시 경관 창출

2) 규정항목

- 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설치·배치, 형태·외관, 재질·색채, 외부 공간 기타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

구 정	정 의
설치·배치	▪ 건축물의 배치 및 상호관계 규정
형태·외관	▪ 건축물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재질·색채	▪ 건축물을 구성하는 색채와 재료의 속성 규정
외부 공간	▪ 건축물 외부 공지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구 분	세 부 내 용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 ▪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존재
상업·업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제14호 나.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산업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 ▪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공익사업·운수통신업·유통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공공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하고 이용하는 시설

공동주택

-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
-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방감 있고 시원한 공동주택 이미지 부여
- 공동주택 높이 및 규모에 의해 위압적인 경관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감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배후 산악 스카이라인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 계획 수립 ▪ 배후 산악에 대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직각 배치 허용 ▪ 주변 환경에 대한 조망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계획 수립
형태·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며 변화감 있는 형상 도입을 통한 리듬감 부여 ▪ 배후 산지와와의 조화성 향상을 위해 경사형 지붕 권장 ▪ 저층부, 상층부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 완화 ▪ 다양한 입면 구성을 통해 건축물 입면 및 축벽의 위압감을 완화하고 리듬감을 부여하여 특색 있는 이미지 연출
재질·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자재 활용 ▪ 원색의 사용은 지양하고, 주조색은 자연색 또는 무채색 계통 적용 ▪ 다른 느낌의 재질 및 색채 적용으로 변화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되, 과도한 재질 및 색채의 혼합은 시각적 혼란을 증대시키므로 가급적 지양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는 상징성 및 인지성을 부여하고,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확보 ▪ 생활터리 및 투시성 자재 적용 ▪ 녹화 또는 녹지대를 풍부히 조성하여 자연적이고 쾌적한 이미지 부여

2) 사례이미지



배후 산악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및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

■ 상업 · 업무건축물

- 상업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제14호 나. 일반업무시설
- 이용성이 높은 건축물로서 활동적이고 쾌적한 이미지 부여
- 가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에 대응하는 건축물 배치 및 저층부 형성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을 후퇴하여 가로변 전면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건축지정선을 통일시켜 일체감 부여 ▪ 주변 가로환경 및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동선 계획 수립 ▪ 주변 건축물 및 배후 산악 스카이라인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산악에 대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및 배치계획 수립
형태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에 면한 1층부 상업시설은 외벽면 투시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 ▪ 저층부 옥상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옥상녹화 권장 ▪ 옥상 및 지붕의 각종 설비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 ▪ 입면적이 넓은 경우 입체적 면 분절, 타 재료의 혼합 또는 상층부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하고 리듬감 있는 이미지 연출 ▪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시형 소재 도입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마감재를 적용하고 투시형 또는 자연 소재의 혼합을 통해 개방감 있고 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 ▪ 화려한 고채도의 원색 도입을 지양하고 중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색채 적용을 통해 단아하고 편안한 이미지 연출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저층부에 테라스, 어닝 등을 설치하여 인접한 건축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편의성 및 독창성 부여 ▪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는 것을 권장 ▪ 녹지가 풍부하고 자연적인 휴게형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친근한 이미지 연출

2) 사례이미지



자연소재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



건축선 후퇴 및 가로변 전면 공지를 통해 보행공간 확보

1) 근린생활건축물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공간으로 친근하고 개방적인 이미지 부여
- 주변 환경과 연속성 있는 분위기 조성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의 선적인 연속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한 배치 계획 수립 ▪ 건축물 주된 벽면 방향은 획지가 접하는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치 ▪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 ▪ 주변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행 동선 확보 ▪ 저층부에 개방감 있고 세련된 분위기의 중정형 근린생활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도입하여 이용편의성 도모
형태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 ▪ 입체적 면 분절 및 Void 등을 활용하여 위압감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이미지 연출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 입면, 측면 및 옥탑부가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선형 도입 ▪ 과도한 조형성 부여를 지양하고 간결하며 기하학적인 형태를 도입하여 깨끗한 이미지 부각 ▪ 음각 · 양각을 활용한 입체적 면 분절과 발코니, 베란다 특화 등을 통해 리듬감 있고 다양한 이미지 연출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개방감 확보 ▪ 자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이미지 부여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재질 및 색채 적용을 권장 ▪ 고채도의 원색 계열 색상 도입을 지양하여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는 것을 권장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이용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개념 도입 ▪ 녹지를 도입한 휴게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친근하고 자연적인 이미지 부여 ▪ 상층부 건축선 후퇴 및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

2) 사례이미지



주변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행 동선 확보



간결, 기하학적 형태 도입하여 깨끗한 이미지 부각

단독주택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산악 정상부 또는 능선부에 설치하는 것을 배제 ▪ 주변 환경과의 선적인 연속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한 배치를 계획하고, 유기적인 연계 동선 확보 ▪ 중 · 저밀의 배치를 통해 녹지 공간, 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형태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탑부에 설치되는 옥외설비, 물탱크 등의 노출을 지양하고, 부속시설 등은 차폐하거나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부감 조망시점에서의 이질감 및 불쾌감 완화 ▪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 및 외관 정비를 통해 블록 단위별 입체감 조성 ▪ 테라스형 단독주택은 평지붕의 옥상부를 녹화하여 마당 또는 정원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 난잡하고 복잡한 형태의 개구부 설치 및 배열을 지양하고 미려한 마감을 통해 건축물과의 이질감 완화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도입하고 인위적인 도색을 지양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 지붕 및 벽체가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주변 환경색과의 관계를 고려한 색채 적용 ▪ 소재 또는 색상의 변화감 적용을 통해 개성 있는 주거지 경관 조성 ▪ 3~4가지 이상의 다른 소재 또는 색상을 적용하여 시각적 혼란이 증대되는 것을 지양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외벽에 적용한 소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소재를 적용하고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생울타리 담장 설치 권장 ▪ 필로티 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도입하여 전면 공지 및 가로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 ▪ 다양한 커뮤니티 · 자연형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유도 ▪ 가로 환경과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녹지대 및 쉼터 등을 적용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

2) 사례이미지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



자연친화적 소재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1) 공공건축물

-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지양하고 깨끗하며 친근한 이미지 연출
-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지역특색이 반영된 공공건축물 계획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산악 정상부 또는 능선부에 설치하는 것을 배제 ▪ 주변 환경과의 선적인 연속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한 배치를 계획하고, 유기적인 연계 동선 확보 ▪ 중 · 저밀의 배치를 통해 녹지 공간, 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형태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탑부에 설치되는 옥외설비, 물탱크 등의 노출을 지양하고, 부속시설 등은 차폐하거나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부감 조망시점에서의 이질감 및 불쾌감 완화 ▪ 테라스형 단독주택은 평지붕의 옥상부를 녹화하여 마당 또는 정원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 난잡하고 복잡한 형태의 개구부 설치 및 배열을 지양하고 미려한 마감을 통해 건축물과의 이질감 완화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도입하고 인위적인 도색을 지양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 지붕 및 벽체가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주변 환경색과의 관계를 고려한 색채 적용 ▪ 소재 또는 색상의 변화감 적용을 통해 개성 있는 주거지 경관 조성 ▪ 3~4가지 이상의 다른 소재 또는 색상을 적용하여 시각적 혼란이 증대되는 것을 지양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의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외벽에 적용한 소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소재를 적용하고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생울타리 담장 설치 권장 ▪ 필로티 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도입하여 전면 공지 및 가로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 ▪ 다양한 커뮤니티 · 자연형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유도 ▪ 가로 환경과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녹지대 및 쉼터 등을 적용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

2) 사례이미지



저층부 또는 옥탑부에 녹화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부여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지양, 깨끗하며 개방감 있는 형태

5.4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1 개요

1) 오픈스페이스란?

-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외부 및 준 외부영역에 조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공간

2) 목적

- 오픈스페이스 디자인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경관 창출 및 통합적 경관 관리
-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별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특색 있는 경관 형성
- 기존의 문제점 개선 및 경관 수준 향상으로 공간의 공공성 및 쾌적성 향상

3) 규정항목

-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구조, 설치·배치, 재질·색채, 기타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우수 및 불량사례 이미지, 설계 지침과 관련된 삽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규정	정의
형태·구조	오픈스페이스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설치·배치	오픈스페이스 내 시설물간의 배치 및 상호관계 규정
재질·색채	오픈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색채와 재료의 속성 규정
기타	기타 주요 항목에 관한 규정

구분	분류	세부 내용
녹지공간	공원	▪ 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광장	▪ 근린광장, 교통광장 등
수공간	하천 및 저수지 (친수형)	▪ 친수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하천 및 저수지
	하천 및 저수지 (자연형)	▪ 자연적으로 우수한 하천 및 저수지
도로 및 기타	차도	▪ 사람이 아닌 차량이 다니는 도로
	보도	▪ 사람이 다니는 도로
	자전거도로	▪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옥외주차장	▪ 노상, 노외에 위치한 공용주차장

1) 녹지공간 - 공원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사회적 공간(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주동선과 보조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동선 형태로 조성 ▪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 경관과 깊은 공간감 조성 ▪ 다양한 이용자들의 평등한 이용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단순한 식재위주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교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조성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성 ▪ 인접 공공공간 및 옥외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 ▪ 시각적인 차폐로 우범지역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성 ▪ 담장 및 펜스를 지양하여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 높임 ▪ 생태연못, 실개천 등 특색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수립 ▪ 야간조명 계획 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이용성 확보
재질·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과 포장의 재질 및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 ▪ 자연 친화경적인 재질(투수성 포장재, 자연재료 등) 적용 ▪ 안정감 있고 공원의 성격에 맞는 색채계획 수립 ▪ 목포시만의 정체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일부 도입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공간 및 주요 결절부의 경우, 인지성 향상을 위해 군식 ▪ 공원의 자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목과 교목의 다층림 조성 ▪ 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유지 및 관리방안 수립

2) 사례이미지



쾌적한 환경의 거점 공간

주민편의 및 복지공간 조성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

3) 설계지침



1) 녹지공간 - 광장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사회적 공간(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접근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다양한 활동 및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목포시의 상징성이 반영된 도시 속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 ▪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균형 있게 조성 ▪ 평탄성을 확보하며, 주변 보도 및 건축물의 지반층과 연계 ▪ 수직적 요소의 도입 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으로의 접근 동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조성 ▪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큰 포장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함 ▪ 구심성의 확보와 장소성 부각을 위해 정체성이 반영된 랜드마크 요소 도입 ▪ 이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은 보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위치에 설치 ▪ 과도한 상징조형물 및 관문 등의 설치 제한
재질·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재질 및 색채 적용 ▪ 과도하고 자극적인 재질 및 색채의 도입 지양 ▪ 지속가능성, 이용성, 자연 친화성 등을 고려한 재질 및 색채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 제공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주변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광장 조성 ▪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목포시만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광장 조성 ▪ 부득이한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2) 사례이미지



쾌적한 환경의 거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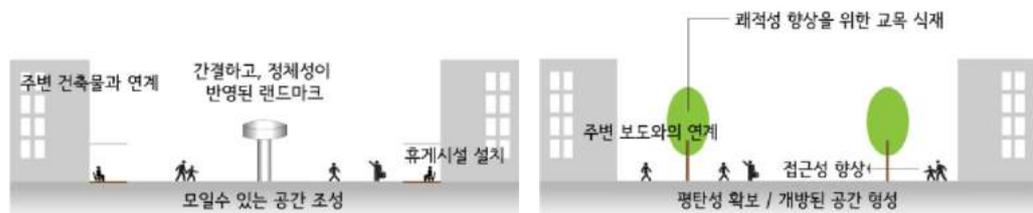


주민편의 및 복지공간 조성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

3) 설계지침



1 수공간 - 하천 및 저수지(친수형)

- 도심 속에서 친수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주변에 도시민의 여가, 체험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간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으로 우수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 친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주변 자연경관 자원을 저극 활용한 쾌적한 공간 조성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변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배치 수심이 깊은 구역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접근로 및 주요 동선은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우범화되지 않도록 함 주변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재질 및 색채 적용 집중호우나 유실피해에 잘 견디고,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질 적용 보행에 불편함이 없으며, 자연친화적인 재질 적용 조명은 서식하는 동식물을 고려하여 설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은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동식물 서식처 환경 보존 안전성이 높으며, 개방적인 수변 이미지 구현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 및 친수성 경관 수목 식재 홍수위를 고려한 계획 수립 요구

2) 사례이미지



3) 설계지침



주변경관과 조화되며,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

적극적 이용이 가능하며, 개방적인 공간 조성

■ 수공간 - 하천 및 저수지(자연형)

- 자연적으로 우수한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주변에 도시민의 휴식, 조망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간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으로 우수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 ▪ 자연 경관자원 보전을 위해 기존 지형과 동선을 최대한 살린 계획 수립 ▪ 동식물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 인공구조물이 노출되는 지역은 식생옹벽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을 최소한의 수량으로 적절한 곳에 설치 (휴게시설, 조망시설, 조명시설 등) ▪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지양 ▪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와 녹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 반드시 대체 습지 및 대체 녹지 조성 ▪ 소하천이 흐르는 경우, 낙차공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수질정화 효과 유도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인 재질을 적용하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유실피해에 잘 견디며 보수관리가 용이한 재질 적용 ▪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적용하여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 간결하며,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자연 식생을 최대한 유지 ▪ 추가적인 식재가 요구되는 경우, 기존 식생과 조화되도록 함 ▪ 홍수위를 고려한 계획 수립 요구 ▪ 지속가능한 자연형 하천 및 저수지를 위한 유지 및 관리 방안 수립

2) 사례이미지



3) 설계지침



인위적인 경관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 /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간결한 공간 조성

1 도로 및 기타 - 차도

- 사람 아닌 차량이 다니는 길(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및 중로 주변은 녹지 중의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성 ▪ 차량 통행 우선이 아닌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시 되는 환경 조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는 등 차량 속도 감속 유도 ▪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양호하도록 선형 및 경사 계획 ▪ 과도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 ▪ 주행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노면을 평탄하게 조성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관련 시설물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 및 수량 최소화 ▪ 가각부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 지양 ▪ 도로표지판은 명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 ▪ 안전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 산업겸용도로에서 이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형 구조물 등의 적절한 배치 계획 필요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으로 속도 저감을 위해 마찰력이 높은 재질 적용 ▪ 눈부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재질 적용 ▪ 주변과 조화되며, 과도하지 않은 간결한 색채 적용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면의 노후화로 인한 바닥 균열 등을 방지하는 것을 금함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노면표시, 차선 등의 시인성 향상 ▪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위해 방음벽 등은 지양하고, 완충녹지 등으로 대체 ▪ 교류 및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교차로 광장 등 조성

2) 사례이미지



3) 설계지침



도로 및 기타 - 보도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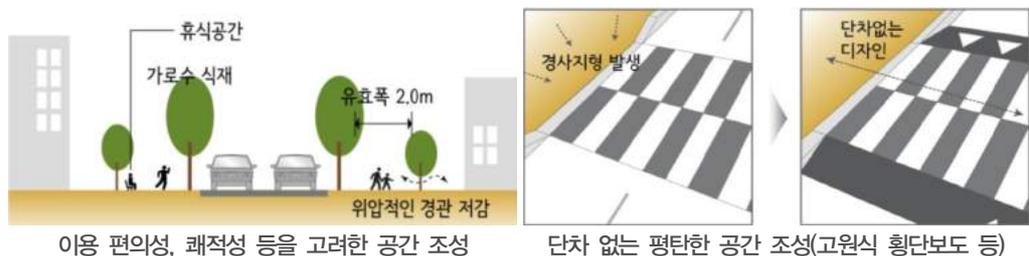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및 중로 주변은 녹지 중의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성 차량 통행 우선이 아닌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시 되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는 등 차량 속도 감속 유도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양호하도록 선형 및 경사 계획 과도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 주행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노면을 평탄하게 조성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관련 시설물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 및 수량 최소화 가각부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 지양 도로표지판은 명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 안전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산업겸용도로에서 이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형 구조물 등의 적절한 배치 계획 필요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으로 속도 저감을 위해 마찰력이 높은 재질 적용 눈부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재질 적용 주변과 조화되며, 과도하지 않은 간결한 색채 적용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면의 노후화로 인한 바닥 균열 등을 방지하는 것을 금함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노면표시, 차선 등의 시인성 향상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위해 방음벽 등은 지양하고, 완충녹지 등으로 대체 교류 및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교차로 광장 등 조성

2) 사례이미지



3) 설계지침



도로 및 기타 -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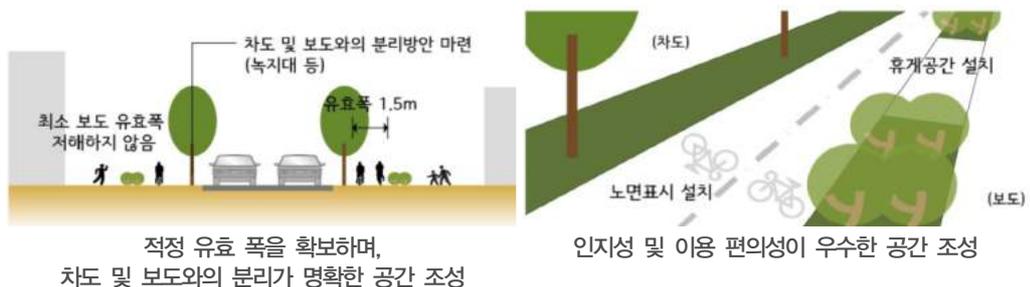
1)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는 구간을 최소화하며, 연속적인 주행 확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최소 1.5m이상 확보 최소 보도 유효 폭(2.0m)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교차 각은 90도 이상으로 설치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 및 양측 면에는 안전성 및 주행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보호 펜스 등의 안전시설 설치 녹지대 등을 활용한 차도 및 보행로와의 분리시설 설치 주요 거점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일정거리마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 및 교류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 설치
재질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 등과 교차되는 구간은 경각심을 주도록 이질적인 재질 및 색채 적용 투수성 탄성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 확보 주변 차도 및 보도 등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설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전용 횡단 표시를 적용 야간 인지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기타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 따름

2) 사례이미지



3) 설계지침



5.5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 개요

1) 공공시설물이란?

-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구조물

2) 목적

-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는 디자인을 구현
-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현
-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

3) 규정항목

-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 재질 및 색채, 설치·배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적용
- 우수 이미지, 설계지침과 관련된 삽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 정	정 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형태의 디자인 방향과 최소 정량적 기준을 규정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형태 시설물간 통합성과 통일성 추구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재질 및 색채의 정성적 기준을 제시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재질 및 색채 적용 지역적 특성의 반영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설치의 정성적 기준과 최소 정량적 기준을 제시 시설물간 배치 기준을 제시 시공 완성도 향상에 기여

4) 적용범위

구 분	분 류	세 부 내 용
편의시설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	휴지통, 음수대
	서비스시설	자전거보관대
교통시설	통행시설	버스정류장 쉼터, 택시 정류장 쉼터, 보도블록
	보호시설	펜스, 볼라드, 방음벽, 옹벽
공급시설	정보시설	종합안내사인, 방향 유도사인
	조명시설	가로등, 보행등

5)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포시 현황 및 적용사항의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01	안전성 · 편의성을 우선시한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및 장애 없는 (Barrier-free) 디자인의 적극적인 적용을 유도
02	불필요한 장식 및 중복을 최소화한 디자인	▪ 슬로건 · 캐릭터 · 관광 · 대표이미지 등을 이용한 과도한 장식 및 그래픽요소 사용과 중복 · 혼용을 억제
03	시설물간 통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디자인	▪ 통합된 정체성 계획에 의한 일관된 경관 연출을 추구
04	목포만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 전체적인 이미지와 차별성을 고려하여 계획
05	단순성과 결합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디자인	▪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결합하여 실용성을 높임
06	공간별 성격을 파악하여 실용적인 디자인	▪ 대형 구조물 이동경로에는 이동식 시설물 배치를 통한 실용성을 높임

6) 적용예시



- 천연재료(목재, 석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되,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재선정 및 후처리를 고려
- 수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염분에 의한 내식성을 고려한 소재 적용
- 고광택의 금속 재료(스테인리스 등)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장애 없는 디자인(Barrier-free)을 적용
- 경관을 저해하고 시각 혼란을 주는 고명도 · 고채도의 색상 사용은 지양

시설물 종류

1) 휴게시설-벤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의 높이와 폭, 깊이 선정 시 <한국인의 인체치수 조사>를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의 높이 : 400±50mm, 폭 : 380~450mm, 깊이 : 450~600mm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앉는 부분에는 목재 등의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 자연 소재 활용을 적극 권장 금속소재를 사용할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 등받이와 앉음판, 기타 구조부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보안등 등의 조명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화단, 가로화분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연계·통합을 권장 단, 휴지통 등의 위생시설물과의 통합은 지양
권장 이미지	

2) 휴게시설-파고라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구조와 간결한 형태로 개방적인 디자인을 구현 설치 장소에 따라 확장 및 조합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파고라의 내부에 휠체어 및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파고라와 함께 설치되는 벤치는 통일감 있는 형태 및 색채로 디자인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의 색상 활용을 권장 구조물의 식생 녹화 도입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늘막 내부의 휴지통 설치의 지양 가로등, 보안등 등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을 활용할 것을 권장
권장 이미지	

3) 위생시설-휴지통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은 이용과 수거, 청소가 적합한 구조 및 규격으로 설계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설계 ▪ 재활용 분리수거 휴지통을 권장하며, 포인트 색상 및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 문구 등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심벌마크 및 로고 등은 최소화 ▪ 친환경 소재의 활용을 권장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고명도 색의 사용을 제한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 시설물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 쓰레기 발생 예상 지역을 검토 후 설치
권장 이미지	

4) 위생시설-음수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수대의 크기 및 구조 결정 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를 참고하고 성인과 아동, 휠체어사용자 등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고려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유지보수 및 청소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 ▪ 도색이 불가피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중명도·중채도 이하의 색상을 사용 ▪ 도색 및 시트를 활용한 색채 계획을 금지 ▪ 주변 바닥부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 ▪ 물의 낭비를 막도록 자동 잠금장치 설치를 권장
권장 이미지	

5) 위생시설-자전거보관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만의 정체성이 부여된 디자인을 고려 ▪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다른 시설물이나 구조물, 공간과의 결합을 권장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림시설(캐노피)은 시야확보가 용이한 재질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높임 ▪ 자전거나 이용객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등의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부분적으로 사용 ▪ 지자체 심벌마크 및 로고, 홍보·광고물의 부착은 지양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공간이나 육교, 교량 등의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보안을 위해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이 인접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자전거 이용량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설치대수를 조정 ▪ 경우에 따라 캐노피 없이 자전거 고정 구조물만 단독으로 설치가 가능
권장 이미지	

6) 위생시설-공중전화부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 ▪ 개방된 디자인을 권장 ▪ 유지 보수 및 교체,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 및 가로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명도·중채도의 색상을 활용 ▪ 파손행위를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소재를 활용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극 고려 ▪ 야간 이용자 및 보안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를 권장 ▪ 우체통,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 ▪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외의 모든 정보게시물의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제한
권장 이미지	

7) 보호시설-보행자 펜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스쿨존의 펜스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되, 과도한 원색계열 색채 사용 및 장식요소 사용은 지양 ▪ 펜스의 높이는 가급적 120cm를 넘지 않도록 함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 고탄성 소재를 활용 ▪ 재료 자체 색상의 활용을 권장하고, 도색할 경우 중명도 · 저채도 이하의 색상을 활용하며 여러 색의 혼용은 지양 ▪ 고풍택 재질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필요 수량을 설치 ▪ 기초공사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권장 이미지	

8) 보호시설-블라드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원기둥 형태를 권장하며, 안전을 위해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높이의 블라드는 지양 ▪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함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채도 원색계열 색채 사용은 지양. 단, 안전을 위한 부분적 주의색 사용은 허용 ▪ 재료 자체 색상의 활용을 권장하며, 도색할 경우 중명도 · 저채도 이하의 색상을 활용하며 여러 색의 혼용은 지양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접촉 시 블라드의 파손율을 줄일 수 있는 탄성구조의 사용을 권장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블라드의 상부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반사지를 부착
권장 이미지	

9) 보호시설-방음벽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높이차가 발생할 경우 시각적 균형감을 주도록 방음벽 높이의 완만한 조절을 권장 ▪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는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주변 구조물에 조화 되도록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권장 ▪ 낮은 담장형 방음벽을 권장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야 확보 및 일조, 채광이 용이한 투명 소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여러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은 지양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사용은 지양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도로나 공간으로 인식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방음벽 설치를 권장 ▪ 경관조명 또는 식물과의 연계 및 가능한 경우 방음림의 설치를 고려
권장 이미지	

9) 보호시설-옹벽(보호시설)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제한 ▪ 단, 예술 공간화 등의 목적으로 특수한 옹벽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 불필요한 장식 및 과장된 패턴적용을 지양 ▪ 벽면 녹화 등 자연재료를 활용한 마감처리를 권장
권장 이미지	

10) 정보시설-종합 안내사인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구조로 단순화하여 디자인 ▪ 그래픽을 통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포부스 아이콘 적용하여 인지성 증대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열 방습판을 내장하여 단열에 대비 ▪ 내구성, 내화성 마감재를 사용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트랜치는 보도의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권장 이미지	

11) 보호시설-방향 유도사인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명도·저채도의 색채사용을 권장 ▪ 친환경 소재 및 색채를 적극 활용 ▪ 내구성, 내화성 마감재를 사용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명도·저채도의 색채사용을 권장 ▪ 친환경 소재 및 색채를 적극 활용 ▪ 내구성, 내화성 마감재를 사용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의 편의를 돕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 ▪ 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보도의 구성] 기준을 참조하여 위치를 선정 ▪ 무인 관광 키오스크의 설치를 권장
권장 이미지	

12) 조명시설-일반가로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의 연속적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식을 피함 ▪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통일성을 유지 ▪ 지지체 슬로건 및 로고 등의 남용을 지양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광택 재질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 도색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중명도·중채도 이하의 색상을 권장 ▪ 친환경 재료 및 색채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와 바닥면의 마감처리가 깔끔하도록 설치 ▪ 가급적 지지대와 앵커볼트, 기초부 등이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조명 배치 시 적절한 휘도와 분포가 균일하도록 함 ▪ 보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 ▪ 전신주는 전선지중화를 유도
권장 이미지	

13) 조명시설-지능형가로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의 연속적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식을 피함 ▪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통일성을 유지 ▪ 지지체 슬로건 및 로고 등의 남용을 지양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광택 재질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 도색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중명도·중채도 이하의 색상을 권장 ▪ 친환경 재료 및 색채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용 CCTV가 부착되어 있는 지능형가로등의 경우 어두운 골목길, 인적이 드문 장소 등 치안 사각지대에 설치하여 방범 효과를 기대 ▪ 전자배너가 부착되어 있는 지능형가로등의 경우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 설치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 전신주는 전선지중화를 유도
권장 이미지	

14) 조명시설-보행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는 6m이하로 설치 ▪ 안정기를 내장하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재질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 도색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중명도·중채도 이하의 색상을 권장 ▪ 친환경 재료 및 색채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간격은 설치 높이의 5배 이하의 거리 권장 ▪ 외부의 밝기 또는 일출 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장치 또는 자동 점멸장치 부착 ▪ 일반가로 50m, 집객율이 높은 곳은 30m 간격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광간섭 배제
권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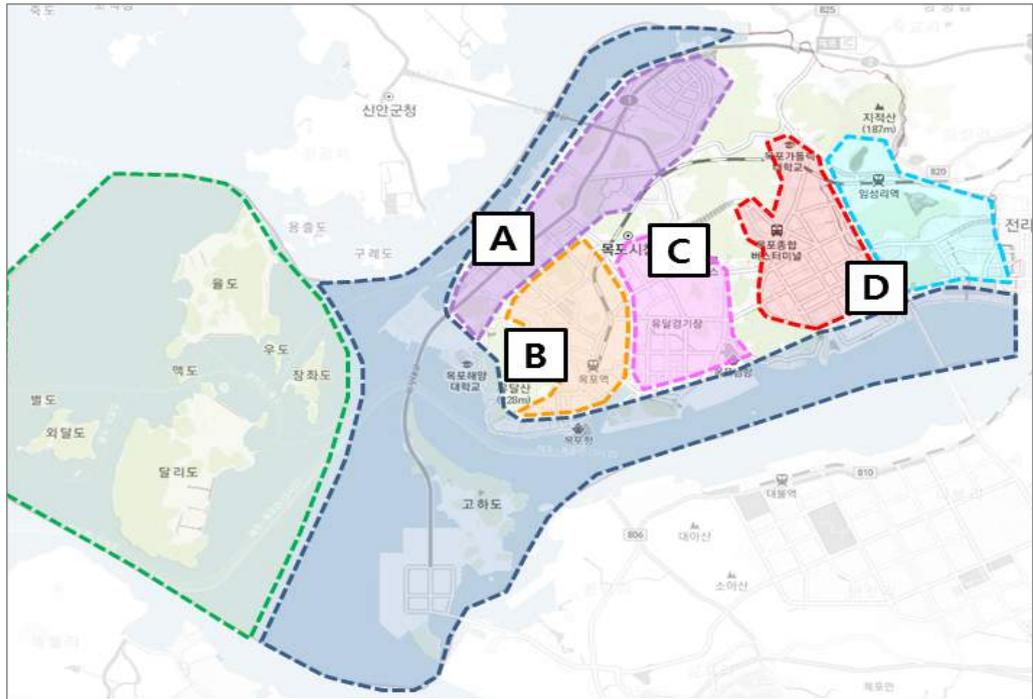
15) 교통시설물-도로전광표지(ITS 사업시행지침 참고 [도로전광표지(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전광표지의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표지판의 설치높이가 차도에서 표지아래의 이격이 5m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높이는 6m이상 확보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재질의 과도한 노출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처리를 권장 ▪ 주위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중명도·중채도 이하의 색상을 권장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전광표지는 표지판과 기능상 상충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신호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전광표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 도로전광표지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정보 처리부하를 고려하여 도로전광표지 정보와 표지판의 정보를 판독·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설치 ▪ 도로전광표지와 기존 표지판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게이트형태의 설치 구조물 등에 통합 설치도 가능 ▪ 도로전광표지는 주변 경치에 있어 중요한 전망을 막지 않도록 설치
권장 이미지	

5.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 옥외광고물 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옥외광고물 경관의 현황



■ A지역 : 북부산업지 경관권역일대(북향동, 원산동, 용해동, 연산동, 죽교동)

- 목포시 북부산업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북향동은 항구마을로 화센터 및 수산물 판매장이 밀집된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건축물에 옥외광고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음
- 목포시 옥외광고물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 간판의 크기 및 형태는 같은 규격으로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직선정렬로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 등은 역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대부분 부착되어 있음
- 그러나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 중 1개소에만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곳곳에 대형 돌출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중경에 의한 경관은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이루고 있음
- 대체로 규격 및 형태의 통일성은 이루고 있으나, 과도한 양의 광고물이 건물 입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또한, 간판에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통일성 및 조화성을 감소시키며, 보행전용가로에 수조판 및 파라솔 등이 배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문제점임



- 북부산업지경관권에 죽교동 및 원산동 일대의 주거지역은 목포시 내 타 지역에 비해 옥외시설물 정비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간판이 대체로 노후하고 규격, 형태, 색채의 통일성 및 조화성, 정체성 또한 부족하게 형성되어 있음
- 간판 없이 건축물에 글자만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많았으며, 옥외시설물 관련 시행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
- 또한, 목포시의 타 지역에 비해 가로등 및 보행시설물 등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어 있었으며, 디자인 역시 평범하여 타 지역에 비해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임

■ B지역 : 서부원도심 경관권역일대(대성동, 목원동, 만호동, 연동, 유달동)

- 서부원도심 일대는 목원동을 중심으로 목포역이 위치하는 역세권으로서, 빛의 거리를 중심으로 상업 및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권이 밀집한 지역임
- 목포역 주변은 돌출형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색의 과다 사용으로 혼잡을 주고 있었음
- 빛의 거리의 상징인 아치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그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야간의 조명은 문화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음



- 또한, 가로 진입부에 ‘젊음의 거리’ 의 진입을 알려주는 사인물은 거리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음
- 거리의 간판 등은 대체로 일관성 있게 정비되어 있었으며, 가로 내 안내판 및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의 디자인 및 재질, 색채 등이 통일성 및 조화성 있게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젊음의 거리’ 옆 먹거리가 모여 있는 ‘(구)맛의 거리’ 는 매우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차량에 의한 주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음
- 간판은 돌출형, 세로형, 가로형, 지주형 등 너무 많은 종류의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혼란함을 더욱 야기 시키고 있었음
- 특히, 이동이 가능한 풍선형 지주이용 간판 등이 대부분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되며, 안전하지 못한 보행환경을 이루고 있었음



■ C지역 : 남부원도심 일대(이로동, 용당1동, 용당2동, 삼학동, 동명동)

- 남부원도심 일대는 전자제품과 먹을거리, 대형마트 등이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소규모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대형마트 주변 및 제2호, 3호 광장 주변의 가로시설물 등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의 간판은 규격 및 형태, 색채 등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 관리 및 일부 정비가 필요함
- 또한, 건축물 간의 규모 및 높이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간판의 통일성을 갖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옥상간판의 경우 건물의 크기가 고려될 필요가 있었음



■ D지역 : 하당신도심 일대(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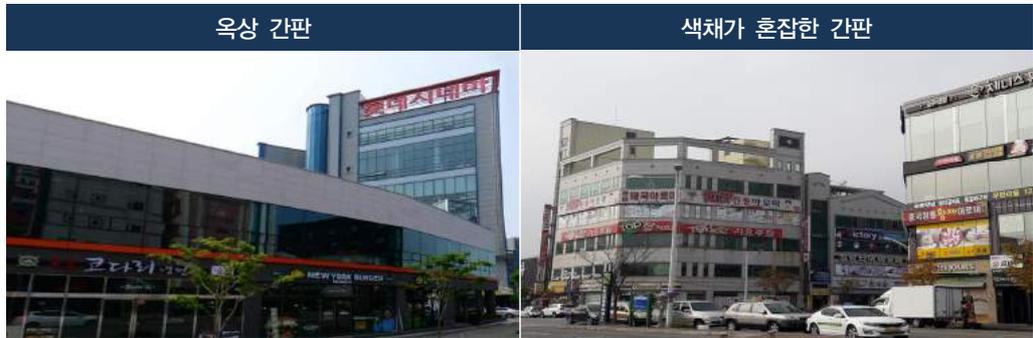
- 하당신도심 일대는 목포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권역으로 관광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역임
- 평화의 광장은 불꽃축제와 해양음악분수대가 알려지면서 많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어, 광장 내 조형물의 정비 및 설치가 쾌적하고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음
- 광장 내 가로등 및 휴게시설은 통일성은 가지고 있되 디자인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흥미를 유발함



- 숙박시설의 간판에는 원색을 사용하는 무분별한 야간조명에 의해 고급스럽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함



- 주변 상가의 간판의 디자인 및 규모, 형태 등은 대체적으로 통일성이 양호하나, 색채는 통일성이 없고 무질서함
- 대형 유명업체의 간판은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어 이질감을 주고 있음



2) 광고물 경관의 문제점

- 가로경관과의 조화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무분별한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이 혼란을 주고 있음
- 식생 및 네온사인, 자극적인 색상 도입 등으로 건물과 간판이 부조화를 이룸
- 중점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강조한 랜드마크적 요소 부족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가로경관과의 조화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무분별한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이 혼란을 주고 있음
- 식생 및 네온사인, 자극적인 색상 도입 등으로 건물과 간판과 부조화를 이룸

과밀도에 의한 혼란성

- 서로 양보하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벽면의 전체면적과 광고간판의 면적비율에 대한 배려 부족

패적성 부족

- 지나친 원색 사용으로 건축물의 재료, 형태 등의 시각적 유인력이 부족함

랜드마크적 요소 부족

- 중점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의 결여

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별 기본방향 및 원칙

1)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_ 활기찬 사업가로

지역 및 건물 특성

- 항구마을로 회센터 및 수산물 판매장이 밀집된 사업 지역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건물특징 : 1층부터 6층까지 다양한 건물 분포
- 주요업종 : 상점, 시장 등 사업·업무 시설 입지

현황 및 문제점

- 대체로 규격 및 형태의 통일성은 이루고 있으나, 과도한 양의 광고물이 건물 입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또한, 간판에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통일성 및 조화성을 감소시키며, 보행전용가로에 수조관 및 파라솔 등이 배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문제점임



활어회센터 밀집지역

추진전략

활력있는 이미지, 다양한 재료, 화려한 색채 등으로 연출

간결한 디자인	다양성부여	차분한 색채	건축입면에 반영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한 이미지의 디자인	▪ 재료서체의 다양성 확보 ▪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태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 건축입면디자인에 광고물 위치를 반영



기본방향

- 과도한 디자인으로 인한 화려함 보다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차분한 이미지 연출
-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와 재질, 조명 사용을 권장
- 건축물 본연의 조형성을 훼손하고, 옥외광고물 면적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설치를 지양
- 건축 입면 디자인에 광고물 위치를 반영하여 외벽과 조화로운 일체화된 디자인을 권장

2) 서부원도심 경관권역일대 _ 젊음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

지역 및 건물 특성

- 목원동을 중심으로 목포역이 위치하는 역세권 지역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건물특징 : 1층부터 6층까지 다양한 건물 분포
- 주요업종 :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 업종

현황 및 문제점

- 목포역 주변은 돌출형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색의 과다 사용으로 혼잡을 주고 있었음
- 또한, 가로 진입부에 '젊음의 거리' 의 진입을 알려주는 사인물은 거리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음
- 거리의 간판 등은 대체로 일관성 있게 정비되어 있었으며, 가로 내 안내판 및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의 디자인 및 재질, 색채 등이 통일성 및 조화성 있게 설치되어 있음



활어화센터 밀집지역

목포역

빛의 거리

추진전략

다양한 재료, 개성있고 예술적 이미지, 색상대비 등으로 연출

재질의 다양성 부여	디자인 돌출간판	독특한 거리 조성	건축입면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 나무 등 재질의 다양화로 상점별 특징이 나타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돌출간판 도입으로 개성있는 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하고 변화감 있는 거리 연출 ▪ 조화로운 색채 도입으로 활기찬 거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입면 디자인에 광고물 위치를 반영하여 설치위치, 수량, 크기에 대한 제한



기본방향

-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미있고 차분한 색채와 재질을 사용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분위기 연출
- 보는 재미와 함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와 연계된 디자인 유도
- 광고물 배경색에 고채도 대비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3) 남부원도심 일대 _ 활기찬 상업가로

지역 및 건물 특성

- 목원동을 자제품과 먹을거리, 대형마트 등이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소규모 도시의 경관을 형성 지역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건물특징 : 1층~2층 단독주택과 2~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 저층위주의 건물
- 주요업종 :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 업종

현황 및 문제점

- 대형마트 주변 및 제2호, 3호 광장 주변의 가로시설물 등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의 간판은 규격 및 형태, 색채 등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 관리 및 일부 정비가 필요함
- 또한, 건축물 간의 규모 및 높이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간판의 통일성을 갖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옥상간판의 경우 건물의 크기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활어회센터 밀집지역

목포역

빛의 거리

추진전략

활력있는 이미지, 다양한 재료, 화려한 색채 등으로 연출

간결한 디자인	다양성부여	차분한 색채	건축입면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한 이미지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서체의 다양성 확보 ▪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입면디자인에 광고물 위치를 반영



기본방향

-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미있고 차분한 색채와 재질을 사용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분위기 연출
- 보는 재미와 함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와 연계된 디자인 유도
- 광고물 배경색에 고채도 대비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4) 하당신도심 일대 _ 생활이 풍경이 되는 가로환경

지역 및 건물 특성

- 하당신도심 일대는 목포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권역으로 관광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건물특징 : 1층~2층 단독주택과 2~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 저층위주의 건물
- 주요업종 : 상점, 음식점 등 지역 생활 상권

현황 및 문제점

- 대형마트 주변 및 제2호, 3호 광장 주변의 가로시설물 등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의 간판은 규격 및 형태, 색채 등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 관리 및 일부 정비가 필요함
- 또한, 건축물 간의 규모 및 높이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간판의 통일성을 갖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옥상간판의 경우 건물의 크기가 고려될 필요가 있었음



옥상 간판

색채가 혼합한 간판

다양한 디자인의 가로등

추진전략

차분한 이미지, 다양한 재료, 조화로운 색채 등으로 연출

간결한 디자인	다양성부여	차분한 색채	건축입면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한 이미지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서체의 다양성 확보 ▪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입면디자인에 광고물 위치를 반영



기본방향

-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미있고 차분한 색채와 재질을 사용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분위기 연출
- 보는 재미와 함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와 연계된 디자인 유도
- 광고물 배경색에 고채도 대비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가이드라인

1) 옥외광고물이란?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목적

-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 적용으로 아름다운 거리 환경 구축
-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추구
- 지나친 규모·색채 및 돌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각적 불량 경관 개선

3) 규정항목

-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구조, 설치·배치, 재질·색채,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우수 및 불량사례 이미지, 설계 지침과 관련된 삽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규정	정의
설치·배치	▪ 옥외광고물의 배치 및 상호관계 규정
형태·크기	▪ 옥외광고물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구성
색채·재료	▪ 옥외광고물을 구성하는 색채와 재료의 속성 규정
표기요소	▪ 옥외광고물에 이루는 서체, 표기정보 등의 규정

4) 적용범위

구분	분류	세부 내용
부착형 간판	건물명	건물명 또는 상호명을 가로 또는 세로로 건물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가로형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연립형	건물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이용간판		현수막 등을 지주계시시설 또는 벽면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건축물 창문에 프린트물 등을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부착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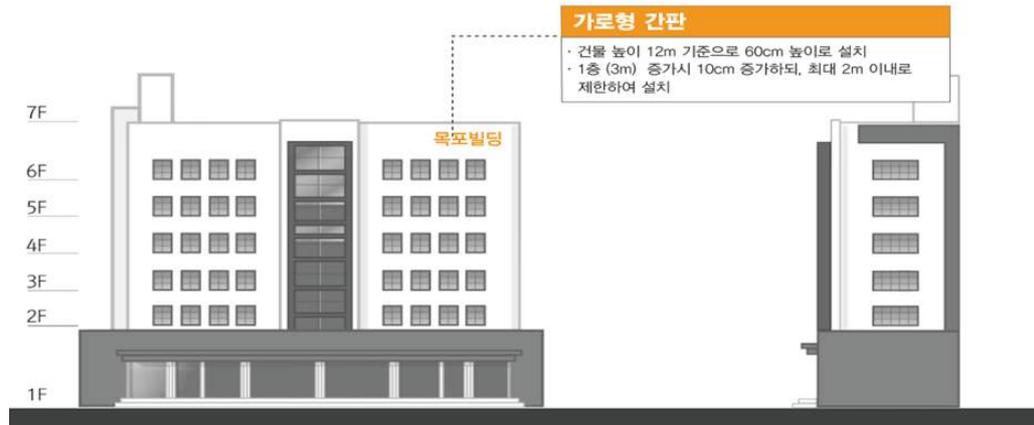
1) 부착형 간판 - 건물명 간판

- 건물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을 의미함

2)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명 간판은 시인성 · 가독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전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 ▪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가로쓰기 형태의 입체형으로 표시 ▪ 건물주가 건물명으로 표시하거나 건물의 1/2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 ▪ 벽면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설치
형태 ·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은 건물 높이 4층(약12m)을 기준으로 60cm높이로 설치하고, 건물높이가 1층(약3m) 증가 시 10cm증가하되, 최대 2cm이내로 제한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건물 최상단 가로폭의 1/2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색채 ·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간판 구조물에서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을 금지 ▪ 고채도의 원색을 강조할 부분에만 포인트 색으로 적용
표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문자의 가로 도는 세로의 크기는 4층의 경우에는 80cm이내, 5층의 경우에는 85cm이내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3) 설치기준



부착형 간판 - 가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등)로 표시하는 간판을 의미함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에만 입체형으로 건물의 정면에 표시(측면과 후면은 설치 금지, 상업지역은 5층 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층에 한하여 판류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 건물 3층 이하 설치 및 설치 수량은 1개 업소 당 1개소 설치를 권장 판류형 간판은 일정한 규격으로 같은 층 간판의 위·아래 높이를 일치할 것을 권장 특별 창문과 창문사이의 벽면, 계단실, 주 출입구의 캐노피 등과 같은 공동사용부분에 개별업소의 간판을 표시를 지양
형태 ·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입체형 또는 판류형 중 선택하여 설치 권장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된 건물에는 판류형 설치를 지양 판류형 가로길이는 업소 전면폭의 80%(최대 10m)이내, 입체형 가로길이는 업소 전면폭의 80%(최대 8m)이내, 세로길이는 위·아래층 창문간 벽면폭(최대 1m)이내, 돌출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창문상단 벽면을 기준으로 표시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명, 사용자 성명, 상호(상징도형)에 한하여 표기 가능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가능하며 가로크기는 건물상단 전면폭의 1/2이내로 함 가로크기 8m이상의 간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추진
색채 ·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표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의 모든 정보의 표기는 가로쓰기를 권장 보조 표기내용의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품목 1종만 표기할 수 있고, 메뉴, 가격 실물 사진 등의 표기를 지양할 것을 권장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할 것을 권장 글자크기는 1층은 60cm이내, 2층은 65cm이내, 3층은 70cm이내의 입체형으로 설치

2)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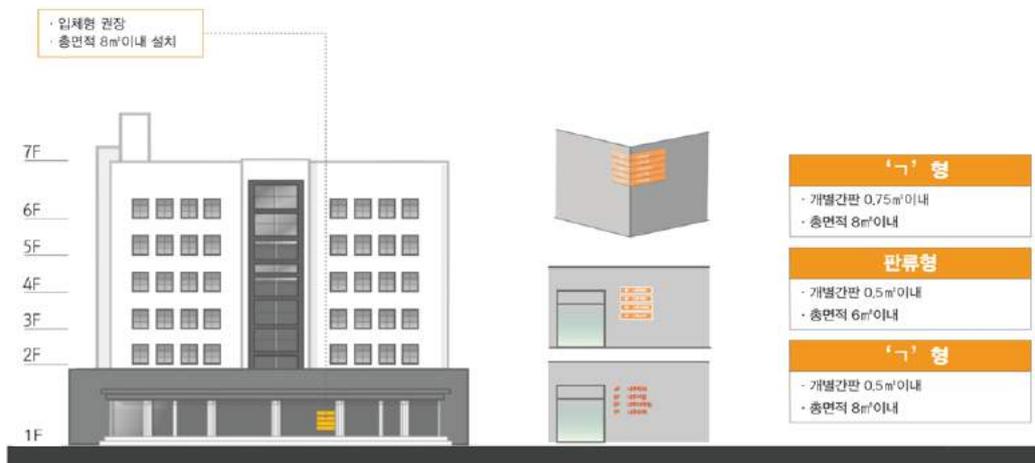


부착형 간판 - 연립형 간판

- 한 건물의 입점업체가 많아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하는 간판을 의미함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할 것을 권장 공유공간이 벽면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위치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입체형 또는 판류형 중 선택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설치수량은 1개 업소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 곡각지점의 경우에는 2면 연결하여 'ㄱ' 자 형태로 표시 간판의 배열은 설치되는 건물입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 또는 세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형태 ·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업소의 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3개 이하 업소(1면 면적 3㎡), 4개 이상의 업소(1면 6㎡, 합계 20㎡이내)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로 권장 개별간판이 사용되는 면적은 최대 0.5㎡이내로 하며 전체 총면적은 8㎡이내로 하되 단, 'ㄱ' 자 두 개 면을 합한 개별간판의 면적은 0.75㎡이내로, 전체 총면적 8㎡이내로 설계할 것을 권장
색채 ·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할 것을 권장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 표시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 업체 표기부분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표기
표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 사용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 각 업소표시 부분의 문자는 충분한 여백을 두어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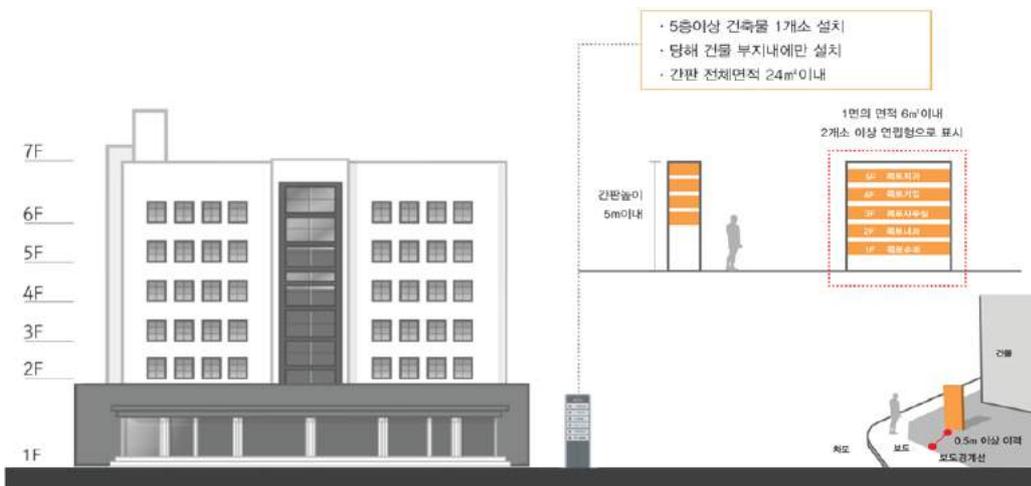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사각기둥 등의 게시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을 의미함

1)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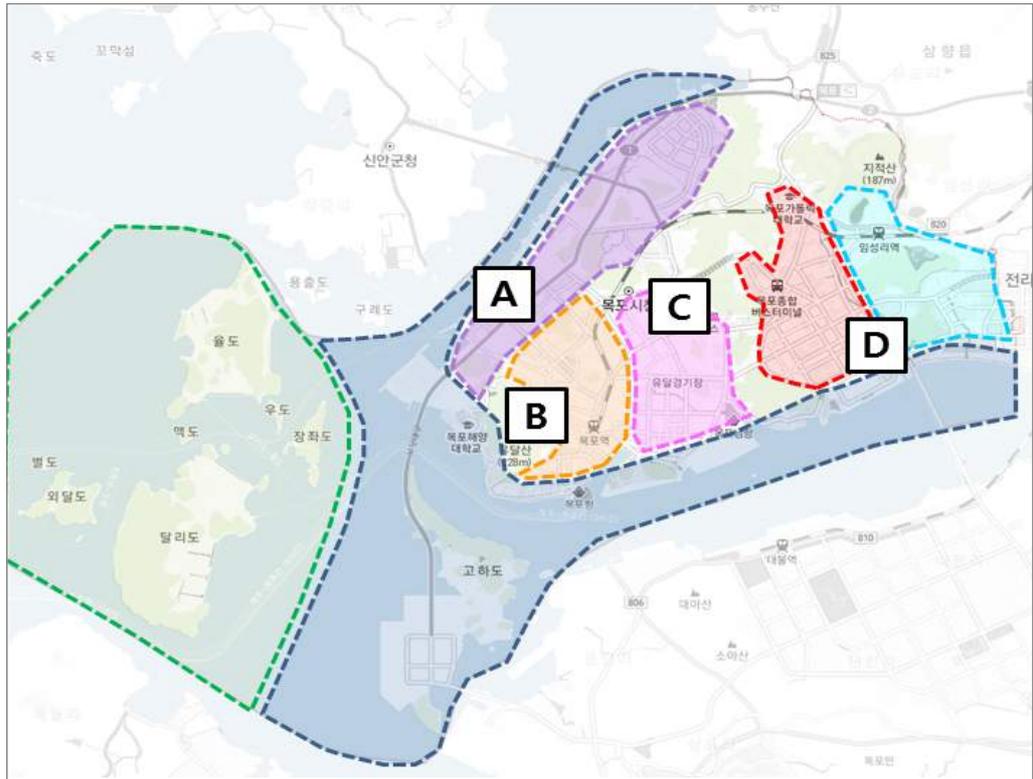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상의 건물 부지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것을 권장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거리를 유지(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 설치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만 표기
형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이상의 업체를 연립형으로 표시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이내(가림 간판은 따로 정함), 두께는 0.5m이내, 총면적 20㎡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형태는 양면형으로 하여 업소 당 표시면적은 점포 수 대비 균등하게 배분하여 설치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설계
색채·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할 것을 권장 표시부분의 배경색은 한가지로 통일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 업체 표기부분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표기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 시각적 부담감 완화 및 시야확보를 위해 투명한 재질사용을 권장 금속재질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사용을 지양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표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의 크기는 광고물의 크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기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 전기조명을 이용하는 표시방법은 금지



5.7 색채 가이드라인

■ 색채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색채경관의 현황



■ A + B 지역 : 북부산업지 및 서부원도심 경관권역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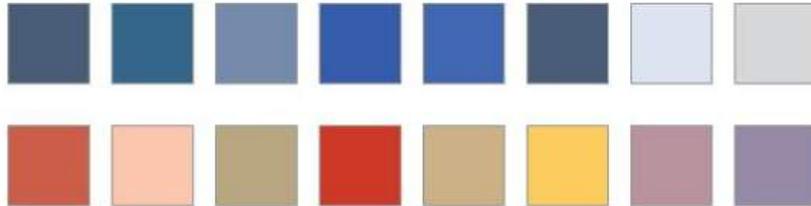
- 북부산업지 및 서부원도심 경관권역일대는 상업지역 밀집지역임
- 북부산업지 (A지역 : 죽교동, 북향동,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삼향동)
 - 북부산업지 지역 내 주요 상업지역인 북향동은 향만이 위치한 지역으로 활어회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대체적으로 체계 없는 간판들의 색채에 의한 부조화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건축물과 조화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색채경관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부분은 간판으로 대체적으로 간판의 글씨는 하얀색이 쓰였으며, 바탕색은 글씨를 부각하기 위해 PB(청자)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음
 - 또한, 부분적으로 글씨를 강조하기 위해 글씨와 상가 앞 오색의 파라솔 및 천막 등에 R(적)계열의 색상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7R-8R의 색상이 사용되었음

- 항만의 바다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청색계열의 사용은 양호하나 이 지역에는 6PB-7PB로 채도가 높은 계열의 무분별한 많은 사용은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적색의 계열은 혼란함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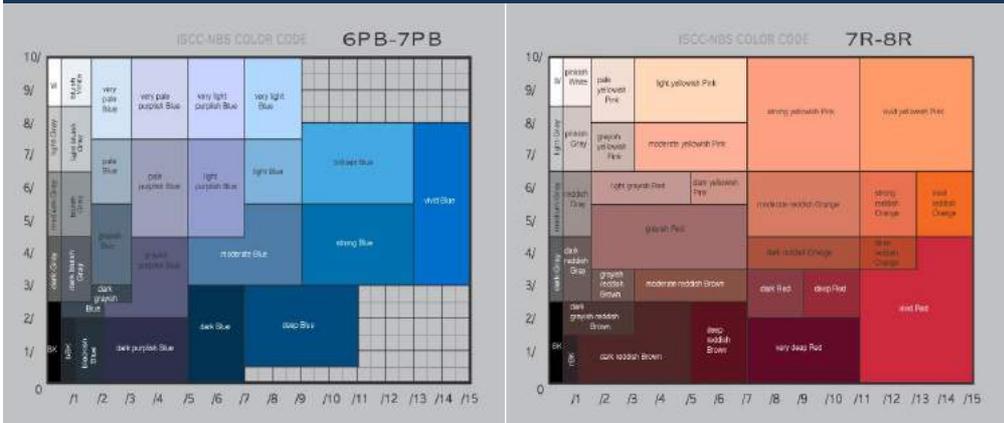
북항동 활어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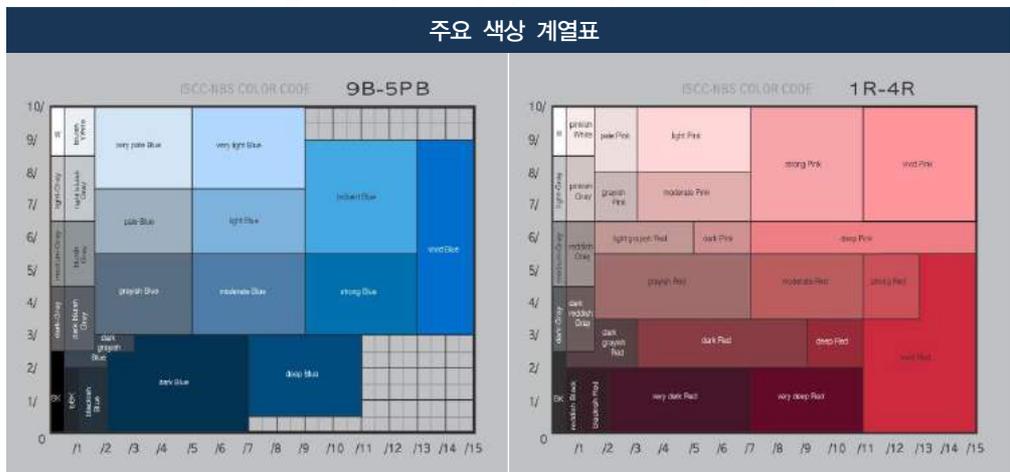
북항동에 사용된 색상팔레트



주요 색상 계열표



- 서부원도심 일대 (B지역 : 유달동, 목원동, 죽교동, 대성동, 산정동, 용당동, 연동, 동명동)
 - 목포역 및 젊음층의 문화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서부원도심 일대는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건축물과 간판이 정비되어 어느 정도의 조화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색채경관 또한 다소 양호한 실정임
 - 빛의 거리 중 '젊음의 거리' 는 아치형 조형물과 건축물의 색상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였음
 - 또한, 바닥포장은 파스텔 톤의 색상을 조화롭게 도입하여 공간감과 가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
 - 건축물과 간판의 바탕색은 주로 9B-5PB내의 청색계열의 명도가 낮은 회색계열로 글씨 이외에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포장은 1R-4R의 명도가 적은 색상으로 조화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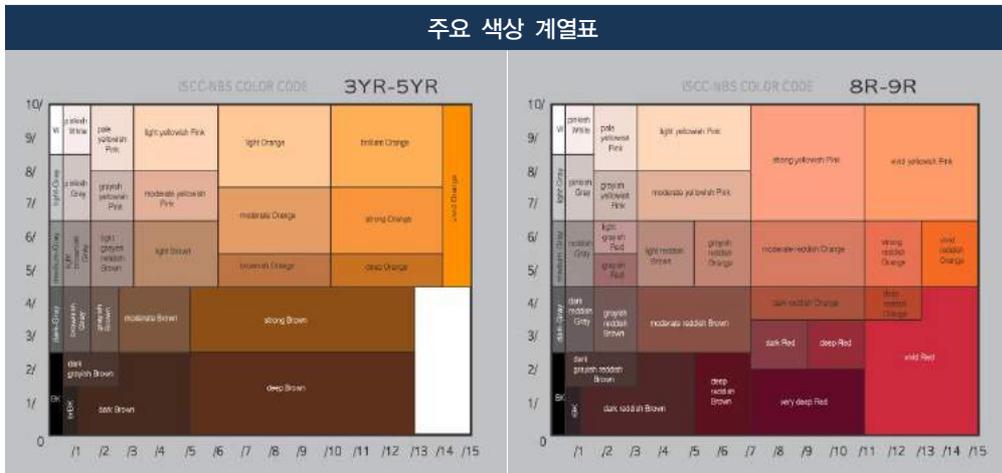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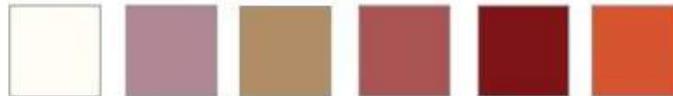


■ C+D 지역 : 남부원도심 및 하당신도심 일대

- 남부원도심과 하당신도심 일대는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임
- 남부원도심 일대 (C지역 : 용해동, 용당동, 이로동, 삼학동, 동명동)
 - 전자제품과 먹거리, 대형마트 등이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권역으로 단독 주거단지 내는 대체로 색채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이루고 있으나, 주도로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역의 낙후된 건축물 및 간판은 무분별한 색채가 혼합되어 있음
 - 주거단지인 동명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건축물의 Base Color를 갈색계열로, 작은 면적은 희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거단지 내 상업건축물은 Y(황색)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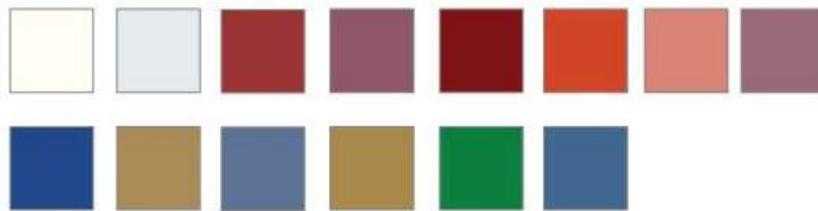
주거단지 일대에 사용된 색상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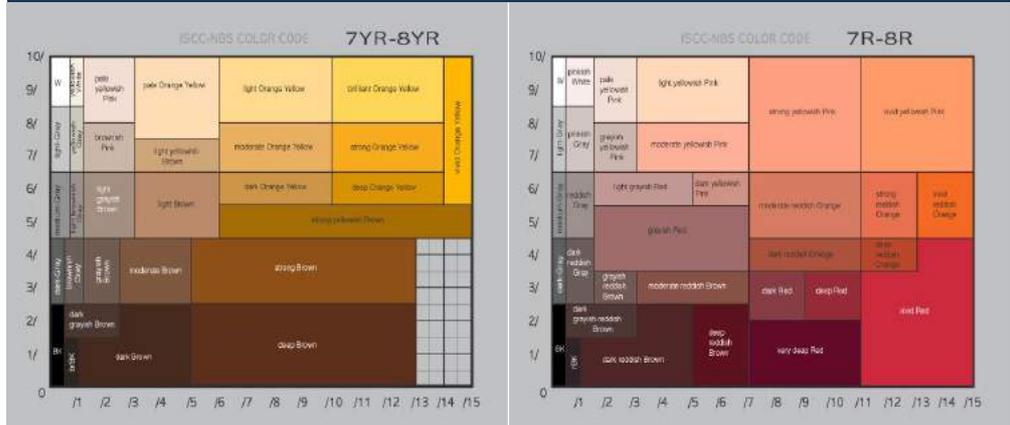
- 주 도로와 접해있는 상업지역 내 대형마트 일대의 정비된 가로의 건축물은 회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했으며, 가로시설물 및 보도블록의 색채는 대체로 통일성 있게 양호한 경관을 형성함
- 그러나 정비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 등은 대체로 무분별한 색채가 혼용되어 있었으며, 주요색은 7YR-8YR의 황적계열과 7R-8R의 적색계열 등이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있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도로변 상업지역에 사용된 색상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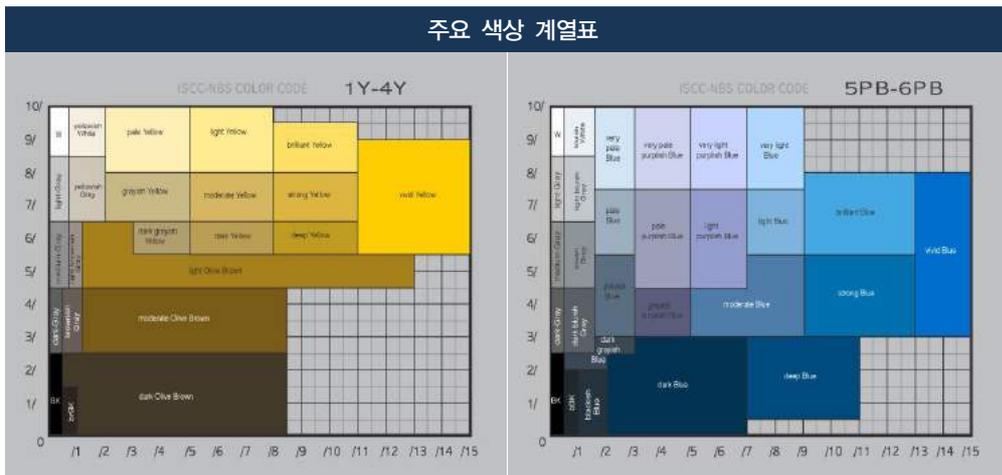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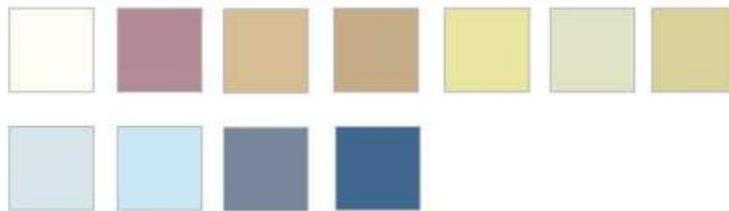
주요 색상 계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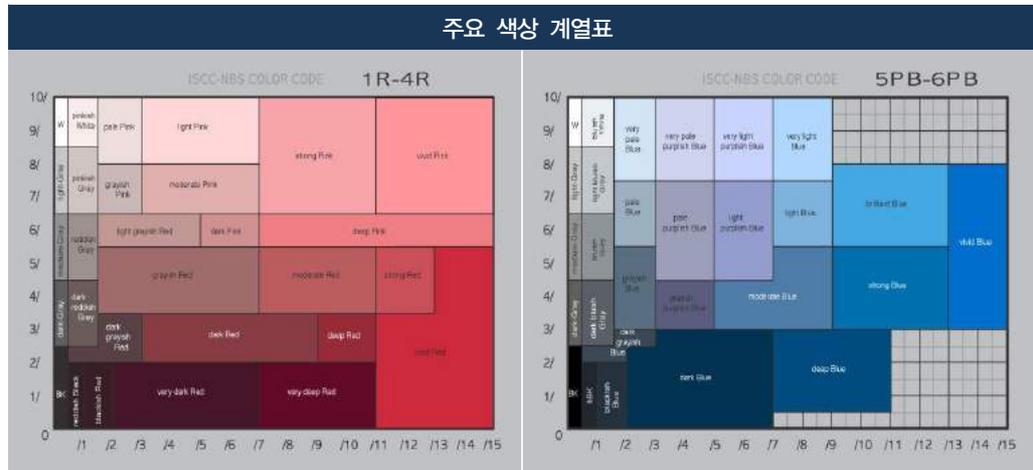
- 하당신도심 일대 (D지역 : 상동, 하당동, 신흥동, 부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 하당신도심 일대는 대체로 공동주택과 평화의 광장 일대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각사의 Base Color는 주로 흰색계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건물은 R계열과 YR계열이 강조색으로 사용됨
 - 공동주택은 대체적으로 소단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숙박시설 밀집지역과의 조화성 및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공동주택에 사용된 색상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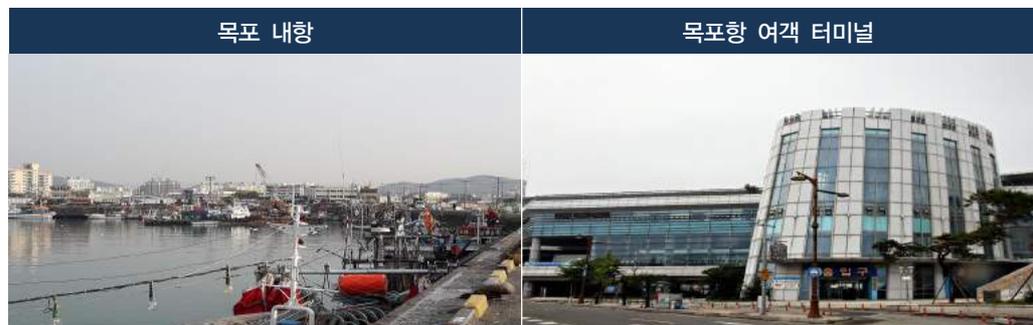


- 숙박시설은 푸른색과 적색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넓은 면적에 사용되어 규모에 의한 적절한 색채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중소 규모의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목포를 상징하는 색채와의 부조화, 통일성 저하, 정체성 감소 등의 혼란함을 주고 있어 중심공간의 공간감 및 아이덴티티가 부족함 실정임



■ 항만지역

-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항만 중심 점적공간인 목포 여객터미널은 바다와 조화로운 흰색과 푸른색 중 흰색을 건축물 Base Color로 사용하고 창문선 등 작은 규모의 색채를 푸른색을 도입하여 대체적으로 색채면에서 조화성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시설물 및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색채경관의 문제점 및 과제

- 기존의 색채들이 공간 및 지역의 고유 색채와 조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친근감 및 정체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임
- 다른 문제점은 사용되는 색채가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넓은 면적에 사용되는 색과 작은 면적에 사용되는 색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즉, 작은 면적에 사용되는 면이 공동주택 등 넓은 면적에 사용하여 소색의 문제를 일으켜 환경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특색 및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의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며, 색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맞는 색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함

지역이 지닌 자원들과의 조화성 및 고유의 정체된 이미지의 부재

- 정체성을 지닌 고유 색채를 지정하여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 도입
- 목포시 미향 이미지 부각 및 관광도시로의 지향하는 색채 도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재료가 지닌 한계성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재료의 색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색채 제시
- 공공장소 및 공공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통일성 부각

도시경관과 이미지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 목포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상과 색채이미지 적극 반영

- 색채의 선정은 주변 환경요소 및 주거, 상업, 문화공간, 학교·관공서 등의 용도에 따라 색채를 선정하여야 함
- 색채의 적절한 사용은 건축물의 경우 고층, 중층, 저층 등에 따라 입면 색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원경, 중경, 근경에서의 보행자들을 고려하여야 함

1 개요

1) 색채란?

- 도시경관의 시각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경관의 질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존에 관계된 모든 색채

2) 목적

-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색채 선정을 통해 자연스러우며 목포만의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 시민의 시각적 편안함과 쾌적함을 위해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색채 경관 형성
-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는 무분별한 색채 사용 방지

3) 규정항목

-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을 통해 기본색상을 추출하였고 요소별 권장팔레트에 따른 색채 권장
- 현황분석을 통해 목포만의 상징색을 도출하고, 권역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색채 기준 제시

4) 적용항목

구분	세부내용
권역별	남해안·서해안, 도서해양, 남부 원도심, 서부 원도심, 남악생태도시, 하당신도시, 북부산업지
요소별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5) 색채관련 법규 검토

-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계획내용에 색채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규	주요규정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건축물의 배색, 형태, 색채와 건축에 관한 계획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주거시설

단독주택

01 시각적으로 정연하고 편안한 단독주택 단지를 형성한다.

- 통일성 있는 주거단지 형성을 위하여 단지별 유사 계열로 지붕색채를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은 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하며, 시각적 노출이 많은 부분은 자연적 재료를 지향
- 인접 자연색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옥상녹화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경관을 조성한다.



유사색채를 적용한 주거단지



자연소재의 소재 사용



인접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형성

공동주택

01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단지 통일성을 확보한다.

- 단지는 주조색에 의해 통일성을 형성하고, 강조색을 통해 주거등을 차별화 한다.
- 건설사 자체의 브랜드 색상보다 지역 고유 기조색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색채 통일성을 유지한다.
- 저채도 색상 사용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이미지를 형성한다.



주조색 동일로 통일성 형성



강조색 적용으로 차별화



저채도의 색채 적용

문화재

01 한옥 본연의 소재 및 색채 적용으로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형성한다.

-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 현대적 시설 및 개량 보수 작업시, 문화재 고유의 색채를 활용한다.
- 인공적인 페인트 색상 활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한다.
- 신축 한옥 및 현대적 건축시, 지붕 및 담장 등을 기존 한옥과의 채도 및 색의 조화를 고려한다.



주조색 동일로 통일성 형성



강조색 적용으로 차별화



저채도의 색채 적용

1 상업·업무시설

상업건축물

01 전체적인 통일성을 형성하되, 부분적 강조색 적용으로 다양함과 활동적인 색채경관 연출

- 주출입구 및 건축 입면의 부분적 강조색을 사용하되, 원색 계열의 색채는 지양한다.
- 저층부 보행자의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 소재 및 색상, 패턴 적용으로 활력이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
- 차양이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인접한 차양과 유사색상으로 적용한다.



주출입구 강조색 적용



입면 소재 및 색채 변화로 활력 조성



인접한 위치의 차양막 디자인 통일

고층빌딩·업무시설

01 통일성과 상징성의 조화로운 균형을 확보하며, 근경과 원경의 입체감 있는 색채 계획

- 서로 인접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유사색채를 사용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 건축물의 옥탑부, 저층부, 주출입구, 등에 강조색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 주조색·보조색의 유사색 사용을 통해 원경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부분 강조색 적용을 근경의 변화감을 연출한다.



유사색채 적용으로 연속성 있는 가로 연출



강조색으로 기업 이미지 연출



부분 강조색으로 변화감 연출

관광건축물

01 목포시 본연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적이며 활력 있는 경관색채 적용

- 목포의 이미지를 담은 전통적 색채를 활용하여 건축입면에 적용하여 정체성을 강화한다.
- 휴양관련 시설일 경우, 시각적 편안함을 위해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 활성동이 요구되는 관광·레저시설일 경우 다양한 유채색을 강조색으로 활용하여 활력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한옥 요소 및 색채를 활용한 호텔 건축



저채도 및 자연소재 사용



유채색으로 활력있는 경관 연출

1 산업 · 공업시설

산 · 공업 건축물

01 환경친화적 외관디자인을 권장하며,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 폐쇄감 및 위압감 해소를 위해 주 가로에 접하여 위치한 입면은 개방적인 소재 및 밝은 색채를 적용
- 부피 및 넓이가 큰 경우 입면의 패턴, 소재, 색채 등을 활용한 입면분절을 계획한다.
- 첨단산업의 미래적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위해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를 활용한다.



밝은 색채 사용해 개방적 이미지 연출



입면 패턴 및 색채 적용



자연과 조화되는 배색 적용

연구시설

01 다양한 소재 및 색채 사용으로 친근함을 부여한다.

- 교육연구시설 및 첨단연구시설 등의 경우 창의력 도모를 위해 밝고 쾌적한 색채를 사용한다.
- 난색계열의 색상을 적절하게 배색하여 적용하며, 원재료의 색채를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 조성
- 저채도의 색상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밝고 활력있는 색채 연출



난색계열의 색상 적용



친자연적 소재 및 저채도 색채 사용

1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01 환경친화적 외관디자인을 권장하며,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 권위적이고 위압감을 형성하는 단색 사용을 지양하며, 저채도의 배색 권장
- 광장 등의 활동공간에는 계획적으로 강조색을 활용하여 활발한 공간 유도
- 자연재료 및 투명소재 사용으로 시각적 개방감과 편안한 분위기 연출



저채도도 배색 및 자연소재 사용



오픈스페이스 강조색 적용



자연소재 및 투명소재 사용

1 요소별 권장 팔레트

1) 기본방향

- 보조색, 강조색에 대해 주거시설, 상·공업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요소별 특성에 맞게 색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과용되던 색채를 새롭게 정립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함
- 목포시를 대표하는 색채를 부여하여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함

<p>주거시설</p> <p>- 전통이 있는 역사 도시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통건축물인 한옥에서 색을 추출하여 적용하였으며, 저채도로 구성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색채 경관 계획</p> <p>Key Word : 내추럴한 / 온화한 / 은은한</p> <p>‘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져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색채’</p>	
<p>상·업무시설</p> <p>- 젊음과 활기찬 상업지역의 이미지를 위해 친근하고 현대적인 색채를 구성하였으며, 보행자의 시각적 변화감을 위해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되 채도를 유사하게 계획하여 다양함 속에서 정돈된 경관 형성</p> <p>Key Word : 내추럴한 / 경쾌한 / 화려한</p> <p>‘활기가 넘치고 매력적인 경관 색채’</p>	
<p>산·공업시설</p> <p>- 친자연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산·공업 이미지를 위해 한색과 난색의 적절한 강조색 적용으로 깔끔한 경관을 연출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중명도·저채도를 활용한 색채 경관 계획</p> <p>Key Word :ダイナ미한 / 모던한</p> <p>‘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경관 색채’</p>	
<p>공공시설</p> <p>- 지역민에게 친근하며 부드럽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여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연소재의 고유색을 적용하여 친자연적인 이미지 연출</p> <p>Key Word : 맑은 / 온화한 / 내추럴한</p> <p>‘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채’</p>	

2) 요소별 보조·강조 색채 팔레트

주거시설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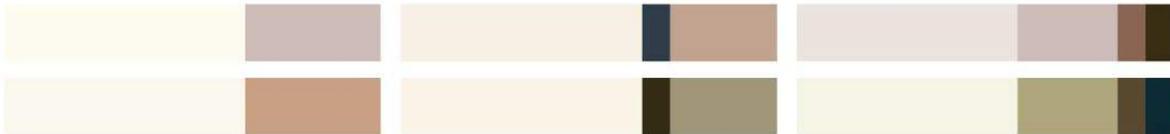
C19 M24 Y31 K0	C25 M31 Y38 K0	C24 M26 Y20 K0	C20 M24 Y22 K0	C25 M35 Y40 K0	C36 M33 Y36 K0
C22 M38 Y46 K0	C34 M34 Y36 K0	C30 M36 Y40 K1	C29 M33 Y62 K2	C33 M29 Y54 K1	C39 M34 Y52 K3

강조색

C47 M50 Y50 K13	C40 M56 Y59 K17	C53 M55 Y69 K36	C47 M59 Y82 K40
C74 M61 Y50 K34	C79 M62 Y56 K46	C56 M59 Y77 K53	C61 M58 Y67 K47

지붕색 권장

권장배색 (안)



[Example] : 단독주택



[Example] :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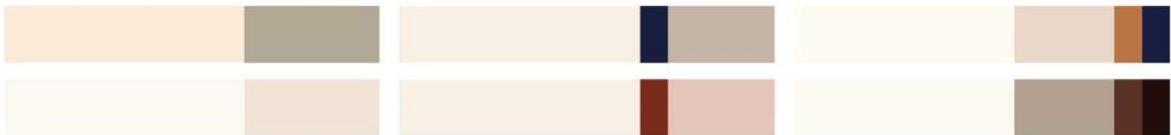


상 · 업무시설

보조색						강조색			
C5 M10 Y13 K0	C3 M18 Y22 K0	C8 M17 Y17 K0	C9 M24 Y21 K0	C13 M16 Y18 K0	C4 M18 Y17 K0	C22 M65 Y76 K7	C24 M57 Y71 K7	C35 M78 Y72 K34	C47 M67 Y67 K42
C13 M16 Y18 K0	C8 M14 Y18 K0	C30 M28 Y31 K0	C24 M26 Y31 K0	C32 M29 Y40 K0	C36 M34 Y41 K1	C62 M65 Y66 K63	C80 M73 Y47 K41	C84 M66 Y54 K51	C69 M63 Y62 K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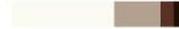
☐ 지붕색 권장

권장배색 (안)



[Example] : 저층 상업시설

[Example] : 고층 상업 · 업무시설



저층부 포인트 컬러 적용으로 부분적 색상 대비를 통한 포인트 색채경관의 형성

균형있는 색채 변화로 많은 수의 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배색으로 인한 쾌적한 경관형성을 지향

인접한 건축물의 저층부, 중고층부 색채를 고려하여 조화되는 색채 적용을 통해 상업 · 업무 공간의 연속성 확보



산 · 공업시설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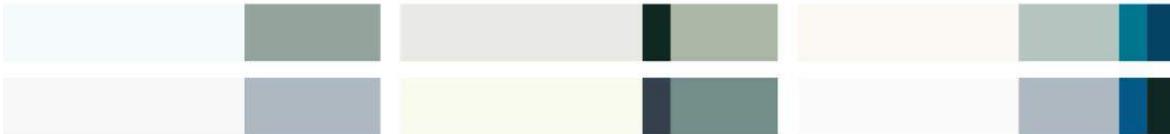
C32 M21 Y18 K0	C33 M21 Y18 K0	C29 M18 Y22 K0	C30 M15 Y24 K0	C30 M15 Y22 K0	C35 M20 Y35 K0
C42 M28 Y36 K0	C45 M27 Y37 K0	C37 M17 Y36 K0	C48 M33 Y33 K1	C56 M33 Y41 K3	C44 M19 Y19 K0

강조색

C87 M38 Y36 K6	C90 M51 Y43 K19	C87 M43 Y46 K15	C94 M60 Y26 K7
C73 M60 Y50 K33	C91 M64 Y40 K23	C86 M61 Y46 K29	C73 M57 Y64 K52

지붕색 권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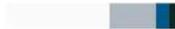
권징배색 (안)



[Example] : 산업시설



[Example] : 공업시설



지붕색은 폐색감 및 위압감의 완화를 위해 주변과 통일되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지붕권징색채 활용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색채를 활용

연접부의 경우 자연재료 및 따뜻한 느낌의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



포인트 건축물들이 경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안정적인 색채 경관 형성 권장

공업지역 내 경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일 경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채를 계획



공공시설

보조색						강조색			
C11 M15 Y22 K0	C18 M18 Y24 K0	C20 M17 Y24 K0	C17 M15 Y25 K0	C22 M21 Y32 K0	C13 M21 Y34 K0	C40 M68 Y91 K41	C69 M46 Y60 K26	C69 M59 Y61 K47	C69 M56 Y45 K22
C16 M23 Y41 K0	C17 M23 Y36 K0	C10 M16 Y32 K0	C21 M22 Y32 K0	C26 M26 Y32 K0	C43 M35 Y36 K1	C73 M66 Y56 K51	C71 M66 Y58 K54	C77 M54 Y71 K57	C52 M59 Y71 K41

□ 지붕색 권장

권장배색 (안)

[Example] : 주민센터 [Example] : 학교



1 중점경관관리구역

1) 기본방향

-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보조·강조색을 설정하여 주변 자연환경관 및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연과 역사문화의 경관 색채계획을 통해 목표의 고유한 환경을 보전

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산림의 색채와 어우러지는 색채경관을 연출하고, 10Y~10GY 계열 색상 적용으로 푸르고 자연적인 산림경관을 보전

Key Word : 내츄럴한 / 온화한 / 은은한

‘산림경관의 푸르고 자연적인 색채 경관 연출’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도심부의 맑은 하천 색상인 5G~5B 계열 색상 적용으로 맑고 부드러운 색채 계획을 통해 친자연적인 이미지 부여

Key Word : 내츄럴한 / 맑은 / 온화한

‘수경관의 맑고 부드러운 색채 경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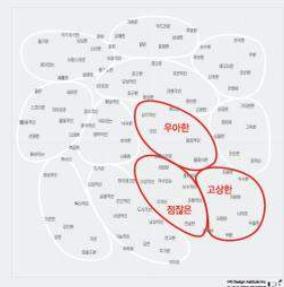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역사문화 인접부의 전통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품위있고 차별할 수 있도록 저채도 중명도를 적용하였으며,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이며, 자연적인 이미지 연출

Key Word : 우아한 / 점잖은 / 고상한

‘역사문화의 전통적이며 차별한 색채 경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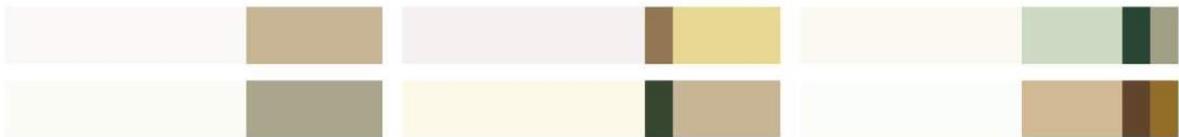
2) 구역별 보조·강조 색채 팔레트

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조색						강조색			

□ 지붕색 권장

권장배색 (안)



[Example] : 주거시설

[Example] : 상업시설

지붕색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변 산림자연과 유사한 색상으로 지붕권장색채 적용

건축물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보조색을 적용하여 원경을 통일성과 중경의 질서감을 우선하여 계획

건축물 면적의 40% 이하의 범위로 적용하며, 산림자연에 어울리는 자연친화형 외장재 사용 권장

산림자연 주변 어울리는 색채를 고려하되, 강조색으로 각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차별화를 권장

기단부의 색채와 재료를 통일하여 보행자 시각에서의 경관 고려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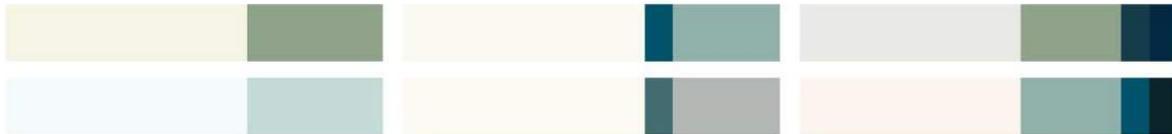
C23 M6 Y17 K0	C15 M5 Y13 K0	C22 M8 Y14 K0	C45 M19 Y33 K0	C37 M13 Y23 K0	C18 M9 Y21 K0
C31 M22 Y25 K0	C20 M6 Y20 K0	C20 M7 Y17 K0	C27 M11 Y27 K0	C35 M16 Y36 K0	C47 M26 Y48 K1

강조색

C71 M43 Y47 K14	C91 M55 Y42 K19	C81 M59 Y52 K35	C72 M55 Y53 K30
C84 M57 Y59 K40	C83 M60 Y52 K37	C85 M61 Y55 K45	C80 M61 Y58 K50

지붕색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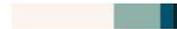
권장배색 (안)



[Example] : 주거시설



[Example] : 상업시설



지붕색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수변과 유사한 색상으로 지붕권장색채 적용

건축물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주조색을 적용하여 원경을 통일성과 중경의 질서감을 우선하여 계획

건축물 면적의 40% 이하의 범위로 적용하며, 수변에 어울리는 자연친화형 외장재 사용 권장



수변에 어울리는 색채를 고려하되, 강조색으로 각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차별화를 권장

기단부의 색채와 재료를 통일하여 보행자 시각에서의 경관 고려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조색						강조색			

□ 지붕색 권장

권장배색 (안)

[Example] : 주거시설

[Example] : 상업시설

지붕색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역사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보유한 색상으로 지붕권장색채 적용

건축물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보조색을 적용하여 일경을 통일성과 중경의 질서감을 우선하여 계획

건축물 면적의 40% 이하의 범위로 적용하며, 주변 역사문화거점과 어울리는 외장재 사용 권장

주변 역사문화거점과 어울리는 색채를 고려하되, 강조색으로 각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차별화를 권장

기단부의 색채와 재료를 통일하여 보행자 시각에서의 경관 고려

1 권역별 대표색 가이드라인 적용

- 목포시 각 권역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권역별 환경요소에 의한 색채를 추출하고 이를 각 권역의 포인트 색채로 활용하여 간 권역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함
- 전체적인 색채 도입보다는 부분적으로 포인트 색채로 도입하여 주변 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화롭게 계획
- 도색을 통한 대표색 표현보다는 재료자체의 색을 활용한 대표색 표현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색표현 실현

권역		경관목표	대표색						
도시 해양		섬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자연 재료의 색상을 최대한 활용 	<table border="1"> <tr> <td>1.25PB 9/2</td> <td>2.5PB 8/4</td> <td>3.75PB 7/6</td> </tr> <tr> <td>2.5PB 6/8</td> <td>2.5PB 4/6</td> <td>1.25PB 3/4</td> </tr> </table>	1.25PB 9/2	2.5PB 8/4	3.75PB 7/6	2.5PB 6/8	2.5PB 4/6	1.25PB 3/4
1.25PB 9/2	2.5PB 8/4	3.75PB 7/6							
2.5PB 6/8	2.5PB 4/6	1.25PB 3/4							
남부, 서부 해양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 자연속의 포인트 색활용 	<table border="1"> <tr> <td>12.25PB 9/2</td> <td>3.75Y 6/4</td> <td>10P 5/2</td> </tr> <tr> <td>5B 6/6</td> <td>5B 4/4</td> <td>6.25RP 3/2</td> </tr> </table>	12.25PB 9/2	3.75Y 6/4	10P 5/2	5B 6/6	5B 4/4	6.25RP 3/2
12.25PB 9/2	3.75Y 6/4	10P 5/2							
5B 6/6	5B 4/4	6.25RP 3/2							
북부 산업지		삭막하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 산뜻하고 밝은 색상 활용 	<table border="1"> <tr> <td>10B 8/1</td> <td>8.75Y 6/4</td> <td>8.75RP 6/4</td> </tr> <tr> <td>6.25PB 2/4</td> <td>6.25GY 3/2</td> <td>10YR 2/2</td> </tr> </table>	10B 8/1	8.75Y 6/4	8.75RP 6/4	6.25PB 2/4	6.25GY 3/2	10YR 2/2
10B 8/1	8.75Y 6/4	8.75RP 6/4							
6.25PB 2/4	6.25GY 3/2	10YR 2/2							
하당 신도시		밝고 활기있는 고명도 유사색,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강조색 활용 	<table border="1"> <tr> <td>N8</td> <td>8.75Y 6/2</td> <td>8.75BG 6/4</td> </tr> <tr> <td>5BG 3/1</td> <td>10RP 3/1</td> <td>7.5R 4/8</td> </tr> </table>	N8	8.75Y 6/2	8.75BG 6/4	5BG 3/1	10RP 3/1	7.5R 4/8
N8	8.75Y 6/2	8.75BG 6/4							
5BG 3/1	10RP 3/1	7.5R 4/8							
남악 생태도시		자연과 어울리는 중명도, 중채도 사용 	<table border="1"> <tr> <td>7.5P 8/2</td> <td>5PB 8/2</td> <td>8.75PB 7/2</td> </tr> <tr> <td>6.25GY 6/8</td> <td>1.25G 4/2</td> <td>5YR 5/4</td> </tr> </table>	7.5P 8/2	5PB 8/2	8.75PB 7/2	6.25GY 6/8	1.25G 4/2	5YR 5/4
7.5P 8/2	5PB 8/2	8.75PB 7/2							
6.25GY 6/8	1.25G 4/2	5YR 5/4							
서부 원도심		유달산의 수련한 기암괴석과 근대 역사문화가 어울리는 색채활용 	<table border="1"> <tr> <td>8.75R 8/2</td> <td>N8</td> <td>8.75YR 6/2</td> </tr> <tr> <td>1.25PB 5/2</td> <td>8.75R 5/2</td> <td>N3</td> </tr> </table>	8.75R 8/2	N8	8.75YR 6/2	1.25PB 5/2	8.75R 5/2	N3
8.75R 8/2	N8	8.75YR 6/2							
1.25PB 5/2	8.75R 5/2	N3							
남부 원도심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감성과 친근함을 줄 수 있는 색채 활용 	<table border="1"> <tr> <td>2.5YR 8/2</td> <td>10YR 9/1</td> <td>5BG 6/2</td> </tr> <tr> <td>7.5PB 7/6</td> <td>6.25GY 5/4</td> <td>10P 5/6</td> </tr> </table>	2.5YR 8/2	10YR 9/1	5BG 6/2	7.5PB 7/6	6.25GY 5/4	10P 5/6
2.5YR 8/2	10YR 9/1	5BG 6/2							
7.5PB 7/6	6.25GY 5/4	10P 5/6							

1) 관리방안 및 활용 계획

1) 관리방안

- 색채 설계지침을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마감 재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며, 지붕과 벽체에 해당하는 재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료 적용방안을 제시함

2) 지붕

- 지붕재료는 자연소재의 재료사용을 권장,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 범위 참조함

종류	색채범위	비고
전통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시멘트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기와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아스팔트 싱글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3) 벽체

- 외벽의 재료는 벽돌, 블록 등의 재료를 권장(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 범위 참조)

재료유형	색채관리 방안	재료예시
도상 및 도장방식에 의해 재료의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 색채범위	▪ 도장, 드라이비트, 인공 석재류, 인공패널류, 비닐사이딩류, 타일류
재료자체 물성에 의해 채가 표현되는 경우	▪ 채도 40이하	▪ 목재, 블록,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압출성형패널, 천연석재, 부식간판
	▪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 색채범위	

4) 재료유형별 표준 팔레트

아스팔트싱글	
석재	
벽돌	
목재	

5.8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5.8.1 개요

1) 목적

- 야간 경관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매력적인 야간 경관 창출
- 과도한 빛 밝기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도심의 문제로 대두되는 빛 공해 최소화 방안 마련
- 공간별 야간 활동에 따른 적절한 조명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조화로운 야간 경관 형성

2) 규정항목

-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요소별로 나누어 적용

규 정	정 의
건축물 조명	건축물 특성 및 형태에 따른 속성 규정
오픈스페이스 조명	오픈스페이스 종류 및 주변 경관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자동차도로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도시기반시설 조명	상징성 및 환경성 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상징조형물 조명	상징성 및 환경성 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조명	옥외광고물 주요 사항에 관한 규정
범죄예방디자인(CPTED)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물	일반건축물	공동, 단독, 상업건축물 등의 일반건축물 조명
	공공건축물	관공서, 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조명
	산업건축물	산업단지 내부 건축물 및 산업구조물 조명
오픈스페이스	공원 및 녹지공간	공원, 광장, 녹지 등에 설치되는 조명
	수변공간	하천 등에 설치되는 조명
자동차도로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보도에 설치되는 조명 자전거용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	
도시기반시설	도시구조물(고가차도, 교량, 보도육교 등)의 조명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공간, 진입부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조형 술물 및 공공조형물의 조명	
옥외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형전광판 등의 조명	
범죄예방디자인(CPTED)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	

5.8.2 주요원칙

1 기본방향

1) 건축물

- 건축물의 기능성에 부합하는 야간경관 연출
- 각 건축물에 대한 조명이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 통일성 있는 야간경관 연출

2) 오픈스페이스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연출
-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야간경관

3) 도시기반시설

- 야간 활동의 안전 확보 및 야간 도시환경에 활력 부여
-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의 상징성 부여

4) 상징조형물

- 깨끗하고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여 미관향상에 기여
-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개성 있는 야간경관 연출

5) 옥외광고물

- 경관조명으로 인한 광공해 발생 지양
-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



건축물의 기능성에 부합하는 야간경관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야간경관



야간 활동의 안전 확보 및 야간 도시환경에 활력 부여



경관조명으로 인한 광공해 발생 지양

5.8.3 야간경관 관련 기준

■ 국내법 및 자치법규

1)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음



2) 빛 공해방지계획의 수립

- 국가(환경부장관)는 “빛 공해방지계획”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 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빛 공해방지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 ①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②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 ③ 빛 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④ 빛 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 ⑤ 빛 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⑥ 그 밖에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도 공해방지계획” 을 수립·시행하며, “빛 공해방지지역위원회” 를 구성함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 각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음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5)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구분	설명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6) 빛 방사 허용기준

- 공간조명(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이하	lx(lm/m²)

- 광고조명(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이하	lx(lm/m²)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m²
	24:00~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cd/m²

-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m²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7)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각 시·도시사는 관할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함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 편

-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9) 조명기준

- 도로 조명 등급은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됨

[표5 - 1] 도로 및 교통의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	도로조명 등급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상하행선이 분리되고 교차부는 모두 입체교차로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고속의 도로	교통량이 많으면서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1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2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단순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이 어두운 경우	M3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1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국도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3
집산 및 국지도로	중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4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5

-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노면휘도, 휘도균제도는 아래 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5 - 2]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	평균노면휘도(최소허용치) Lavg (cd/m ²)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Tl(%) (최대허용치)
		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균제도(Ul) Lmin/Lmax	
M1	2.0	0.4	0.7	10
M2	1.5	0.4	0.7	10
M3	1.0	0.4	0.5	10
M4	0.75	0.4	-	15
M5	0.5	0.4	-	15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아래 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5 - 3]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 역	조 도(x)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 수평면 조도는 보도 노면상의 평균 조도
- 연직면 조도는 보도 중심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높이의 도로측과 직각인 연직 면상의 최소 조도

1 국외기준

1)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지역의 구분	환경지역의 밝기	적 용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	
			건물 표면(id/m ²)	광고물 표면(id/m ²)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0	50
E2	낮은 휘도 분포지역	교외 주거지역	5	400
E3	중간 휘도 분포지역	산업단지, 거지역	10	800
E4	높은 휘도 분포지역	도심지, 상업지역	25	1000

- 국제조명위원회는 또한 경관조명의 밝기(표면휘도: id/m²)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마감재질	명도	반사율	밝음 도심부 12(cd/m ²)	보통 작은거리 6(cd/m ²)	어두운 지방 4(cd/m ²)
밝은 대리석	백색	80%	150lx	100lx	50lx
콘크리트	밝음	60%	200lx	100lx	100lx
황갈색 벽돌	중간	35%	300lx	200lx	150lx
회색 벽돌	어두움	15%	500lx	300lx	200lx

5.8.4 일반건축물

1) 공동, 단독, 상업건축물 등의 일반건축물 조명

- 주민의 안전성, 방법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 조도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 제한된 조도와 간접조명으로 쾌적한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주거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주거지는 과도한 상층부(옥탑부) 야간조명을 지양하고, 단지 진입부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조명 연출을 통한 야간 활동의 쾌적성 향상 도모 ▪ 컷오프형 등기구 사용 또는 휘도 제한 ▪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 금지, 가급적 백색계열의 광원 사용 권장 ▪ 원색계열이나 건설사 명칭, 브랜드, 로고 등의 컬러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발광조명체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판류형이 아닌 입체 문자형 설치 권장 ▪ 건물과 보행공간의 조명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며 보행등으로 간접조명을 사용하여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
단독주거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빛의 색채와 광량을 조절하여 주거환경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의 조화 도모 ▪ 주민들의 안전성과 방법성을 확보한 조명연출 ▪ 건축 내부조명과 휘도대비, 조명색상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계획 ▪ 건축물 상부만 과도하게 강조된 조명은 지양하며 조화로운 빛의 레벨 계획
상업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은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부각시키되 시가지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연출 ▪ 과도한 색상의 변화,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조명연출 지양 ▪ 모텔, 유흥업소 등의 과도한 형태, 규모, 색채의 옥외광고물 조명을 지양 ▪ 원색의 색상의 사용과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점멸)을 지양하고 고휘도 광원의 라인조명방식 금지 ▪ 자동 점멸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광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및 유지비 절약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 표면(cd/m ²)	
공동/단독주거건축물	낮은 휘도 분포지역	5	400	3000~4200
공동/단독주거건축물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상업건축물	높은 휘도 분포지역	25	1000	3000~5000



공동주택 입구부에 백색계열의 조명을 활용하여 입구 상징성 부각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5.8.5 공공건축물

1) 관공서, 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조명

-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연출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 기관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이나 관공서, 도서관 등의 공공건축물은 그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 권장 ▪ 다양한 빛 축제 계획 및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화 등 경제 활성화 도모 ▪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은 다양한 색상을 지양하고 단일 색조의 조명을 이용하되 색온도는 비교적 태양광에 가깝도록 계획 ▪ 조명광원의 색온도를 조절하여 계절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동이나 옥탑 등 돌출부위나 특색 있는 부분의 집중 연출 조명 ▪ 각 건물 특성의 입체적 부각을 위한 다운라이팅과 업라이팅을 사용하여 조명 연출 ▪ 광학적인 개념이 있는 고효율 반사판을 적용, 간섭광 통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건축물은 학교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 권장 ▪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캠퍼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조명 실시 ▪ 기존에 어둡거나 조명이 없는 장소는 조명기구 설치 및 개선하여 쾌적한 통학로 조성 ▪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제한 및 고휘도 광원의 조명 금지 ▪ 출입구, 저층부 조명으로 출입을 유도하는 빛의 계획 ▪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 방식 및 기구의 도입으로 조명관리체계 시스템화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인지도 및 관광지로 이용이 높은 문화시설의 시각적 재미 제공을 위한 계절별, 시간대별, 이벤트 조명 연출 ▪ 진입로 및 정문 등의 조형물 조명 연출을 통한 야간 활동의 쾌적성 부여 ▪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고려한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 연출 권장 ▪ 보안조명은 유충성이 적으며, 에너지 세이빙 효과의 LED 램프를 권장하고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눈높이 보다 낮은 조명방식의 빛으로 동선 유도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 (cd/m ²)	광고물 표면 (cd/m ²)	
공공기관청사/ 학교/문화시설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색온도는 비교적 태양광에 가깝도록 계획



빛 공해를 고려한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 연출 권장

5.8.6 산업건축물

1) 산업단지 내부 건축물 및 산업구조물 조명

- 빛을 통해서 삭막한 구조물이 빛의 예술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연출
- 주간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고 산업지역의 용도를 잘 반영하는 야간조명 계획

2) 디자인 가이드라인

산업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Blue 계열의 조명 사용으로 첨단 이미지 연출 및 특수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조명 연출로 산업단지의 테크노스케이프에 대한 이미지 제고 ▪ 휘도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서 제시된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제1종~제4종에 맞는 휘도수치(아래표참고)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빛 공해 방지 ▪ 산업단지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활용한 야간경관 연출로 테크노스케이프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도모 ▪ 산업단지 내 공간의 특성에 따른 기능별 조명 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연출로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 ▪ 중·원경에서의 조망시점을 고려하여 디테일한 점적인 조명연출 보다는 산업시설 전체의 실루엣 및 색의 대비, 휘도의 대비로 선적이고 면적인 부분을 강조 ▪ 산업단지에서는 주변 주거지역 및 농경지에 및 침해를 주지 않는 환경과 공생하는 야간경관조명 연출
-----------	------------------------------------------------------------------------------------------------------------------------------------------------------------------------------------------------------------------------------------------------------------------------------------------------------------------------------------------------------------------------------------------------------------------------------------------------------------------------------------------------------------------------------------------------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표면(cd/m ²)	
산업건축물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5000

[표5 -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m ²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White계열의 조명 사용으로 첨단의 이미지 연출



산업단지 내 공간의 특성에 따른 기능별 조명 계획

5.8.7 공원 및 녹지

1) 공원, 광장, 녹지 등에 설치되는 조명

- 이용자의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
- 광공해를 줄이고, 가급적 LED, 태양광에너지 등의 친환경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보행과 휴식을 배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 ▪ 공원의 수목조명은 이용객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점등시간을 조정하여 연출 ▪ 불필요한 빛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컷오프 등기구 사용 ▪ 수목등, 수변등을 활용하여 친근하면서도 풍부한 자연의 야간경관 조성 ▪ 야간활동(산책 및 스포츠)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위한 밝기 확보 ▪ 조명설치 시 조경시설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 ▪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높이 설정 ▪ 야간의 범죄 방지 및 안전 확보와 동시에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계절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조명연출 계획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에게 개방된 광장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계획 ▪ 가로등, 바닥조명, 볼라드 조명, 이벤트 조명 등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 ▪ 시설물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조명의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하되, 눈부심을 주거나 주변으로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조명 지양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 및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빛의 간섭과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여 광공해 최소화 도모 ▪ 광장에는 포항의 특징을 살린 조형성이 강조된 조명기구 설치 권장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환경을 배려한 절제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적인 빛의 연출 ▪ 자연경관의 도로조명은 녹지 및 하천으로 새어나가는 빛을 제거할 수 있는 컷오프 조명방식 채택 ▪ 자연경관 내 옥외광고물 등의 조명은 LED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 방식을 금지하고 간접조명 적용 ▪ 자연경관 내 모든 발광물을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된 점조명 선조명의 사용 금지 ▪ 일정시간 이후 수목등 및 수중등을 소등하여 생태계 보전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 표면(cd/m ²)	
공원/광장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녹지	어두운 경관의 지역	0	50	3000~4200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적인 빛의 연출

5.8.8 수변공간

1) 하천 등에 설치되는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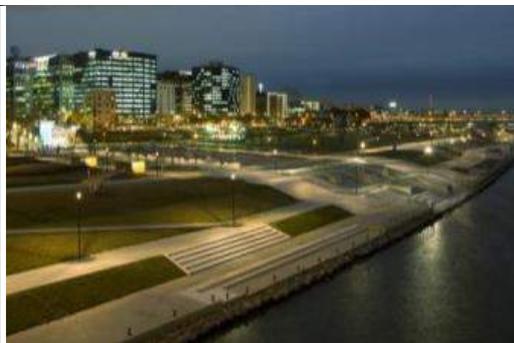
- 하천의 연결성이 돋보이는 야간경관 연출
- 광공해를 줄이고, 가급적 LED, 태양광에너지 등의 친환경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률이 높은 하천의 시민이용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량에 따른 조명기구 점등시간을 제어하고 이용량에 따라 밝기 조절 권장 ▪ 구간별 하천경관계획 특성에 따라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할 구간과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할 수간에 따라 적절한 조도와 조명계획 수립 ▪ 친수지역에는 가로등, 볼라드 등을 이용한 조명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경관적 심미성 고려 ▪ 자연형 하천의 환경을 고려하여 생태보호 및 기구 효율 유지관리를 위하여 곤충의 유인이 작은 광원기구 적용 ▪ 하천의 생태성을 고려하여 조형성을 가미한 가로등 설치와 데크, 펜스, 교량을 활용한 조명연출로 은은하고 매력적인 야경 연출 ▪ 수변축의 연속적인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명 연출
----	---------------------------------------------------------------------------------------------------------------------------------------------------------------------------------------------------------------------------------------------------------------------------------------------------------------------------------------------------------------------------------------------------------------------------------------------------------------------------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 표면(cd/m ²)	
하천(생태공간)	어두운 경관의 지역	0	50	3000~4200
하천(친수공간)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빛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유도 하천의 생태성을 고려한 은은하고 매력적인 야경 연출

5.8.9 자동차 도로

1)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

- 기본적으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및 도로의 기능성을 원칙으로 조명계획 수립
-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보임을 확실하게 하여 사고 및 범죄 등의 위험 예방
- 주간선도로는 4000~4200K의 안전하고 편안한 빛 연출
- 보조간선도로는 3000~3200K의 경쾌하고 세련된 빛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동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위계와 기능, 특성에 따라 하위로 갈수록 색온도와 조도가 낮아지도록 연출 ▪ 일반 조명기구와는 달리 가늘고 긴 도로면을 조명하므로 배광(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을 노면에 가능한 한 균일하게 분포)에 대한 고려와 함께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사용 ▪ 기계적 강도(기초포함) 풍속 30m/sec에 견디는 강도의 조명기구 사용 ▪ 외부환경(비, 눈, 바람 등)에 견디는 구조의 조명기구 사용 ▪ 중심도로일 경우 충분한 조도 확보 및 주변과 조화로운 연속적인 조명 연출로 가로의 상징성 부각 ▪ 시가지 도로일 경우 어디서 보더라도 주요 교차점이나 도심 주요 결절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 연출 ▪ 풍경가로일 경우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명 연출 계획 ▪ 농촌지역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주택 내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장애광이 없는 배광방식 권장하고 조명기구으로 인한 농작물 결실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	-------------------------------------------------------------------------------------------------------------------------------------------------------------------------------------------------------------------------------------------------------------------------------------------------------------------------------------------------------------------------------------------------------------------------------------------------------------------------------------------------------------------------------------------------------------------------------------------------------------------------------------------------------------------

[표5 - 5] 자동차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조명등급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TI(% (최대허용치))
		종합균제도(Uo)	차선축균제도(Ul)	
M1	2.0	0.4	0.7	10
M2	1.5	0.4	0.7	10
M3	1.0	0.4	0.6	15
M4	0.75	0.4	0.6	15
M5		0.35	0.4	15



도로조명은 배광에 대한 고려와 함께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사용



곡선도로일 경우 유도성을 중시

5.8.10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1)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보도에 설치되는 조명

- 보행자도로는 어린이, 노인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통행하기에 편리한 조명환경 조성
- 자전거 주행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행자의 안전성 및 도로의 쾌적성 확보

2)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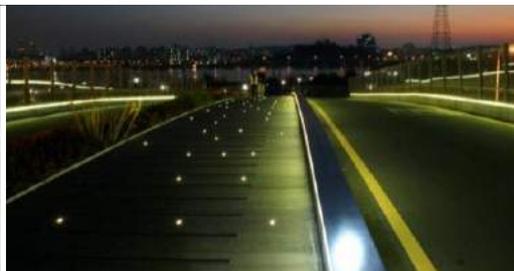
보행자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보도상의 단차나 장애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나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설치 ▪ 주변 식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행자도로에 식재에 의한 빛 차단을 보완 ▪ 보행자도로에는 보행동선을 따라 바닥조명 또는 가로수 하단부 등에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동선 시야 및 보행연속성 확보 ▪ 건축물과 보행공간의 조명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여 보행등의 경우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간접조명 사용 ▪ 상업건축물과 접한 보행자도로는 상가 내외, 윈도우 조명 등 주변조명의 밝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야간보행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쇼핑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즐거움, 활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 ▪ 주거지역의 보행자도로는 주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므로 휴먼스케일의 친밀감을 주도록 램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계획
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한 조명기구 사용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는 조명기구 사용 ▪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 설치 ▪ 보행등, 수목등 등을 활용하여 야간 동선을 유도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밝기 확보 ▪ 자전거도로의 야간조명은 볼라드 및 바닥 매입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에 대한 광공해 방지 ▪ 조명기구는 주변 환경에 빛 공해를 주지 않는 위치와 조도의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 점·소등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및 유지비 절약

[표5 - 6]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등급	평균수평면조도(lx)	최소수평면조도(lx)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최소수직면조도(lx)
P1	15	3.0	5.0
P2	10	2.0	3.0
P3	7.5	1.5	2.5
P4	5.0	1.0	1.5
P5	3.0	0.6	1.0
P6	2.0	0.4	0.6



건축물과 보행공간의 조명이 어우러지도록 계획



보행등을 활용한 야간 동선 유도 및 안전을 위한 최소밝기 확보

5.8.11 도시기반시설물

1) 도시구조물(고가차도, 교량, 보도육교 등)의 조명

- 주변 도시공간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연출
- 상징성이 부여된 도시기반시설물일 경우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도시공간과 조화되는 경관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장식성을 강조하는 야간조명 설치 지양 ▪ 교량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조화되어야 하며, 보행로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야간조명 연출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조명색상 및 밝기의 변화 연출 지양 ▪ 신설, 리모델링되는 교량 및 조형물의 조명은 시설물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 계획 ▪ 교량은 난간조명,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야간 조망 대상으로서의 조형미를 부여하고, 조명은 대상물을 벗어나 허공에 조사되지 않도록 설치
입체교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지양 ▪ 구조물 입면의 마감재질 및 색채와 조화로운 광색 사용 권장하고 야간조명은 색상변화, 밝기변화, 반복점멸 지양
보도육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육교는 지주형 조명을 지양하고, 육교난간이나 바닥에 조명을 매입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보행공간에만 조명하도록 권장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과 고효율형 광원 사용 권장 ▪ 야간보행의 안전을 위해 보도육교의 계단, 통로는 조도 확보
지하보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보행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 및 진입 통로의 조도 확보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지양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 표면(cd/m ²)	
교량/입체교차 보도육교/지하보차도(일반)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교량/입체교차 보도육교/지하보차도(상징성)	높은 휘도 분포지역	25	1000	3000~5000

[표5 - 7] 도시구조물 빛반사 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0이하	cd/m ²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조명색상 및 밝기의 변화 연출 지양



야간보행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 및 진입 통로의 조도 확보

5.8.12 상징조형물

1) 조형예술물 및 공공조형물의 조명

- 랜드마크의 성격에 부합하는 야간경관 연출
- 진입부 조형물은 도시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임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의 상징성이 반영된 야간경관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랜드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가 상징하는 성격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명 색상 및 방식 반영 ▪ 하늘로 향하는 빛의 최소화 및 화려한 조명 지양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하게 연출하며, 광원이 외부로 드러나는 조명방식을 지양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지양 ▪ 광공해를 줄이고, 가급적 LED, 태양광에너지 등의 친환경 조명기구 지향 ▪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진입부 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조명색상 및 밝기의 변화 연출 지양 ▪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은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란한 움직임 및 색상변화 지양 ▪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섬의 수목이나 녹지를 활용한 조명계획으로 가로야경의 인지성 및 쾌적성 향상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구 분	환경지역의 밝기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색온도 (K)
		건물 표면(cd/m ²)	광고물 표면(cd/m ²)	
진입부조형물	중간 휘도 분포지역	10	800	3000~4200
랜드마크	높은 휘도 분포지역	25	1000	3000~5000

[표5 - 8] 상징조형물 빛반사 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0이하		150이하	250이하	cd/m ²
		최대값	200이하	600이하	1800이하	3000이하	



야간경관 이미지를 특성화하여 인지성 증대



도시의 상징성이 반영된 야간경관 연출

5.8.13 옥외광고물

1)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형전광판 등의 조명

- 광공해를 줄이고, 가급적 LED, 태양광에너지 등의 친환경 야간경관 연출
- 3000~5000K의 시원한 빛 연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된 점조명, 선조명의 사용 지양 ▪ 간접 조명 방식을 채택하고, 덮개나 차단막 등의 보조 장치 부착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면적인 양각조명과 선적인 음각조명을 차등 적용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주변으로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광고물 및 조명의 색상변화, 밝기변화, 반복점명 지양 ▪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발광광고물의 밝기는 광고물의 최대휘도와 주변지역 평균 휘도비를 규제 ▪ 색상은 지역 장소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지역 및 녹지지역 등은 칼라의 사용을 자제하며, 일부 상업지역 등은 칼라사용을 허용 ▪ 한 건물에 설치된 발광광고물들은 디자인 통일성 및 균형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인접 간판이나 거리풍경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건축물에 부착하는 간판 수량은 최소화하고, 발광광고물이 건축물 입면을 과도하게 넓은 면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지양
대형전광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을 지양 ▪ 조명영역만 비추도록 하고, 허공이나 주변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누출광을 최소화 ▪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등에는 최대표면휘도를 낮추거나 영업시간 이외에는 소등하여 에너지를 절감 ▪ 눈부심이 없도록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하고, 덮개나 차단막 등의 보조 장치를 부착하도록 권장

[표5 - 9] 옥외광고물 빛반사 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이하	lx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 m ²
	24:00~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핵심적인 내용만을 표시하여 조명하는 입체문자형 장식을 권장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을 지양

5.9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총칙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

2) 적용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
-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

4) 용어의 정의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함
- “범죄위험평가” 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
- “접근통제” 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
- “영역성” 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

- “활동의 활성화” 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함
- “범죄 불안감” 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함

1)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1)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
-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 평가를 할 것을 권장
-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

2)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
-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

3)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
-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
-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

5)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림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6)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 (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함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

1 공동주택 설계기준

1) 단지 출입구

-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2) 담장

- 사각지대 또는 고림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3) 부대시설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4) 경비실

-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5)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크,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고려
-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

6) 조경

-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7)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8) 승강기·복도·계단 등

- 주동 출입구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
-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
- 계단실, 승강기내, 승강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고려
- 계단실은 외부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
-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풀림 잠금장치를 설치

9) 세대 내부

-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 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
- 세대 창문의 방범창·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
- 외벽,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

10) 옥외 배관

-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1) 주택주변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2) 출입구 및 창문

-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
-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 계획은 지양
-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하여야 함

3) 옥외 배관 등

-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 계획
-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

4) 조명

- 주택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 설치
-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 등의 설치 권장

■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1) 출입구 등

-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
-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

2)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3) 조명

-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 설치
-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
-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

■ 편의점 설계기준

1) 주변 · 외벽

- 건물(점포) 정면은 가로 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

2) 창문 등

-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 ·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함
-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

3) 부대시설

-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표지판을 출입구 및 카운터에 설치
- 카운터에서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의 설치를 권장

■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 출입구에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 통제
-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출입문과 창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갖춘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설치를 권장함.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에 관하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름



쭈뼌 바다분수

06. 실행계획

1. 실행계획 개요
2. 경관실행 계획
3.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5.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예산계획수립
9. 단계별 추진계획
10.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1. 실행계획 개요

1.1 주요 내용 및 구성 체계

1.1.1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되는 경관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정 및 재편 방안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함

1.1.2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현재 목포시 경관조례를 검토한 후 경관조례의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함

1.1.3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함

1.1.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목포시의 주요 전략지역에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을 도출하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함

1.1.5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약속을 체결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향식 경관계획의 실현 제도로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사항 및 추진·운영 체계를 제시하고 목포시 주도의 경관협정 시범 추진 등 경관협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1.1.6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경관 관련 자문 및 심의 대상을 파악하고 경관심의 및 자문·협의를 통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시함

1.1.7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 현재 목포시 경관 행정조직 운영시스템을 검토하여 경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제시함
- 본 경관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협정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계획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경관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경관실행 계획

2.1 개요

- 목포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 및 경관사업,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 경관협정, 행정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천방안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극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목포시만의 경관을 보전하면서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관 관련 법규 및 규제와 함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표6 - 1] 실행계획의 수단

구분	주요내용
기존 제도와의 연계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경관조례의 개정	▪ 목포시 경관조례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 및 기존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목포시의 경관계획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관사업의 추진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경관사업의 규모 및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추진
경관협정 운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경관위원회 운영	▪ 목포시의 경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목포시의 우수한 경관이미지 형성 및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 형성 유도
경관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자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목포시만의 차별화된 경관이미지를 형성하고,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유도·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2.1 경관계획의 실행방안

-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한 강제규정이 없고 일반 시민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인식 대두
- 경관계획에 의한 다양한 경관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 필요
 - ①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한 경관사업 추진
 - 공모, 경관협정, 민간사업 외 경관사업은 연차별 예산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②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사업 주민 주도적 추진 유도
 - ③ 경관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 ④ 인허가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심의·협의기능 강화
 - ⑤ 수립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토계획법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 제고

2.2 경관가이드라인 실행방안

2.2.1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

활용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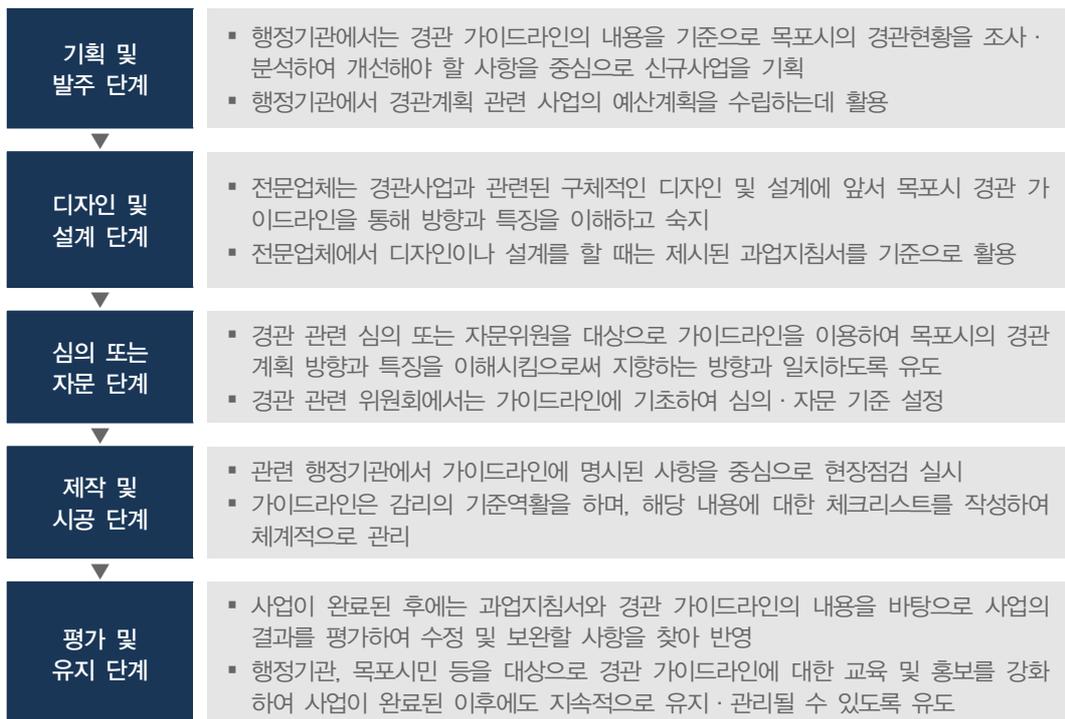
- 경관 가이드라인은 실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기관, 위원회, 전문업체, 목포시민이 목포시의 경관계획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경관관련 사업의 기획, 발주, 디자인 및 설계, 심의, 관리,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

활용주체

- 경관 가이드라인의 활용주체는 행정기관, 자문·심의 위원회, 전문업체 및 목포시민으로 구분

활용주체	활용내용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개발 및 과업지침서 작성의 기초자료 사업에 대한 감리, 감독의 기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체크리스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관계획 교육자료
위원회 (자문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경관계획 방향의 이해 자문·심의위원 구성 및 선정, 자문·심의의 기준 설정 및 체크리스트
전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경관계획 방향의 이해 사업에 대한 디자인/설계 및 시공의 가이드라인
목포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경관계획 방향의 이해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관 교육자료

활용절차



1 교육/홍보 활용방안

1) 개요

- 목포시 경관 가이드라인의 활용성과 기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법·제도, 내용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교육	홍보	법/제도	보완/개선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홍보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경관 가이드라인의 전문성 확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2) 교육 측면

- 경관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활용주체인 행정기관, 위원회, 전문업체, 목포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해를 통한 마인드 형성 유도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목포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체계,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역량 향상을 유도
-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경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목포시의 경관계획을 소개함으로써 심의 및 자문이 목포시 경관 미래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
- 옥외광고물중사자·시공관련중사자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관교육을 실시
-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
-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마인드 확산

3) 홍보측면

- 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인쇄하여 책자로 배포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목포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제도, 경관정책에 대한 홍보 및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시민의견 제안 등을 운영
- 학회, 전문잡지사 등 단체와의 광고협력을 통해 목포시의 경관계획을 소개

4) 법/제도 측면

- 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천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경관 관련 기타 조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운영
-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천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상에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법적인 근거를 확보
-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경관 관련 기타 조례는 경관계획과 연동시켜 정기적으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용

5) 보완/개선 측면

- 경관 가이드라인은 제작·시공 기술의 발전 및 신소재의 개발 등과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영역별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선
- 경관계획은 5년을 주기로 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권장

2.2.2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영

- 경관형성의 기본 원칙과 방향 등을 담고 있고, 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사항만을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도적 지침임
- 사업시행자는 건축 및 각종 개발 행위, 개발사업 전에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경관을 배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함

■ 경관가이드라인 확인

-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설계 시 해당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관관리 구역과 사업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의 종류를 파악

■ 경관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시설물, 공간 계획

- 설계 시 조사 및 구상 단계부터 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축물, 시설물, 공간 계획 체크리스트 작성
-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경관가이드라인 안에 항목별 표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작성

▣ 주무부서 사전협의(사전협의 대상일 경우)

-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 사전협의 대상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그 외 지역 중 심의대상

▣ 경관심의 · 자문(체크리스트 제출)

- 경관심의 또는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체크리스트를 제출

▣ 계획 · 설계 및 공사

- 경관심의 · 자문을 통과한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은 계획 · 설계 및 공사 시행

2.2.3 관리운영방안

▣ 경관관리방안(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행위의 제한 내용 외에 경관적인 배려를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운영함
- 경관지구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성함(경관지구 경관가이드라인 참조)
- 지구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본 계획의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을 함께 준용함

2.2.4 경관지구 가이드라인

1 자연경관지구 가이드라인

1) 자연경관지구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배치	1 자연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필수	권장	평가
	▪ 녹지축 및 주변 축에 접한 건축물은 녹지축 및 해안 축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	✓		
	▪ 인접 건물과의 인동간격을 확보		✓	
	▪ 해안에 접하는 경우 건물의 방향이 해안을 향하도록 배치		✓	
규모	2 자연자원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	필수	권장	평가
	▪ 자연자원에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지양		✓	
	▪ 가급적 분동, 세장형 등 충분한 디자인적 배려를 통해 압박감 경감	✓		
높이	3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필수	권장	평가
	▪ 녹지 및 해안과 조화롭고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 지나치게 균등하거나 돌출되는 건축물을 지양		✓	
형태	4 자연자원과의 시각적 조화 도모	필수	권장	평가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 노출 금지	✓		
	▪ 자연자원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추구		✓	
외관	5 녹지 및 해안과 조화될 수 있는 외관 형성	필수	권장	평가
	▪ 자연자원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지나친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 제한		✓	
	▪ 해안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안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재질 사용 권장		✓	
메모란				

2) 자연경관지구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인접하는 공지와 연속성을 고려	필수	권장	평가
	▪ 주변의 공원, 녹지와의 연계고려		✓	
	▪ 대상지와 인접하여 공지 및 녹지가 있는 경우 외부공간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가급적 연속하여 조성		✓	
	▪ 인접한 외부공간 및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2	자연자원 방향으로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개방감 도모	필수	권장	평가
	▪ 녹지축과 해안축이 교차하는 자연경관 거점 주변의 오픈스페이스는 면적으로 녹지를 확보		✓	
3	오픈스페이스의 녹화를 통해 녹시율 증대	필수	권장	평가
	▪ 기존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상 또는 벽면 녹화 조정 권장		✓	
	▪ 역사적 수종을 우선적으로 검토		✓	
	▪ 녹지 및 투수면적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임	✓		
4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지양	필수	권장	평가
	▪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연적 소재 및 주변 지역과 조화 도모		✓	
	▪ 해안가의 옹벽은 장기적으로 사면지형으로 복원을 고려	✓		
5	가로수 및 녹도 보강	필수	권장	평가
	▪ 중점관리구역 내 주요가로의 자연성 강조 및 녹지축 형성을 위해, 풍성한 가로수 식재 및 조경이 강화된 녹도 설치		✓	
6	해안공간으로의 접근성	필수	권장	평가
	▪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가지형 해안축 주변의 주차를 금지하고,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하천 진입부를 형성하여 인시성 향상		✓	
7	변화 있는 자연경관 형성	필수	권장	평가
	▪ 하천 별로 각 계절에 적합한 계절수를 균형 있게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변화 있는 자연경관 형성		✓	
8	자연자원 거점공간의 형성	필수	권장	평가
	▪ 녹지축과 해안축 교차부에 면적으로 자연경관거점을 형성하여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메모란				

3) 자연경관지구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자연자원 및 공간과의 조화 고려	필수	권장	평가
▪ 광고물의 규모 최소화, 단순화한 디자인 적용	✓		
▪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그 재료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려 제작할 것을 권장		✓	
▪ 채색이 필요할시 무채색계열 또는 자연자원의 색보다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 사용 권장		✓	
2 자연자원의 조망 고려	필수	권장	평가
▪ 광고물 면적 및 개수를 최소화하고, 통합광고물의 활용 권장		✓	
▪ 자연자원의 조망이 가능한 시각 축에서는 돌출 광고물 설치를 되도록 지양		✓	
▪ 부득이 돌출광고물 설치 시 저층부에 배경 면이 최소화된 소형돌출광고물 사용 권장		✓	
메모란			

4) 자연경관지구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공공시설물에 의한 공간적·시각적 점유 최소화	필수	권장	평가
▪ 국제규격을 준수하여 위화감 최소화, 체계적 시설물 계획 및 관리		✓	
▪ 국제적 통용 기호 및 기타 표현체계 적용, 외국인 정보 인지가 가능하도록 배려		✓	
2 자연자원의 조망 고려	필수	권장	평가
▪ 연계 가능한 기능을 최대한 통합	✓		
▪ 공공시설물은 최대한 자연자원 시각범위 밖으로 배치하여 조망공간 확보		✓	
3 공간의 자연성 강조	필수	권장	평가
▪ 친환경 자연재료 적극적 활용, 재료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식재대, 가로화분대 등은 녹화관련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	
4 자연자원 접근 보조시설 설치	필수	권장	평가
▪ 해안 소규모 데크길 등 자연자원 및 동·식물을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관찰할 수 있는 보조시설 설치를 권장		✓	
5 다양한 공간활동에 대응 가능한 환경 조성	필수	권장	평가
▪ 도심 해안공간 내에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선별하여 전략적 설치		✓	
6 장소성 강화를 위한 포인트 시설의 설치	필수	권장	평가
▪ 도심 해안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상징시설 등을 도입하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형태의 시설물 설치 지양		✓	
메모란			

6) 자연경관지구 야간 경관설계지침

<p>체크리스트 작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매력적인 야간산책로 조성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 강조: 산책로변 수목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조명 제어 및 수목조명을 통한 야간 자연자원 부각 - 수목의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야간조명에 의한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방식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성·기능성 확보: 시설물 활용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안전펜스, 벤치 등 산책로변 시설 조명 - 인공·자연요소 조화, 변화 있고 인상적인 조명공간 형성 - 시설물 야간인지를 통한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2 주요 교량 랜드마크 조명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인상적 조명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 사용 지양, 은은하고 편안한 연출 - 교량의 구조 및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조명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영향 최소화, 편의 및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자원 및 통행차량·보행자의 영향 및 편의·안전성을 고려한 조명 (Ex. 후드, 루버 등 설치) 			
메모란			

1) 시가지 및 특화경관지구 가이드라인

1) 시가지 · 특화경관지구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배치	1 주변경관과 조화성 고려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건축물들의 건축선 후퇴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 신축건축물의 전면도 인접한 건축물의 전면 건축선과 일치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신축건축물은 보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후퇴하여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지층에는 가로 친화적 상업용도 배치를 권장하고 은행, 증권 등 목적 지향적 용도의 배치를 자제할 것을 권장 		✓	
	2 주민 커뮤니티 시설 조성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 내 문화공간,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유도 		✓	
규모	3 주변건물과 조화로운 규모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건축물의 규모, 비례 등을 고려하여 가로 또는 가구차원에서의 조화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전면의 길이가 긴 경우 외관을 분절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건물이 입지할 경우 저층부를 형성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 		✓	
	4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필수	권장	평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진적 높이 변화에 의한 조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부가 형성되는 건축물은 저층부의 높이를 주변 건축물과 가급적 통일하여 가로의 연속성 확보 		✓	
	5 보행자를 고려하며, 가로의 특성을 반영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선절제형 건축물 금지 저층부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배려하는 형태 코너부 고층건축물의 지붕층은 시각적으로 특징을 가지도록 디자인 옥상부의 기계실 등은 건축물과 일체화 및 차폐 	✓		
외관	6 가로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외관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부는 다양한 재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밝고 경쾌한 느낌의 재질 사용 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저해 요소인 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이 입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지양 		✓	
	7 건축물 녹화 강화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 및 수변축 주변 건축물에 옥상녹화, 벽면녹화, 공개공지 녹화 적용 		✓	
메모란				

2) 시가지·특화경관지구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시각적 개방감 확보	필수	권장	평가
▪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	
▪ 주변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연계 및 연속하여 조성		✓	
▪ 신축건물은 건축선 후퇴를 통한 여유 공지 창출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2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 조성을 통하여 보행환경의 질 향상	필수	권장	평가
▪ 가로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오픈스페이스를 곳곳에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휴식공간 제공		✓	
▪ 협소한 기존 보도와 인접하여 동일한 높이로 공지 조성,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또는 차량 주차 금지		✓	
▪ 민간부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보도는 재료 및 형태를 일체화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	✓		
3 자투리공간 및 광장의 녹화 강화	필수	권장	평가
▪ 기존 이용성이 떨어지는 좁은 공간 및 삭막한 광장의 녹화를 통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		✓	
▪ 자투리 공간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서로 최대한 연계하여 조성		✓	
4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의 확충	필수	권장	평가
▪ 이웃 주민 간 교류·소통이 가능한 썬지공원 및 다양한 체육·문화공간 형성		✓	
5 주민주도 주차공간 확보 유도 및 자전거 주차장 조성	필수	권장	평가
▪ 주거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연계, 주차장 확보 유도		✓	
▪ 상업지역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확보		✓	
메모란			

3) 시가지·특화경관지구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질서 있는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	필수	권장	평가
	▪ 인접 광고물을 고려하여 정렬 되도록 설치	✓		
	▪ 일정한 규칙성과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	
	▪ 채색이 필요할시 무채색계열 또는 자연자원의 색보다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 사용 권장		✓	
2	자연자원의 조망 고려	필수	권장	평가
	▪ 차양을 활용한 광고물, 배너를 이용한 광고물, 소형 돌출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특화가로로서의 분위기 형성		✓	
메모란				

4) 시가지·특화경관지구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다양한 공간활동에 대응 가능한 환경 조성	필수	권장	평가
▪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선별하여 전략적 설치		✓	
▪ 연계 가능한 기능을 최대한 통합 설치하여 수량 최소화		✓	
▪ 과도한 광택의 금속재료 사용 지양, 채색 필요시 무채색 계열 또는 명도·채도가 낮은 색 사용		✓	
2 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활용	필수	권장	평가
▪ 특화 장소만의 CI 도입 권장		✓	
▪ 동일한 특화공간 내 설치되는 각 공공시설물의 전체적 디자인은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유도	✓		
3 시설물 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형태 적용	필수	권장	평가
▪ 오염 및 파손을 고려한 재료 및 형태를 적용	✓		
▪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 긴밀한 마감과 관리가 용이한 재료·표면마감 고려	✓		
▪ 시설물 파손 시 부분적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권장		✓	
▪ 광고지, 전단지 등의 시설물 부착 방지를 위한 디자인 권장		✓	
메모란			

5) 시가지·특화경관지구 색채 경관설계지침

<p>체크리스트 작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p>1 차양 등 다양한 경관요소의 색채 활용</p>			
필수	권장	평가	
	✓		
	✓		
<p>2 자연자원 차폐 시: 자연자원과의 조화·융화</p>			
필수	권장	평가	
	✓		
	✓		
	✓		
<p>메모란</p>			

6) 시가지·특화경관지구 야간 경관설계지침

<p>체크리스트 작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 X,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X: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메모란에 작성하도록 함 			
1 야경 랜드마크화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성·상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색온도 광원 설정, 미래적 이미지 조성 - 수직성을 강조 할 수 있는 조명방식의 적용 ▪ 도시 분위기 형성: 가변적 조명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사, 계절, 시간 등에 따른 조명연출의 변화 - 건축물 중·고층부 중심 			
2 특화공간: 표정이 있는 야간 보행공간	필수	권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의 확보: 다양한 조명대상의 연출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광고물조명 경관화: 주변 환경·보행자 고려(Ex. 간접조명 적극 활용) - 시설물 조명 보완: 가로시설물 등에 조명 도입 - 바닥조명: 주변 조명환경 고려, 필요부분에 제한적 도입 ▪ 매력요소의 형성: 오픈스페이스 야간상징공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에 분수, 야간 상징물 등을 활용, 특화구역 내 야간 매력요소로서 계획 			
<p>메모란</p>			

3.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1 경관조례 개정의 필요성

- 경관법이 제정(2007.5.)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위주로부터, 유도촉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관 보존과 경관형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과 기본경관계획, 이를 운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와 경관관리조례의 보완 필요성이 있음
- 개별 조례로서의 역할 만이 아닌 상호 연계성 확보와 기존 개별 조례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3.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경관지구별로 용도제한을 달리하고 있으나 건축물제한은 일괄적·부분적이어서 이를 수정·보완함. 즉, 현행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제한은 각 경관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건축물 높이 및 건폐율, 건축물 규모,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내용은 거의 동일(제4부 기본경관계획 참조)하며, 건축물형태와 색채 등의 디자인관련 부문이 결여되어 있음
-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기본방향 일부 수용
- 모든 종류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경관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도록 함. 아울러 경관지구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관지구 특정경관계획(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반영
- 장래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보다 10~20% 범위 내에서 축소(축소한 상태가 현행 서울특별시의 허용 정도로 함)하고 경관 개선정도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표6 - 2] 경관지구 규제 변경(안) 비교

구 분	기 존 (도시계획조례)	변 경 (안)
위 치	목포시 죽교동 및 유달동 유달산 일원	좌 동
면 적	176,852m ²	121,552m ²
세부지구 제한	높이 : 3층 또는 12m이하	좌 동
세부 지구 공통 제한	건폐율 20% 이하 (3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40% 이하)	좌 동
	건축물 규 모 - 1개동의 정면부 길이 30m미만 - 연면적 1,500m ² 초과금지 - 필요시 연면적 3,000m ² 까지 건축 가능	좌 동
	대지안의 조 경 - 주거지역 : 대지면적의 15% 이상 -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 이상	좌 동
	건축물 형 태	경관지구 가이드라인 수용
	건축물 색 채	경관지구 특정경관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수용

[표6 - 3] 시가지경관지구 규제 변경(안) 비교

구 분	도시계획조례 규제	변 경 (안)
위 치	-	목포역 일원
면 적	-	115,404m ²
세부지구 제한	높이 : 3층 또는 12m 이하	높이 : 2층 이하
세부 지구 공통 제한	건폐율 2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40% 이하)	좌 동
	건축물 규모 - 1개동의 정면부 길이 30m미만 - 연면적 1,500m ² 초과금지 - 필요시 연면적 3,000m ² 까지 건축가능	좌 동
	대지안의 조 경 - 대지면적 기준 - 주거지역은 15%이상 - 녹지지역은 40% 이상	좌 동
	건축물 형 태	- ○ 경관지구 특정경관계획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용 ○ 야간 경관조명 설치 필수 (목포시 야간경관계획 수용)
	건축물 색 채	- ○ 경관지구 특정경관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수용
	옥 외 광고물	- ○ 경관지구 특정경관계획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용

3.3 목포시 경관조례 개정

- 경관법 개정(2017.4.18.) 및 시행(2018.4.19.)과 경관법 시행령 개정(2018.2.27.) 및 시행(2018.3.27.)에 따른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충실히 반영하고 위임사항을 보강하여 정합성 있는 개정 제시
- 경관법의 위임내용과 경관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다룸. 즉, 경관법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지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한 사항

[표6 - 4] 경관조례 개정

제2장 경관계획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법 제7조, 영 제2조 규정 외 제안서 처리절차 세부사항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영 제3조 규정 외 경관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11조, 영 제5조 규정 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경관사업	제9조 경관사업 대상 등	법 제16조, 영 제8조 규정 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내용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 규정 외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경관사업 재정지원 및 감독	법 제18조, 영 제9조 규정 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의 세부사항
제5장 경관심의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표6 - 5] 경관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기존 경관조례(2017)	조례 개정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
○ 경관계획 등의 수립 - 경관계획의 수립 -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 의견청취	○ 경관계획 등의 수립 - 경관계획의 수립 -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경관사업의 내용 및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내용 및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경관사업 심의 할 때 고려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 협정의 내용, 협정서의 작성 및 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조정, 평가, 감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 협정의 내용, 협정서의 작성 및 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조정, 평가, 감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설치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 위원회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	
○ 도시경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쌈지공원 - 구조물, 기존 건축물의 경관 - 야간경관조명 - 공사용 가림막	○ 도시경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쌈지공원 - 구조물, 기존 건축물의 경관 - 야간경관조명 - 공사용 가림막
-	

[표6 - 6] 단계별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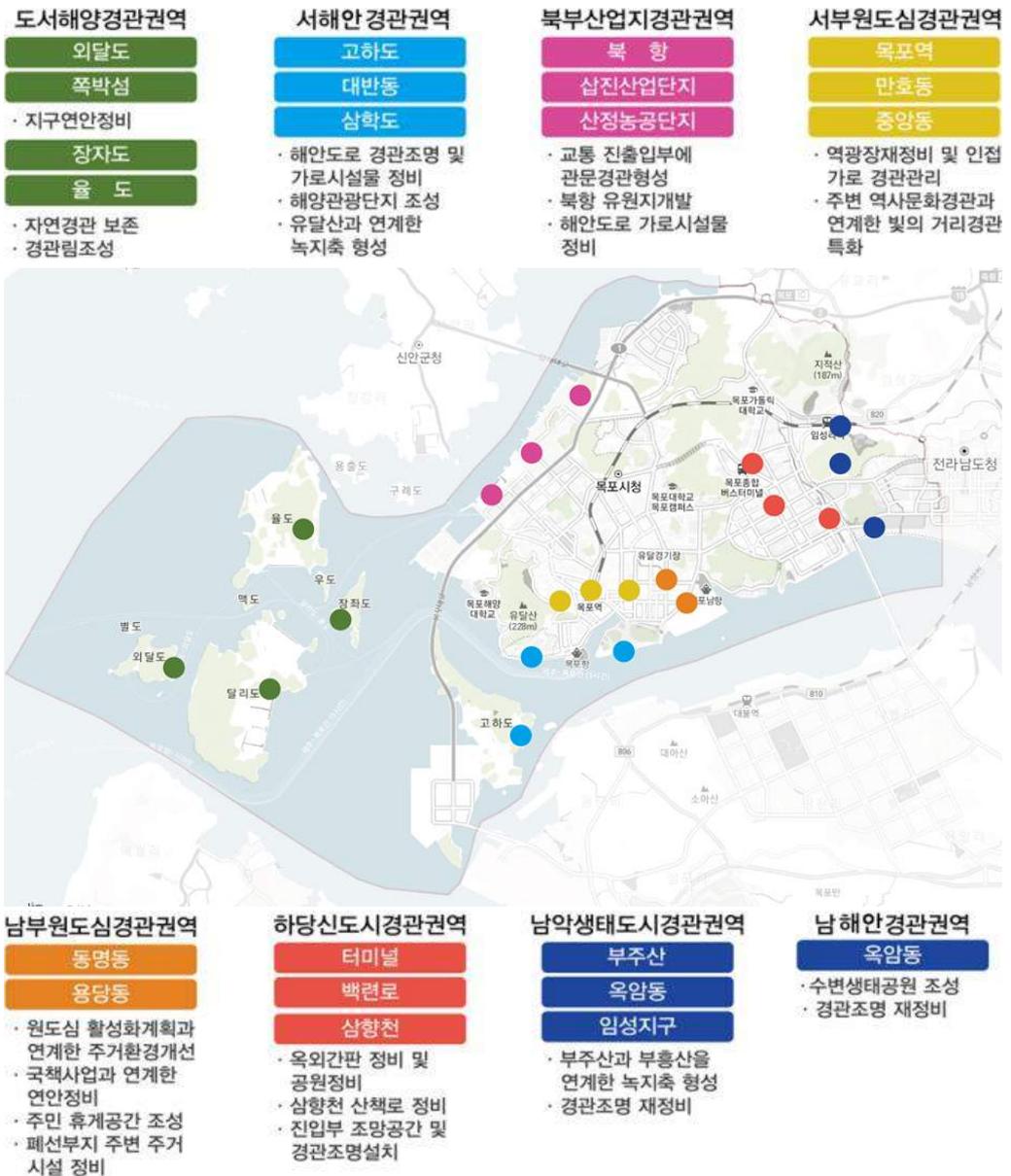
사 업 명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계획조례개정			●
경관조례개정			●

주) 단계구분은 1단계(2009. - '12), 2단계(2013. - '16), 3단계(2017. - '20)

4.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4.1 기본 방향

- 목포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설계지침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 가로계획, 건물의 색채, 담장형태, 스카이라인에 대한 설계지침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목포의 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의 각 단계가 상호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체계와 검증과정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 중심 기능,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각 경관권역의 경관지침과 연계하여 경관연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59호) 제3장 제16절(경관)에 의거하여 경관상세계획 수립



4.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 지침

- 목포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사업 위주로 설정되어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관계획에서 각 권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관개선을 유도함
- 각 권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과 경관 지침을 제시함

[표6 -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 지침

구 분	경관 지침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산림경관의 조망경관 보전 ▪ 친수공간 및 공원 등의 계획을 통한 완충공간 형성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해양문화 요소의 특징을 가미한 거리경관 형성 ▪ 관광시설과 주거지역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보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주거지 경관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 자연생태를 고려한 수변경관 디자인 및 인접공간과의 연계성 모색
하당신도심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차분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조성 ▪ 자연지형과 환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녹지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남악생태도시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 및 인접녹지의 보전을 통한 녹지경관 관리 ▪ 건축물의 경관적 디자인성을 제고하고 관련 요소에 대한 기준 마련
서해안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과 연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 형성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산림녹지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
남해안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공간 형성하여 경관 및 조망성 확보 ▪ 해양자원을 토대로 기반 및 상업시설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도서해양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원풍경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방향 도입 ▪ 주변 해안·산림 등 자연환경으로의 개방적인 경관 연출

4.3 관리운영방안

4.3.1 기본방향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경관적 요소 반영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 내용의 상세 정도를 나누고 있으며 필요시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목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관적

요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 경관계획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함

[표6 - 8]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경관적 요소 반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경관적 요소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 관리	기존 시가지 보존	신 시가지 개발	복합 구역	
용도지역·지구		○		○		
환경관리				○		
기반시설	○	○		○		
가고 및 획지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	○				
교통처리	○	○		○		
건축물의 용도, 간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	○	○		건축물형태 및 디자인/ 가로 경관적 요소/ 외부 공간 디자인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경관	○	○	○	○		

■ 경관상세계획 운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관상세계획 수준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과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한 경관협정 지원 및 관련 경관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경관심의 및 자문제도 운용

- 경관상세계획 대상의 지구단위계획은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통합심의로 대체 가능
- 계획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경관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반영함

5.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1 권역별 실행계획

5.1.1 북부산업지·서부원도심 경관권역

■ 목포 진입부장소성 부여

■ 기본방향

- 목포시 진입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경관조성
- 목포IC 고가도로 경관개선 벽면마감 압해대교 경관개선 신안, 목포 경계부
- 안내사인 목포대교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목포대교, 목포IC 내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 1개소, 벽면마감 1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다이나믹한 가로경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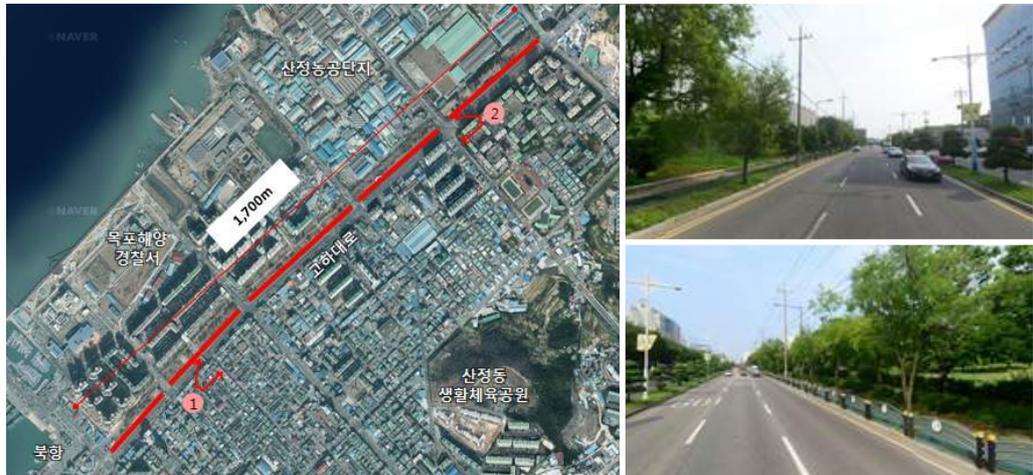
기본방향

-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진입가로 조성
- 국도1호선 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통한 상징가로 조성
-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통신주, 전신주 지중화 고려
- 하부관목 꽃피는 수종으로 교체

사업개요

- 사업범위 : 국도1호선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보행가로 조성 1,700M, 전신주 지중화, 앉음벽, 하부관목식재 3,000주
- 사업비 : 5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 랜드마크 요소 도입

■ 기본방향

- 노후단지 자투리 내에 지역을 고려한 특색있는 경관 조성 (소공원, 꽃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연산동 사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내용 : 꽃밭조성 500㎡, 초화류 12,500주
- 사업비 : 78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북향 회센터 일대 정비

기본방향

- 북향 회센터 주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 낮은 채도를 사용한 건축 입면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 무채색 계열의 건축색상 및 친환경적 재료 사용을 통한 주변 조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북향회어시장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간판정비 20EA
- 사 업 비 : 1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노후주거 환경개선

■ 기본방향

- 국도 1호선 주변으로 입지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경관개선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소재 및 색채를 활용한 골목길 미관처리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산정동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업내용 : 골목길 녹화 1,200m, 생태주차장 200㎡
- 사업비 : 25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북향-1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가로경관 정비

기본방향

- 가로경관 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통한 상징가로 조성
-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거리문화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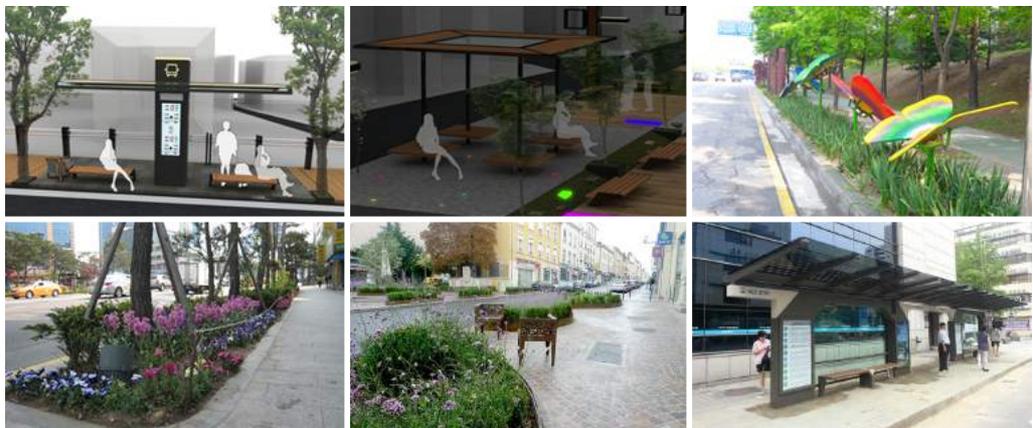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청호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보도포장 개선 길이 920m, 폭 3m 버스정류장, 휠스 교체, 꽃밭조성 460m
- 사업비 : 5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 근대역사문화의 거리-가로경관 특성화 사업

1) 4.8 독립만세운동길 조성사업

■ 기본방향

-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
- 목포만의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장소성이 강한 차별화 요소적용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만세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4.8 만세운동길 조성 360m x 5m,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
- 사업비 : 2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2)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 기본방향

- 역사문화자원을 연결 테마공간조성과 보행자의 안정성, 쾌적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경동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포장개선 4,200m², 입구조형물 등 조성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3) 개방형 문화유산 관리사업

■ 기본방향

- 역사문화자원 건축물을 보수하여 관광형 체험공간으로 조성
-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보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등록개별문화재 야간경관 조명 설치

■ 사업내용

- 사업범위 : 만호동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 사업내용 : 건축물보수 4동, 경관조명 17동 설치
- 사업비 : 7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4) 스마트안내 디자인 확충

■ 기본방향

- 새 정부 문화정책과 연계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근대문화유산 VR/AR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모바일 안내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만호동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 사업내용 : 키오스크 4EA, 안내판 등
- 사업비 : 1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유달산 훼손방지 및 해안선의 경관관리

■ 기본방향

- 유달산의 빈 공간지 활용하여 임시 꽃단지 조성(경관협정)
- 해안도로 주변 식재 보식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유달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사업내용 : 초화식재(유채, 해바라기), 관목 식재 2.3km
- 사 업 비 : 4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유달산 야간경관 정비

기본방향

- 유달산 생태 및 경관을 고려한 조명 정비
- 지역의 대표 경관자원 및 관광자원으로서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유달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사업내용 : 유달산 야간조명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 사업비 : 500백만원

현황



조성예시

- 조명의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현란함을 연출하는 것보다 한가지 색상으로 통일성 가진 연출을 하는 것을 권장
- 수목 및 조형물이나 시설물 유달산 내 특정경관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명 연출하되 보안등과 함께 산만한 조명이 효과 지양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최소 설치하되 낮은 휘도의 조명 유지하며 과도한 경관조명 설치 지양
- 케이블카 또는 해양권에서의 조망 고려하여 경관조명 연출
- 대상을 벗어나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 조명으로 인한 수림생태 교란 예방



폐가 지역 경관개선

■ 기본방향

- 폐가의 경관개선을 위해 지붕부 디자인그래픽조성
- 폐가를 철거하여 휴게쉼터를 계획하고 오염된 옹벽부의 재도장계획 수립
- 나대지를 활용한 휴게쉼터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유달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사업내용 : 휴게쉼터 5개소, 지붕 경관개선
- 사업비 : 2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목포역광장 재정비 및 인접가로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 목포역광장 재정비 및 인접가로의 경관관리
- 바닥포장 그래픽을 통한 공간 차별화 및 개방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목포역 1,140m²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광장조성 1,140m², 앞음벽 30m, 그늘목 식재, 바닥아트포장
- 사업비 : 2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목포역 도시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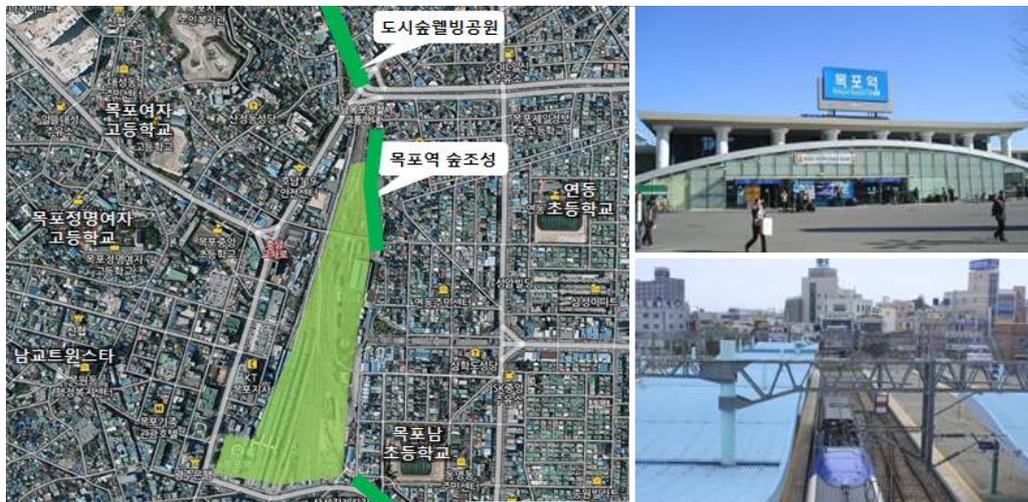
■ 기본방향

- 목포역 주변으로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축을 재생시키고 주변지역의 소통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등 공공복리 증진
-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웰빙공원과 삼학도 녹지축 연결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목포역 주변
- 사업기간 : 2028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시숲조성(144,168㎡),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 사업비 : 5,0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기본방향

- 골목길 범죄환경요소 제거 및 디자인을 통한 범죄심리 위축
- 범죄예방 디자인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커뮤니티 조성
- 연계사업 : 블랙박스CCTV설치, 범죄예방 사인물 제작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죽교동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내용 : CCTV 5개소, 담장 색채개선 100M
- 사업비 : 3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 해변 건축물 고도지침마련

■ 기본방향

-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인접구간에 대해 수변연접지역의 층수제한과 조망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177,090㎡
- 사업기간 : 2028년 ~ 2030년
- 사업내용 : 건축물 층수제한 (1,770동), 해안변 스카이라인 확보
- 사 업 비 : 1,77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5.1.2 남부원도심 · 하당신도시 경관권역

가로경관 정비 및 상징성부여

기본방향

-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진입가로 조성
-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영산로, 백련로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상징가로 조성,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벽면녹화, 띠녹지 조성(홍가시, 황금사철 등 8,000주 식재)
- 사업비 : 4,0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장미의 거리 일대 정비

■ 기본방향

- 쇠퇴해가는 장미의 거리 일원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미술관련 학생들과 연계하여 조형적 재미요소를 지닌 간판디자인 특화
-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 및 녹지의 정비를 통하여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며 개성이 넘치는 경관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신흥동 장미의 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정비, 노후시설 정비, 공원 및 녹지 정비
- 사업비 : 1,0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시립도서관일대 주민 휴게공원 조성

■ 기본방향

-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요소를 갖춘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목포시립도서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 사업내용 : 둘레길 400m, 화단조성 5,000㎡, 전망대 1개소
- 사업비 : 85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동명동 사거리 도로정비, 교통섬 조성

■ 기본방향

- 동명동 사거리 일대 교통섬 조성과 가로시설물 교체
- 도심지에 위치한 동명사거리를 개선하여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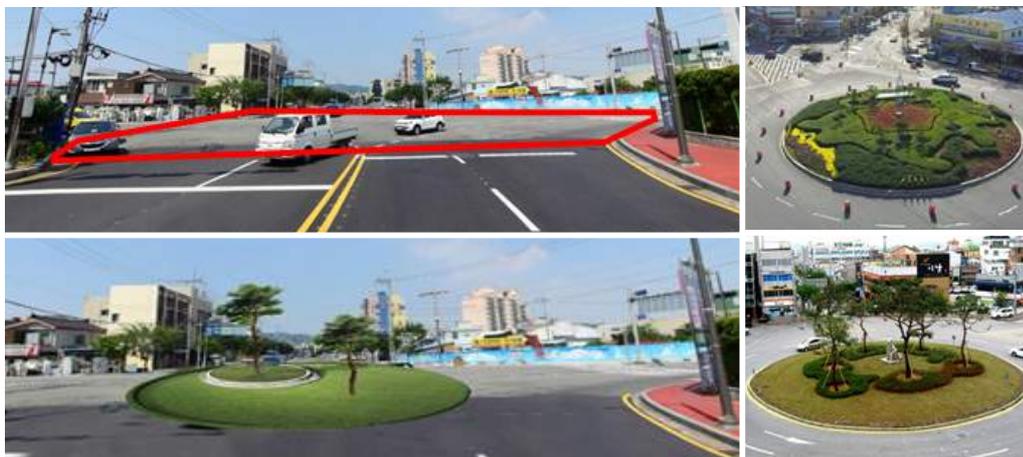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동명사거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7년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조성, 보도포장 개선, 벽천 분수 1식, 조형소나무 등
- 사업비 : 8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영산강하굿둑 구간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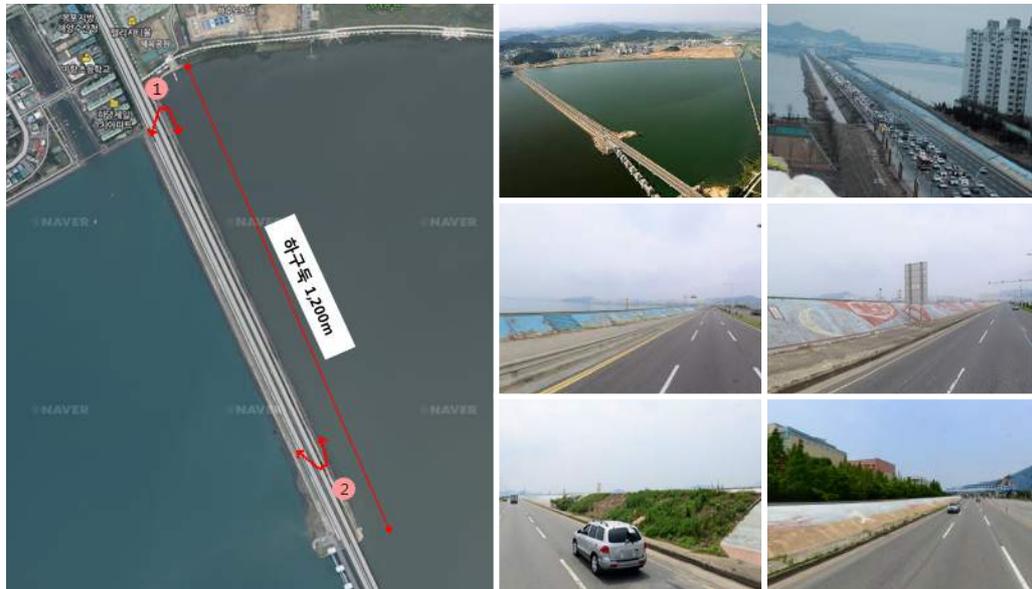
■ 기본방향

- 목포시 진입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색채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하굿둑 1.2km
- 사업기간 : 2019년 ~ 2027년
- 사업내용 : 하굿둑 벽화조성(페인팅+조형파타일)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진입부에 조망공간 및 경관조명 설치

■ 기본방향

- 목포 진입부 육교경관 설치와 수목식재 등으로 경관개선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목포진입부 450m
- 사업기간 : 2027년 ~ 2030년
- 사업내용 : 육교 80m, 버스터미널 고가 370m(목재, 파타일 마감/소나무 식재/경관조명 등)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버스터미널

석현동

목포해양박물관(옥상정원) ~ 갯바위 ~ 평화광장 연결

기본방향

- 해양박물관 주변의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아름다운 해변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평화광장 ~ 갯바위 ~ 목포해양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광루트 개발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해양박물관 ~ 평화광장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 2030년
- 사업내용 : 해양박물관 옥상공원화, 안내판 설치 50EA
- 사업비 : 1,0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옥상 정원화

안내판

5.1.3 남악생태도시 · 서해안 · 남해안 경관권역

■ 훼손된 사면복원을 통한 경관개선

■ 기본방향

- 목포 해양경관의 독창성 개성을 구현
- 쾌적하고 목포만이 가지는 해안경관 조성
- 해안도로 자체로서의 관광자원특화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해안변 일대 도로주변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개선 8km(가로시설-교통, 휴게, 편익, 포장, 화장실 등)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훼손된 사면복원을 통한 경관개선

■ 기본방향

- 배후산림을 고려한 도시미관 및 면학환경을 고려한 색채개선
- 배후산림에 순응 및 색채 분절을 통해 위압감 완화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옥암동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내용 : 벽면녹화 800m, 담쟁이, 송악(1,600주) 등 식재
- 사업비 : 8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부주산, 부흥산, 갯바위 등산로 정비, 조망누각 조성

■ 기본방향

- 시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 자연친화적이며 옛 정취를 살릴 수 있는 소재와 시설물 도입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부주산 1.4km, 부흥산 0.7km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 사업내용 : 정자 2개소, 아자매트설치 2,100m, 조망포인트 선정 등
- 사업비 : 761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시민친화형 녹지조성

■ 기본방향

-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주변 관광지 연계한 관광객 유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민의 건강개선 및 여가생활의 장소
- 휴게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휴식 및 체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옥암대학교 예정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시숲/체육공원조성(피크닉공원, 숲조성, 축구장, 야구장 등)
- 사업비 : 80,0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국제터미널~수협~구조선내화 워터프론트

■ 기본방향

- 원도심 지역에 문화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아름다운 해변경관과 어우러진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금화동 해안로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사업내용 : 해양공원 570m, 데크 4,000㎡, 휴게시설물 조성
- 사업비 : 8,500백만원

■ 위치



■ 조성예시



■ 해양레저 마리나 조성

■ 기본방향

-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 엑스포 등의 유치 기반조성
- 국민여가생활의 다양성과 해양레저 기회제공
- 해상컨벤션센터 조성으로 해양문화의 종합단지로 조성
- 목포만의 해양의 이미지 확립,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평화광장 수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 사업내용 : 해상컨벤션센터, 요트선착장, 기반시설, 경관시설 조성
- 사 업 비 : 60,0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5.1.4 도서해양 경관권역, 경관지구

■ 외달도 유원지 재정비

■ 기본방향

- 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섬경관 특성화 및 휴양·힐링 관광지로 개발
- 섬, 낙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연안 휴양 마을 조성
-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 조성
- 해수욕장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
- 섬경관 특성화를 위한 독창적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외달도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30년
- 사업내용 : 전망대 1개소, 둘레길 500m 조성, 휴게시설물 설치
- 사업비 : 4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선착장 기반시설 및 가로시설물 정비

■ 기본방향

- 섬의 진입부 건축물 외관 및 색채, 재질 개선을 통한 섬 경관 개선
- 국민휴양의 다양성 제공 및 요트산업 확대를 위한 정박선착장 경관개선 및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외달도, 달리도, 울도 선착장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인프라 정비, 경관특화 조성
- 사업비 : 1,5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 매력있는 섬관광 활성화

■ 기본방향

- 섬 특성화 창출하여 볼거리 제공 섬생태체험관광지 조성
- 자전거 하이킹 관광루트 개발, 자전거 도로 주변 가로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수목 식재
- 섬경관 특성화 위한 독창적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울도, 달리도 일원
- 사업기간 : 2028년 ~ 2030년
- 사업내용 : 섬특성화사업, 관광안내판 조성 50EA, 자전거도로 개설 5,900m
- 사업비 : 1,200백만원

■ 위치 및 현황



■ 조성예시



5.1.5 목포 전구역

주요간선도로 간판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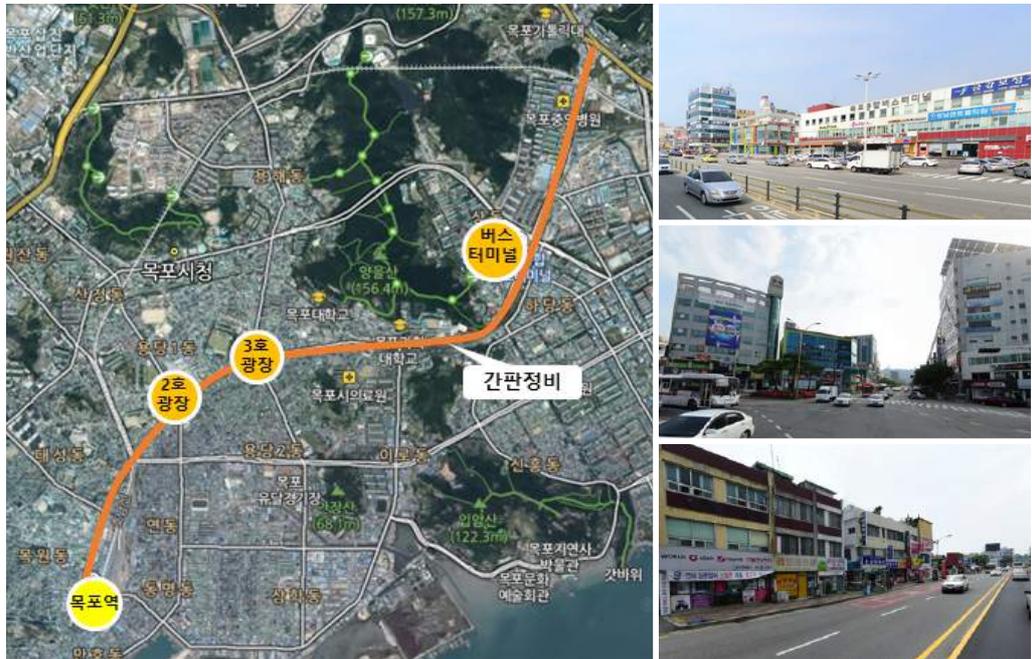
기본방향

- 목포시의 이미지 향상과 주요간선도로의 경관개선을 위한 간판정비
-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미관 제공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석현삼거리 ~ 목포역
- 사업기간 : 2021년 ~ 2030년
- 사업내용 : 주도로 간판정비(L=5.7km)
- 사업비 : 15,000백만원

위치 및 현황



조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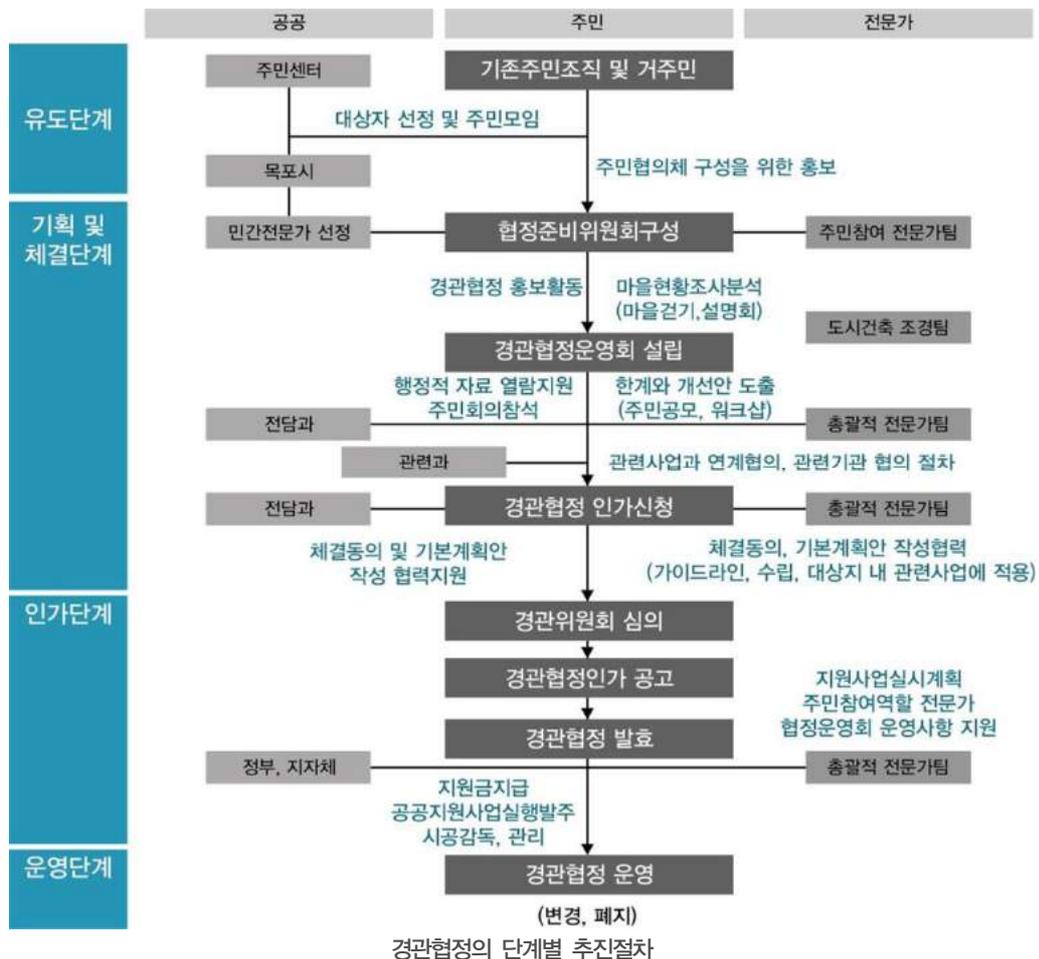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개념

6.1.1 목적

- 경관협정의 목적을 간단히 정의하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일정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에 따라 경관협정은 발효되며, 이후 실시되는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는 협정내용을 준수해야 함
- 주민들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조직하여 당해 지역의 경관협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경관의식을 고양시키고 경관관리 및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및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

6.1.2 추진절차



6.1.3 체결자

-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등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음

6.1.4 대상지역

- 목포시 전역을 경관협정 대상 지역으로 계획함
-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민관 협동형 경관사업 시행 지역을 우선적으로 체결함
- 실효성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 시범지역을 선정함

6.1.5 체결 우선순위

- 경관개선에 효과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경관협정 집행 및 운영 관리 노하우를 구축하도록 함
-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정비·관리가 원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체결함
-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유도·지원이 가능한 경관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함

6.1.6 체결사항

- 경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경관협정의 체결 사항을 검토함

[표6 - 9] 경관협정 체결 사항(참조:경관법 제19조)

구 분	내 용
건축물 외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입면, 높이, 2층부 처리, 사선제한, 재질, 색채, 창문 및 출입문의 위치·크기·재질·색상, 지붕 형태, 옥외광고물의 형태·색상·재질·위치 등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설비의 집약화 및 은폐,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등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대지 내 조경, 녹지 조성 등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토지형질 변경, 획지의 규모, 합필, 건축 한계선 등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주변 마을 등 역사문화경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단, 이들 사항 중 일부는 앞서 언급한 건축물 규정 등과 중복 규정 가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축의 용도,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의 관리 및 조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2 관리 및 운영방안

-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경관협정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구분함
- 경관협정 후 반드시 주민교육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경관협정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임으로 다양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되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의 연계를 도모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함

6.2.1 공공사업과 연계한 경관협정의 개발/유도

-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연계를 도모하여 경관협정의 효과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경관협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함
- 각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기존 거주자 외에 새롭게 외부인이 유입되는 경우, 일관성 있는 지역경관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1인 협정제도를 운영함

[표6 - 10] 경관협정 관리 및 운영방안

구 분	항 목	선정 기준
시가지 경관	경관문화 형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역할 부여 ▪ 상업시설 위주로 협정 추진
	동별 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로 조망 가로, 녹화 거리, 역사문화탐방로 등 상업시설이나 가로환경 개선위주의 사업 진행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도시별 특화 발전추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담장 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CCTV 설치
농어촌 (해변) 경관	농어촌(수변) 마을종합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
	농어촌정주기반 확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주도형 하향식 사업
	전원(해변)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호 규모의 마을 조성 사업으로 민간 또는 공공의 양방향 사업주도가 가능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한계농지를 활용한 환경 정비
역사 문화 경관	전통민속 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마을 유지보호를 위해 민속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

6.2.2 지원 방안

- 경관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
-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규제)로 구분하여 항목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등 법적 근거 등의 필요조건을 제시함

[표6 - 11] 경관협정 지원방안

구분	항목	내용	비고
보상적 인센티브	보조금	▪ 협정 내용에 맞게 건물, 시설물 등을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세제지원	▪ 협정 체결 시 세제감면	▪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 협정 체결 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 완화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가능
유도적 인센티브	공공사업	▪ 협정 체결 시 경관 관련 공공사업 우선 배정	▪ 공공사업의 내용, 시기, 예산 등 배정
	행정적 지원	▪ 관주도형 하향식 사업	▪ 주민모임, 행정절차 지원 및 간소화
	기술적 지원	▪ 경관사업 시행 시 공공에서 관련 자료 제공 및 기술 자문 등 지원	▪ 주민 의견 반영 및 자문단 구성 지원
마이너스 인센티브 (규제)	보조금	▪ 협정 불이행 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 환수	▪ 보조금 지급 시 단서조항 필요
	세제지원	▪ 협정 불이행 시 세제 감면 조건 소멸	▪ 협정 시 단서조항 필요
	공공사업	▪ 협정 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우선 제공한 공공사업의 사업비 일부 협정 위반자가 부담	▪ 사업 우선 배정 시 단서조항 필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 협정 불이행 시 추가로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에 대한 비용 계산 후 환수	▪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단, 환수금액은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보다 커야 함

6.2.3 추진 개념

- 시범사업의 추진전략은 통합, 협력, 지속을 추진 전략으로 함
- 도시경관과 관련된 전 분야의 통합적인 디자인에 연관된 각 주체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디자인을 수정·보완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도록 함

6.2.4 추진 시 관계 구도

- 경관협정은 그 취지상 주민들이 스스로 내용을 작성하고 체결해야 하지만,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따라서 목포시 또는 동과 전문가 집단이 경관협정 준비 위원회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6.3 대상지 제안

- 목포시에 적합한 경관협정 체계 구축 및 지역단위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 대상지를 제안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

경관협정 대상지

[표6 - 12] 경관협정 대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북부 산업지	▪ 북항화센터 일대 정비	▪ 외장재, 색채 외관형태 통일 ▪ 옥외광고물 개선비용 지원
	▪ 노후주거 환경개선	▪ 대지내 주차공간 확보 ▪ 바닥포장 개선(잔디블럭, 투수성 포장) ▪ 외부적치물 관리 ▪ 주변 녹지공간 조성, 주차공간 확보 비용 지원 바닥 포장 개선비용 지원
서부 원도심	▪ 유달산 반공한지 임시 꽃단지 조성	▪ 정원, 화단조성(조경식재)
	▪ 폐가지역 경관협정	▪ 담장녹화 ▪ 정원, 화단 조성 ▪ 주변 녹지공간 조성
	▪ 해변건축물 고도지침 마련	▪ 지붕, 차양 형태 통일 ▪ 경사지붕 권장 ▪ 1층부 차양 설치 ▪ 협정 내용에 맞게 건물을 개보수 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목원동 지붕경관관리	▪ 지붕재, 색채 외관형태
남부 원도심	▪ 시립도서관일대 주민 휴게공원 조성	▪ 주변 녹지공간 조성 ▪ 정원, 화단 비용 지원
하당 신도심	▪ 옥외간판정비, 공원정비	▪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비용 지원
	▪ 건축물 고도제한을 통한 경관관리	▪ 건축물 고도제한 통한 통경 보전
전체사업	▪ 주요간선도로 간판정비	▪ 옥외광고물 개선비용 지원

7.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1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7.1.1 경관심의 대상

[표6 - 13] 경관심의 대상

구 분	경관심의 대상	비 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시행령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목포시 경관조례 제29조

[표6 - 14] 경관심의 대상 세부사항

구 분	경관심의 대상	심의시기	비 고
사회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500억 이상 -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인 사업 ▪ 하천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300억 이상 -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 사회기반시설 사업(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기본설계(안) 확정 전	경관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목포시 경관조례 제24조

구 분	경관심의 대상	심의시기	비 고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3만㎡이상, 비도시지역 30만㎡이상 개발사업 ▪ 마을정비구역 내 생활환경정비사업 20만㎡이상 1. 도시의 개발 :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물류단지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단지조성사업 3.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친수구역 조성사업/새만금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 항만재개발사업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100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의 면적이 10/10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구역지정·사업계획승인 전	경관법 제27조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은 제외 ▪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 및 공작물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 지정) ▪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생략 가능 	건축인·허가 전	목포시 경관조례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 정함("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상 20층 이상인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 정함 		목포경관 기본계획

7.1.2 경관자문 대상

[표6 - 15] 경관자문 대상

구 분	경관자문 대상	자문시기	비 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본설계(안) 확정 전	경관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 4.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5,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 6.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 지침에서 심의·자문대상으로 정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본설계(안) 확정 전 및 건축 인·허가 전	목포시 경관조례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간판정비사업 ▪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야간경관사업 		목포경관 기본계획

7.2 경관위원회

7.2.1 기본 방향

- 시 경관위원회의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함(경관조례에 반영)
- 개별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함
- 도시, 건축, 경관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적극 운영함
- 경관심의 절차 합리화를 위한 '사전검토 제도' 를 활성화함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목포시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7.2.2 구성 및 운영

[표6 - 16]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경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포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목포시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자문할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회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 이상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경관위원회 기능수행 가능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위원회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그 회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8. 투자예산계획 및 단계별 사업계획

8.1 기본방향

- 경관 활성화를 위한 경관사업계획은 경관효과 증진, 경관개선을 위한 장기인프라 구축, 목포시의 경관정체성 확립 등으로 구성
-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 단기사업, 중장기사업으로 나누어 실행
- 경관사업은 다음의 세가지 사업순위 고려기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사업의 단계는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시 기본계획의 개발계획 및 사업단계 등을 고려하여 도출
- 단기 사업으로 목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관련 용역을 포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수립 후 시행

단기적 경관사업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경관파괴가 예상되거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 가시성이 높은 체감형 사업 및 시민 홍보효과가 뛰어난 사업 ▪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실행을 앞둔 사업 ▪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주체가 단일할 경우
중기적 경관사업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보완이나 사업추진에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 ▪ 경관협정이나 지역 주민에 의해 발의된 사항 등 계획단계부터 협의가 필요한 사업 ▪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주체가 복합적인 경우
장기적 경관사업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목포시 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 실행여건과 맞추어 주민의식의 성숙이 기반되어야 하는 사업 ▪ 즉각적 사업시행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경관사업 ▪ 사업수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

8.2 예산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 경관사업은 국비(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 시비 비중이 높은 사업과 시민 및 기업투자 유도가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자원 확보 전략 구축
- 사업별로 용역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은 목포시에서 우선적으로 경관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확보, 사업항목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충하여 사업을 시행
- 국비(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는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목포시만의 자연 및 인문자원의 특징을 부각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예산 지원 사업에 제안을 하고 심사를 통해 국비(도비)를 지원받는 방식

- 시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업, 도로변 경관정비사업, 자연경관 보존에 관련된 사업 등 공공부문 및 복지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경우 국·도비의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공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시민, 학생, 단체 등의 봉사 참여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식 고려
- 시민 및 기업의 투자 유도가 가능한 사업은 가로조성사업, 관광·유원지 경관형성 사업, 테마 탐방로 정비사업 등 경관성 향상이 사유재산 가치의 향상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며, 초기의 시비 투자가 이루어진 후 시민 및 민간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주민참여사업 등은 초기사업진행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추후 참여 주체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
-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토록 하며 재원투자를 유도하거나 경관사업을 도시정비사업 일부에 속하도록 하여 시행
- 대표적인 경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와 함께 국도비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며, 시민 및 기업의 투자유도 기능사업(경관협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여부에 따라 시비보조, 세제감면혜택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8.2.1 경관사업 자원조달 보조

-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연계, 공공디자인 및 중점사업 정책과 전라남도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여 경관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마련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정책관/건축문화경관과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재생 등
-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책 총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건축디자인 개선대책 등
- 건축문화 정책개발, 한옥진흥법 제정 추진 등
- 건축기본법이 공간 디자인에 대한 통합조정, 관리의 틀을 구축하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예술정책관/시각예술디자인과

-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공공 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디자인 기본법 제정, 디자인 정책기본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산업정책관/엔지니어링디자인과

-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환경디자인 및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추진, 제도 개선
- 디자인산업진흥 사업, 서비스디자인, 차세대디자인
-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선도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다른 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과제에 공공 디자인을 접목하는 기반 역할 담당

■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생활공간정책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 옥외광고 제도 운영 및 옥외광고센터 운영지원, 각 지방의 행정단체들이 정책을 펼치고 지역을 꾸려나가는 데 지원을 하는 업무 담당
- 옥외광고정비사업을 비롯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경제 살리기 같은 공공디자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사업 진행
- 직접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보다 공공디자인이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전국 지자체의 디자인관련 부서,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지원

구 분	경관사업 연계	비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선도 및 일반지역 공모사업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개발사업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간판문화 개선사업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환경디자인사업 	
기획재정부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 시범사업 (국민삶의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디자인 	

8.3 투자예산계획

■ 투자예산 총괄

구 분	사 업 비 (백만원)				구성비 (%)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2019~2022)	중기 (2023~2027)	장기 (2028~2030)	
총 계	263,871	28,192	117,326	118,353	100.0
북부산업지 경관권역	1,947	919	950	78	0.7
서부원도심 경관권역	17,068	8,268	3,740	5,060	6.5
남부원도심 경관권역	6,300	1,750	2,350	2,200	2.4
하당신도심 경관권역	6,305	1,305	1,800	3,200	2.4
남약생태도시 경관권역	3,381	1,960	626	795	1.3
서해안 경관권역	10,930	2,150	4,280	4,500	4.1
남해안 경관권역	140,100	100	70,000	70,000	53.1
도서해양 경관권역	20,240	540	9,530	10,170	7.7
경관지구	28,800	10,200	10,150	8,450	10.9
시가지경관지구	3,800	1,000	1,900	900	1.4
전지역 사업	25,000	-	12,000	13,000	9.5
기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300	300	-	-	-

■ 세부투자사업

- 비교란의 수치는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임
(1:매우시급, 2:시급, 3:시행, 4:가능한 시행)

(단위: 백만원)

구 분		위치 및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총 계		-	263,871	
북부 산업지 경관 권역	항만시설 공업지경관의 가이드라인 마련	삼진, 산정 농공단지 일대	45	1
	목포 진입부 장소성 부여	서해안고속도로 상징 이미지부각	300	2
	다이내믹한 가로경관 조성	장자동 일대	500	2
	랜드마크 요소 도입	북향동 일대, 빛 적극 활용	78	4
	해양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북향동 일대	34	2
	북향 회 센터 일대 정비	북향동 일대	100	1
	노후주거 환경 개선	죽교동 일대	250	2
	북향-1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가로경관 정비	북향-1호광장 가로경관 정비	500	3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유달산 서면 일대	140	2
소 계			1,947	

(단위: 백만원)

구 분		위치 및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서부 원도심 경관 권역	유달산 훼손방지 및 해안선의 경관관리	충무동 수변 일대	40	2
	유달산 경관조명 정비 및 설치	유달산 일대	500	2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가로경관 특성화사업	만호동 유달동 일원	1,400	1
	폐가지역 경관개선	북교동 일대	200	2
	목포역 광장 재정비 및 인접가로 경관관리	호남동 일대, 육교철거, 간판정비	200	1
	범죄예방디자인	죽교동, 서산동	300	2
	목포역 도시숲 조성	호남동	5,000	4
	해변건축물 고도지침마련	서산동 일대	1,770	2
	목원동 지붕경관관리	목원동 일대	3,000	2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만호지구 일대	1,500	2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	근대역사관 일대	500	1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사업	가톨릭 목포성지 일대	2,658	1
	소 계			17,068
남부 원도심 경관 권역	가로경관 정비 및 상징성 부여	가로경관 정비	4,000	3
	시립도서관일대 주민 휴게공원 조성	용해동	850	3
	동명동 사거리 도로정비, 교통섬 조성	동명동 일대	800	3
	삼학도 공원 경관저해요소의 제거	산정동	200	2
	남향을 레저중심향으로 개발	남향 일대	450	2
소 계			6,300	
하당 신도심 경관 권역	상징적 녹지가로축 및 풍경축 조성	녹지 풍경축 조성	2,500	3
	옥외간판 정비, 공원 정비	신흥동 일대	1,000	3
	건축물 고도 제한을 통한 경관관리	부흥동 일대	150	2
	영산강하구둑 구간 경관개선	영산강하구둑 일원	800	2
	진입부에 조망공간 및 경관조명설치	영산강하구둑 진입부 일대	800	3
	목포해양박물관~갯바위~평화광장 연결	상동 일대	1,000	3
	터미널 앞 국도 1호선 가로경관 정비	상동 일대	55	3
소 계			6,305	
남악 생태 도시 경관 권역	훼손된 사면복원을 통한 경관개선	옥암동, 부흥동 일대	800	3
	부주산 등산로 정비, 조망누각 조성	부주산 일대	325	3
	부흥산 등산로 정비, 조망누각 조성	부흥산 일대	336	3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옥암경관숲 일대	930	3
	도청 진입로 도로 가로시설 가이드라인	옥암동 중심도로 일대	140	2
	만남의 폭포 공원화 및 경관조명 재정비	부흥동 일대	280	3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흥동 수변 일대	220	4
	수변 벨트형 녹지축 조성	부흥동 수변 일대	350	4
소 계			3,381	

(단위: 백만원)

구 분		위치 및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서해안 경관 권역	국제터미널~수협~구조선내화위터프론트	내항 일대	8,500	2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	고하도 일대	250	2
	신항 진입부 정비	고하도 일대	280	3
	유달산~고하도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고하도 일대	450	2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	대반동 해안도로 일대	400	2
	목포 힐링랜드 조성사업	고하도 일대	1,050	2
	소 계			10,930
남해안 경관 권역	갯바위조망누각 조성	갯바위 일대	100	2
	해양레저 마리나 조성	평화광장 수변 일대	60,000	3
	스포츠단지 및 녹지 조성	육암동, 부흥동 일대	80,000	4
	소 계			140,100
도서 해양 경관 권역	외달도 유원지 재정비	달동, 외달도 일대	400	3
	선착장 기반시설 및 가로시설물 정비	선착장 및 가로변 일대	1,500	3
	매력있는 섬관광 활성화	달리도, 울도 일대	1,200	3
	청정 도서지역 해수욕장의 보존 및 정비	울도, 외달도 일대	100	2
	마을 주변 환경정비	달동, 달리도 일대	140	3
	눌도 해안선 주변 경관림 조성	울도동 일대	1,400	3
	달리도 해안선 주변 경관림 조성	달동 일대	2,000	3
	소 계			20,240
경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	3
	진입부 및 유달산순환로 가로정비사업		2,500	3
	수변정비사업		15,000	3
	야간경관사업		3,000	3
	경관녹화사업		5,300	3
	상가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	3
	소 계			28,800
시가지 경관 지구	스트리트 퍼니처 정비		1,800	3
	야간경관사업		2,000	3
	소 계			3,800
전체 사업	주요간선도로 간판정비	석한삼거리 ~ 목포역	15,000	4
	해안 공공시설물 및 포장 정비	해안변도로 일대	10,000	2
	소 계			25,000
기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300	

8.4 단계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1단계 (2019-2022)	2단계 (2023-2027)	3단계 (2028-2030)
총 계		263,871	28,192	117,326	118,353
북부 산업지 경관 권역	항만시설 공업지경관의 가이드라인 마련	45	45		
	목포 진입부 장소성 부여	300		300	
	다이내믹한 가로경관 조성	500	500		
	랜드마크 요소 도입	78			78
	해양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34	34		
	북항 회 센터 일대 정비	100	100		
	노후주거 환경 개선	250	100	150	
	북항-1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가로경관 정비	500		500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140	140		
소 계	1,947	919	950	78	
서부 원도심 경관 권역	유달산 훼손방지 및 해안선의 경관관리	40	40		
	유달산 경관조명 정비 및 설치	500		500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가로경관 특성화사업	1,400		1,400	
	폐가지역 경관개선	200	70	70	60
	목포역 광장 재정비 및 인접가로의 경관관리	200	200		
	범죄예방디자인	300	300		
	목포역 도시숲 조성	5,000			5,000
	해변건축물 고도지침마련	1,770		1,770	
	목원동 지붕경관관리	3,000	3,000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1,500	1,500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	500	500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사업	2,658	2,658			
소 계	17,068	8,268	3,740	5,060	
남부 원도심 경관 권역	가로경관 정비 및 상징성 부여	4,000	1,250	1,250	1,500
	시립도서관일대 주민 휴게공원 조성	850		400	450
	동명동 사거리 도로정비, 교통섬 조성	800	400	400	
	삼학도 공원 경관저해요소의 제거	200	100	100	
	남항을 레저중심항으로 개발	450		200	250
소 계	6,300	1,750	2,350	2,200	
하당 신도심 경관 권역	상징적 녹지가로축 및 풍경축 조성	2,500	500	1,000	1,000
	옥외간판 정비, 공원 정비	1,000	200	400	400
	건축물 고도 제한을 통한 경관관리	150	150		
	영산강하구둑 구간 경관개선	800	400	400	
	진입부에 조망공간 및 경관조명설치	800			800
	목포해양박물관~갯바위~평화광장 연결	1,000			1,000
	터미널 앞 국도 1호선 가로경관 정비	55	55		
	소 계	6,305	1,305	1,800	3,2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1단계 (2019-2022)	2단계 (2023-2027)	3단계 (2028-2030)
남악 생태 경관 권역	훼손된 사면복원을 통한 경관개선	800	800		
	부주산 등산로 정비, 조망누각 조성	325			325
	부흥산 등산로 정비, 조망누각 조성	336		336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930	930		
	도청 진입로 도로 가로시설 가이드라인	140	140		
	만남의 폭포 공원화 및 경관조명 재정비	280	90	90	100
	수변생태공원 조성	220			220
	수변 벨트형 녹지축 조성	350		200	150
소 계	3,381	1,960	626	795	
서해안 경관 권역	국제터미널~수협~구조선내화워터프론트	8,500		4,000	4,500
	고하도 이층무공 유적 정비	250	250		
	신항 진입부 정비	280		280	
	유달산~고하도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450	450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	400	400		
	목포 힐링랜드 조성사업	1,050	1,050		
소 계	10,930	2,150	4,280	4,500	
남해안 경관 권역	갯바위조망누각 조성	100	100		
	해양레저 마리나 조성	60,000		40,000	20,000
	스포츠단지 및 녹지 조성	80,000		30,000	50,000
소 계	140,100	100	70,000	70,000	
도시 해양 경관 권역	외달도 유원지 재정비	400	40	360	
	선착장 기반시설 및 가로시설물 정비	15,000		7,000	8,000
	매력있는 섬관광 활성화	1,200		600	600
	청정 도서지역 해수욕장의 보존 및 정비	100	100		
	마을 주변 환경정비	140		70	70
	눌도 해안선 주변 경관림 조성	1,400	200	600	600
	달리도 해안선 주변 경관림 조성	2,000	200	900	900
소 계	20,240	540	9,530	10,170	
경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	700	650	650
	진입부 및 유달산순환로 가로정비사업	2,500	700	900	900
	수변정비사업	15,000	5,000	5,000	5,000
	야간경관사업	3,000	1,500	1,500	
	경관녹화사업	5,300	1,900	1,800	1,600
	상기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	400	300	300
소 계	28,800	10,200	10,150	8,450	
시가지 경관 지구	스트리트 퍼니처 정비	1,800		900	900
	야간경관사업	2,000	1,000	1,000	
	소 계	3,800	1,000	1,900	900
전체 사업	주요간선도로 간판정비	15,000		7,000	8,000
	해안 공공시설물 및 포장 정비	10,000		5,000	5,000
	소 계	25,000		12,000	13,000
기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300	300		

9.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9.1 경관행정조직

9.1.1 현재 목포시 경관행정조직 운영시스템

- 현재 목포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디자인팀으로 도시계획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경관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목포시는 경관팀 구성인원을 도시, 건축,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도시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부서간의 조정 역할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행정조직의 효율성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축함
- 개정된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의 관리 및 경관행정 업무량 증가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9.1.2 경관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제시

- 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정책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체계와 더불어 의회와 시민을 축으로 하는 실행조직을 완성함

■ 경관관리 실행조직의 역할

실행조직	역 할	주요 업무
행정	▪ 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도시경관 관리시스템 도입
	▪ 경관사업추진	▪ 가로경관 정비 및 개선사업 ▪ 지역 녹화 관련 사업 ▪ 야간경관형성 및 정비사업 ▪ 역사·문화 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
	▪ 경관정책 개발	▪ 경관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업
	▪ 주민참여유도	▪ 경관형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 개발 ▪ 경관형성에 기여한 활동단체 및 개인 표창
의회	▪ 경관조례 개정	▪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조례 개정
	▪ 경관예산반영	▪ 경관사업 예산 수립
시민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 사업계획의 수립 ▪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 경관협정제정	▪ 경관협정서 작성 ▪ 경관협정서 관리
	▪ 경관재단 설립	▪ 경관사업재원마련
	▪ 경관사업 참여	▪ 마을가꾸기 운동 ▪ 특화거리 조성운동 ▪ 공원가꾸기 운동

9.2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도입

9.2.1 목적

- 본 경관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협정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계획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경관계획의 실현 및 경관사업·경관협정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공적인 경관계획의 실현 가능
- 매년 정기적으로 경관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일련의 활동
- 부진 사업·협정 등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경관개선 효과가 우수한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취동기를 제고

9.2.2 모니터링 추진 방안

■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은 목포시 경관부서에서 담당함
-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시 담당부서는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과정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권고함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활용

1) 동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각 동 담당부서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검토의견 및 개선·보완사항을 작성하여 시 경관 담당부서에 제출함

2) 종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시 담당부서는 매년 각 동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
- 종합결과보고서는 각 동별 모니터링 보고자료, 모니터링 후 조치결과, 종합의견, 목포시의 정책개선 사항 등을 포함

3)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활용

- 동별 모니터링과 종합 모니터링 결과는 추진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함
- 향후 경관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평가 추진방안

1) 평가 체계

- 경관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목표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지표의 측정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함

2) 평가항목

- 계획과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부서 간·참여주체 간 협력정도, 사업계획과 집행의 충실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 경관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평가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획, 집행, 성과의 3단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함

[표6 - 17] 경관계획 및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항목 및 평가 주요내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주요 내용
기획	주민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정도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운영회 등 구성·운영의 충실성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운영 체계의 효율성 사업 기획 과정에서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 정도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 정도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지역역량 등 지역특성 반영 및 활용 정도 경관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 경관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사업간 장소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및 적절성 산림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 역사문화 경관 등 유형별 사업계획의 종합적 추진
집행	주민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집행 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정도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운영회 등 구성·운영의 충실성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운영 체계의 효율성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 정도
	추진·집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대비 사업의 진척 정도 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 실적
	모니터링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담당부서의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및 수용 능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충실성 등
성과	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에 제시된 목표 달성 여부
	기타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타 산림, 수변, 시가지, 도시 기반시설경관, 역사문화경관 개선

3)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항목별로 점수 부여
- 추진 단계별로 차별화된 배점기준을 적용
 - 계획 수립 단계 : 기획(60%), 집행(40%), 성과(0%)
 - 사업 추진 단계 : 기획(0%), 집행(80%), 성과(20%)
 - 사업 완료 단계 : 기획(0%), 집행(40%), 성과(60%)

[표6 - 18] 경관계획 및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주요 내용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단계
기획	주민참여도	15	-	-
	거버넌스	15	-	-
	계획의 적절성	15	-	-
	사업간 장소적 연계	15	-	-
집행	주민참여도	10	20	10
	거버넌스	10	20	10
	추진·집행실적	10	20	10
	모니터링 결과 반영	10	20	10
성과	목표 달성도	-	10	30
	기타 파급효과	-	10	30

I 평가 결과의 활용

1) 계획·사업 보완 및 정책 개선

- 평가의 목적은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데 있음
- 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수립 및 집행,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개선 및 보완

2) 인센티브 부여

- 우수성과를 낸 주민·담당 공무원·전문가 등에 대한 표창 등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9.3 경관가치 인식 확산

- 중요 경관자원 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형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내용 중 목포시에서 우선 검토·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

9.3.1 경관전문가 기능재부 활성화

▣ 목적

- 쾌적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관전문가(지역 교수, 경관 관련 실무자, 담당공무원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 유도하여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방법

- 지역에 거주하는 경관전문가를 선정하여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 추진 방향

- 지역 내 경관전문가 및 재능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관전문가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형 경관사업을 진행함
- 지역경관 컨설팅, 경관 관련 사업 코디네이터, 소규모 공사 기술지도 등 다양한 경관 관련 업무를 지원함

▣ 추진 계획

- 1단계 : 재능 기부자 발굴 및 선정
- 2단계 : 재능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3단계 : 협약 체결 및 계획 수립
- 4단계 : 추진사항 평가

▣ 기대 효과

- 지역의 경관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경관 문제 해소 방안 마련
-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경관관리 체계 마련
- 재능기부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 경관개선 방안 마련

07. 부록

1. 중간보고
2. 주민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
3. 시의회 의견청취
4. 경관위원회 심의
5. 경관의식조사 설문지

본 조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00명(주민 80명, 전문가 2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의 별첨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관의식조사
설문지



1. 중간보고

1.1 개요

일 시	2017년 11월 29일 14:00
장 소	목포시청 상황실(2층)
참 석 자	경관자문전문가 : 배현미 교수 외 2명 관련공무원 : 부시장 외 9명 용역사 : (주)우빈기술개발 / (주)천마이앤씨

1.2 중간보고 세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1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서 기본을 빼고 2030 목포시 경관계획으로 함이 타당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은 [2030 목포시 경관계획]으로 명칭 수정	반영
	10년 전인 2007년에 설정된 가이드라인, 사업, 정책 중 시행된 것과 미시행된 것 구분, 사유 등 검토	이전 계획의 가이드라인, 사업정책 시행여부 및 사유 점검하여 계획방향 검토하겠음	반영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등이 상위 법률 및 공원녹지계획과의 상충여부 검토	관련계획 및 공원녹지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와의 상충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음	반영
	미항 목포 또는 문화항구 목포 등 일관성 재검토	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을 재검토하여 경관미래상을 점검하겠음	반영
	경관사업들이 경관계획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인지 여부와 경관계획과 연계성 검토 및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인지 검토	경관계획비전에 부합하는 경관사업으로 계획,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비의 성격 구분하겠음	반영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그 방지계획을 수립	SWOT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경관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음	반영
	재정비 측면에서 실용성, 효율성,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실용성, 효율성 등 측면에서 검토·보완하여 수립하겠음	반영
	국토부 경관계획수립지침 준용, 보완하고 가이드라인 부족 보완	국토부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보완하겠음	반영
	2007년 경관계획에서 수립되었던 내용, 제안사업과 그에 대한 성과와 반성 필요	이전 경관계획 성과 및 문제점 등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유지·개선사항으로 보완하겠음	반영
	2007년 경관계획, 금회 경관계획의 차이점 정리	10년간 의식·경관 및 정책변화에 의해 변경된 경관계획의 차이점 제시하겠음	반영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이나 문화부 사업과 연결 지어져 경관계획이 사업비의 근거로 작용 되도록 재검토	새 정부의 정책 및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사업비 근거로 작용 될 수 있는 경관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하겠음	반영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2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바뀐 부분 현황분석 재검토	10년간 변화된 현황의 분석을 중점으로 보완하겠음	반영
	경관권역이나 경관축의 변경 및 유지 사유 명시	경관구조의 변경 및 유지 사유에 관한 내용 명시하겠음	반영
	2007년보다 실행계획 구체화 필요	실행계획 세부사항 지침을 구체화하겠음	반영
	목포대교가 생기면서 내륙해양 경관권역이 설정되었으나 해안가 경관이 똑같은 경관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내륙해양 경관권역의 특성 및 계획방향을 점검하여 권역설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반영
	산림축에서 유달산이 배제되어 있으나 상당한 문제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필요	관련계획 및 계획구상을 검토하여 유달산까지 확장된 산림축을 설정하겠음	반영
	문화관광축, 소통경관축 의미가 모호한 면이 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삼학도, 유달산 보전방안에 통경축 확보는 관리의 의미가 있어 기본적인 개념정리 필요	축설정에 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유달산의 통경축 확보는 관리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겠음	반영
	해상케이블카 통과권역 경관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해상케이블카 통과권역 주변 경관현황에 따라 구체적 경관관리 방안 제시하겠음	반영
3	10년간 변화된 경관을 어떻게 보전하고 축을 설정할 것인지, 바꿔야할 점과 지켜야 할 점 내용 수록 필요	변화된 경관에 대한 보전, 개선,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록하겠음	반영
	원도심은 도시재생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원도심이라는 용어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것인지 경관적으로 검토	다양한 변화양상이 예상되는 원도심은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선정 검토하겠음	반영
	만호진이 거점에서 누락되어 있고, 평화광장 주변 구조개선 사항 반영 필요	경관거점에 만호진을 추가반영하고, 평화광장 관련계획을 중점관리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주거지나 빌딩 지붕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색채나 형태 등의 다양성이나 통일성이 나뉘는 이유 설명 필요	목포시 색채 현황 및 2008 목포시 경관계획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겠음	반영
	범죄예방이나 스마트 안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CPTED, 스마트안내에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겠음	반영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5년 전 수립되어 기존과 달라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용하려면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필요	기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용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완 내용을 제시하겠음	반영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참조 바람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보완하겠음	반영
4	방대한 면적과 시설물 설명 부족,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부족	기존시설 활용과 활성화방안 등의 내용을 보완하겠음	반영
	무분별한 야간경관 사용 보완 및 조치 필요	현 야간경관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조치에 의한 야간경관 향상방안 모색하겠음	반영
	경관계획 사업비 재정형편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보완 필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단기, 중장기사업비 책정을 보완하겠음	반영

2. 주민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

2.1 개요

일 시	2018년 1월 10일 15:00
장 소	목포시청 회의실(4층)
참 석 자	경관전문가 : 김농오 교수 외 2명 주민다수 및 관련공무원(도시재생과장 외 7명) 용역사 : (주)우빈기술개발 / (주)천마이앤씨

2.2 주민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 세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1	목포항의 장기적인 경관관리 비전제시	경관미래상과 부합하는 경관사업을 제시하여 문화항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목포 9경의 조망점 분석과 전망공간에 누각 설치 등으로 전망포인트 제시	조망점 분석을 통해 전망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여객터미널 ~ 서산온금지구까지 수변경관지구를 확장하고, 간판정비 등을 통한 문화항구이미지 제고 및 관광명소화 방안을 검토	수변경관지구 확장방안을 제시하고, 수변경관을 중점경관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
	장기사업으로 대단위 도시숲 조성 검토	도시숲에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해상케이블카 통과구역 경관관리 방안 검토	해상케이블카 통과구역 주변 경관현황에 따라 구체적 경관관리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2	문화항구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경관비전과 연계성을 갖는 경관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반영
	축이나 거점 등을 시퀀스적 경관으로 검토	연속된 경관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반영
	색채가이드라인의 주민의견과 형평성 검토	현황 및 주민의견 분석을 재검토하여 색채가이드라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반영
3	변화된 경관을 어떻게 보전하고 바꿔야 할 점과 지켜야 할 점 검토	경관에 대한 보전, 개선,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록하겠습니다	반영
	해상케이블카 통과구역 경관관리 방안 검토	해상케이블카 통과구역 주변 경관현황에 따라 구체적 경관관리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야간경관에 대한 보전, 형성, 관리에 대한 검토 필요	야간경관에 대한 보전, 개선,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록하겠습니다	반영
4	용라~입암산 생태통로 공사내 CCTV, 가로등, 조경식재 설치 검토	범죄예방 디자인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반영
5	해안주변 조명시설의 노후화로 야간조명계획 수립 검토	현 야간경관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조치에 의한 야간경관 향상방안 모색하겠습니다	반영

3. 시의회 의견청취

3.1 개요

일 시	2018년 1월 17일 11:00
장 소	목포시청 의회(4층)
참 석 자	시의원 : 조요한 위원장 외 4인 관련공무원 : 안전도시건설국장 외 4명 용역사 : (주)우빈기술개발 / (주)천마이앤씨

3.2 시의회 의견청취 세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1	목포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한 경관조명 설치 시 빛공해가 되지 않게 보완 필요	목포의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제시하겠음	
2	총 예산계획의 사업투자계획 구성비를 균일하게 분포 할 수 있도록 재검토	지역별로 사업투자계획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겠음	
3	목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잘 연계하여 관련 실과들과 면밀한 협조 필요	관계실과 협의를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음	
4	서산온금지구의 경우 고층건물을 사업추진 계획중에 있어 고도제한은 현 추진사업과 맞지 않음. 관련 실과들과 협의가 필요	관계 실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재검토하겠음	

4. 경관위원회 심의

4.1 개요

일 시	2018년 10월 30일 15:00
장 소	목포시청 상황실(2층)
참 석 자	경관위원 : 최익창 위원장 외 13인 관련공무원 : 안전도시건설국장 외 4명 용역사 : (주)우빈기술개발 / (주)천마이앤씨

4.2 경관위원회 심의 세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1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도 포함하여 검토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2	지향점을 위해 경관협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필요함	경관계획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한 총괄적인 진행 방향과 협정필요 지역을 제시하였음. 추후 경관 사업 시행 시 적극적인 경관협정이 필요함	미반영
3	도시경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우선으로 두어야 함. 유달산 야간조명의 피로감, 벽화골목투어의 그늘막부재 등 전사행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향후 10년~20년 후를 보고 전체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더 많은 의견수렴과 선진지 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유달산 야간조명 개선사업을 실행계획에 반영하겠음. 시설물(그늘막 등) 설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실행계획에 대한 실제사업 시행 시 의견수렴과 선진답사 등이 요구됨	일부 반영
4	목포만의 차별화된 경관계획이 필요함	목포만의 차별화 방안을 더 연구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5	유달산 고하도 연결 해상케이블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고하도를 제외한 목포시 경관계획 수정검토가 요구됨	고하도는 목포대교의 연결로 인해 도서해양경관 권역에서 서해안경관권역으로 권역구분이 수정되어 계획하였음	미반영
6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유달산, 삼학도, 목포항, 북항, 서산온금지구에 대한 경관계획의 구체성 모색 제시가 요구됨	유달산, 삼학도, 목포항, 북항, 서산온금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계획에 대한 구체성모색 사항을 보완하겠음	반영
7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목포역광장주변이 우선 실시되기를 권고함	목포역광장 경관개선계획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반영
8	주요간선도로 옥외광고정비계획 추가	주요간선도로부에 옥외광고 정비계획을 추가하겠음	반영
9	해상조망점 추가선정	해상조망점을 추가선정 하겠음	반영
10	옥암대학부지 숲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검토	옥암대학부지에 숲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11	목포항진입시 해안상가 등 야간조명 대책	추후 '목포시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통한 세부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함	미반영
12	조망점 선정과 지점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가이드라인제시 권고	조망점 선정과 지점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보완하겠음	반영
1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보존·형성·관리의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보존·형성·관리의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구체성을 갖도록 보완하겠음	반영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14	실행방안 내용에 경관조례 반영 추가	실행방안 내용에 경관조례 반영 추가하겠음	반영
15	색채범위를 권역별로 방향제시 한 내용의 특수요소 및 특화내용에 대한 방향이나 권고사항 명시	색채범위를 권역별로 방향제시 한 내용의 특수요소 및 특화내용에 대한 방향과 권고사항 명시하겠음	반영
1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는 축, 권역 등 대상지별 특성과 유형별로 대상을 추가하여 방향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축, 권역 등 대상지별 특성과 유형별로 대상을 추가하여 방향제시 하겠음	반영
17	결과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성과품 권고	결과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성과품을 제출하겠음	반영
18	빛을 강조하면 광주이미지와 겹칠 수도 있음. 목포만의 비전 극대화(기존이미지+새로운 이미지)	목포시만의 이미지를 검토하여 보완하겠음	반영
19	너무 과다한 통제로 다양성 축소우려(자생적으로 형성된 경관이 생명력 가짐). 벽을 꾸미는 등 시각적으로 만들어진 경관보다 인프라 형성이 중요(고정된 환경보다 변화관리에 초점). 오히려 활성화되어 필지·상점규모 대형화되어 지역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	벽면정비 등의 시각적 형성의 경관관리는 지양하고 경관인프라 형성과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20	산정농공단지쪽 공장벽면 벽화사업은 특혜성 여부 논란검토 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지저분해지는 면은? 유지보수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적 처방 논란여부 검토 필요	벽면정비 등의 일시적 처방에 그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음	반영
21	생태연결구조물 설치 필요성 검토 필요	본 계획은 경관관리부문을 제시하며, 추후 사업시행이전 설치 필요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반영
22	2030년 목표에 따른 경관계획의 목적은?	자문을 통해 내용 보완하겠음	반영
23	목포시의 개성?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자문을 통해 내용 보완하겠음	반영
24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의 현실파악	현황부분에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기반영
25	목표 9경을 본 소감은?	목표경관에 대한 의견은 설문을 통해 제시하였음	기반영
26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자문을 통해 내용 보완하겠음	반영
27	국토종합계획, 전라남도경관기본계획, 전남공공디자인계획, 서남권 종합발전계획들의 검토 후 콘셉트 방향 도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콘셉트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기반영
28	SWOT분석결과 도출에서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자문을 통해 내용 보완하겠음	반영
29	경관기본구상에서 목포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은? 특화된 차별화 계획으로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관광인프라 확대)활성화 방안. 경관계획과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은 “깨끗함”, “지역민의 마음가짐”, ⇒청소철저, 주차관리, 공공시설(옥외광고정비 : 조화, 균형, 통일)	자문을 통해 목포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는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30	실행계획 일부수정 : 기완료된 사업 배제(입암산-용라산 통로개설), 계획변경된 사업 배제(고하도 목화단지조성)	기완료 사업과 계획변경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보완수정토록 하겠음	반영
31	달리도, 외달도 슬로시티 지정계획에 대한 필요 경관계획 추가제시 및 여촌뉴딜300계획 반영	달리도·외달도 슬로시티 지정계획 및 여촌뉴딜300계획 검토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32	문화재청에서 적극 추진중인 목포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2018~2023, 500억원)계획을 검토한 후 경관계획에 반영 요함	목포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4.3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 원	정순주	목포시 부시장	당연직
2	"	김천환	관광경제수산업국장	"
3	"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
4	"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	"
5	"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
6	"	박 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의원
7	"	최홍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
8	위 원 장	최익창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토목
9	부위원장	배현미(女)	목포대학교 교수	조경
10	위 원	심원섭	목포대학교 조교수	관광
11	"	권현아(女)	목포대학교 조교수	조명
12	"	김도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환경
13	"	정은채	목포과학대학교 부교수	도시
14	"	전호민	초당대학교 교수	건축
15	"	이 정(女)	순천대학교 교수	조경
16	"	송진희(女)	호남대학교 교수	조명
17	"	박옥주	전 도시건설국장	건축
18	"	정영희(女)	목포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화
19	"	이종구	GS기술연구소 소장	교통
20	"	신은주(女)	환경미술협회목포시지부장	디자인
21	"	윤형호	더 프레임 대표	디자인

5. 경관의식조사 설문지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의 비전과 기본구상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반인 및 전문가의 경관의식 파악을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으로 일괄처리되어 계획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쾌적하며 더욱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경관을 지닌 목포시로 만드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목포시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경관구조요소

자연경관(산림, 해양, 하천저수지), 도시경관(가로, 건축물, 구조물, 오픈스페이스), 역사문화경관(역사, 문화), 전원경관(경작지, 농업시설, 기타(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I 응답자 일반사항

1. 현재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성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II 목포시가 추구해야 할 경관의 미래상

4. 귀하께서는 '목포'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여항 ② 항구도시 ③ 유달산 ④ 목포대교 ⑤ 갯바위 ⑥ 삼학도 ⑦ 외달도
⑧ 고하도 ⑨ 평화광장 ⑩ 영산강 ⑪ 목원동(원도심) ⑫ 목포의 눈물 ⑬ 맛의 고장
⑭ 기타 (_____)
5. 목포시가 경관계획에서 추구해야할 대표 이미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해양관광 항구도시 ②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③ 먹거리가 풍부한 맛의 도시
④ 지역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도시
⑥ 서남경제권의 중심도시 ⑦ 상업·서비스업이 발달한 생기있는 도시 ⑧ 기타 (_____)

11. 목포시의 역사문화경관을 가장 훼손시키는 요인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쓰레기 및 폐기시설물 방치 등 관리부실 ② 건물과 시설물들의 부조화(색채재료 등)
 - ③ 주변의 시설물 및 노점상 난립 ④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식재 또는 조경시설 미비
 - ⑤ 역사문화자원의 훼손 ⑥ 전통건축, 시설의 노후화 ⑦ 기타 (_____)

IV 목포시 경관자원별 우선 관리대상

12. 목포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경관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경관자원 ② 해양경관자원 ③ 역사문화경관자원 ④ 시가지경관자원 ⑤ 수변경관자원
 - ⑥ 기타 (_____)
13. 목포시의 자연경관자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달산 ② 양을산 ③ 갯바위(입암산) ④ 부흥산 ⑤ 기타 (_____)
14. 목포시의 해양경관자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목포항 주변 ② 북항 주변 ③ 삼학도 내항 부근 ④ 영산강 하구둑 부근 ⑤ 평화광장 주변
 - ⑥ 외달도 및 도서지역 ⑦ 해안도로 ⑧ 향동시장 주변 ⑨ 기타 (_____)
15. 목포시의 역사문화경관자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순구미 마을 ② 오거리 목원동 일대 ③ 종교역사유적지(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 ④ 고하도 역사문화 ⑤ 기타 (_____)
16. 목포시의 시가지경관자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당 신도시 일대 ② 옥암지구 일대 ③ 오거리 상점가 일대 ④ 북항 상점가 일대
 - ⑤ 기타 (_____)
17. 목포시의 수변경관자원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산강 하구언 주변 ② 옥암택지구 영산강변 ③ 평화광장 주변 ④ 기타 (_____)
18. 목포시의 신규개발단지 또는 재개발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높이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대상지 구분	층 수				
	5층이하	5~10층	10~15층	15~20층	20층 이상
산림 (산 구릉지)					
해양 (해안, 도서)					
시가지 (원도심)					
시가지 (신도시)					

V 목포시의 야간경관 현황 및 조성방향

19. 목포시를 대표하는 야간경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유달산 ② 목포대교 ③ 갯바위 ④ 목포항 ⑤ 북항 ⑥ 고하도
 - ⑦ 평화광장(분수) ⑧ 삼학도 ⑨ 도심지(빛조형물) ⑩ 기타 (_____)
20. 목포시의 야간경관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장소 2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유달산 ② 목포대교 ③ 갯바위 ④ 목포항 ⑤ 북항 ⑥ 고하도
 - ⑦ 평화광장(분수) ⑧ 삼학도 ⑨ 도심지(빛조형물) ⑩ 기타 (_____)

21. 목포시의 야간경관 조성 또는 개선 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조명시설에 따른 쾌적함 ② 대표적인 상징성 가진 조명효과 ③ 조명의 시각적인 즐거움
④ 밝은 조명시설에 의한 범죄예방 ⑤ 빛공해 방지 ⑥ 야간경관 통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⑦ 조명에 의한 주야간 이미지 변화 ⑧ 기타 (_____)

22. 목포시의 야간경관조성 시 좋은 효과가 예상되는 곳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공정책정보시설(관청, 방송국 등) ② 교육문화예술시설(대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③ 생활서비스시설(병원, 호텔 등) ④ 상업업무시설(시장, 유통센터 등) ⑤ 주거시설(아파트 등)
⑥ 산업유통시설(수산물시장 등) ⑦ 공원녹자해양 공간 ⑧ 교통시설(터미널, 역 등)
⑨ 특화거리 ⑩ 문화재 ⑪ 조망시설 ⑫ 교량 등 구조물 ⑬ 기타 (_____)

VI 경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3. 목포시의 경관향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과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민교육, 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② 경관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 등 정립
③ 경관조례 정비 및 협정 제정 ④ 각종 법, 제도 등을 통한 규제
⑤ 경관을 배려한 지자체의 정책추진 ⑥ 개발전문업체(건축토목조경 등)들의 의식향상
⑦ 경관행정의 전문성 강화 ⑧ 경관전문가의 경관계획 참여
⑨ 기타 (_____)

24. 목포시의 경관향상사업 시 행정과 주민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이 주체가 되는 관주도형 추진 ② 주민, 관,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추진
③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 ④ 관은 관여하지 않고 주민협의체가 추진
⑤ 기타 (_____)

25. 목포시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의 시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중요치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목포시 전체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공업 등) 규제 필요					
공공시설(도로, 교량, 공공건축, 공원 등)의 경관 정비					
기 정비된 경관의 유지 및 관리					
민간건축물의 경관형성 및 정비를 위한 지원책 마련					
경관전문가 도입 등 경관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심포지움, 강연회 등 시민들의 학습기회 제공					
경관형성에 기여한 민간건축물, 시민활동 등에 대한 표창					

목포시의 경관 및 야간경관과 관련된 의견 혹은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명단

(주)우빈기술공사

책임 조수연

참여 김금영

강성윤

박인종

정다우리

박세동

김보라

이주열

박동민

임자영

(주)천마이앤씨

참여 제상호

박성문

정창호

주진환

반명섭

이연지